
회의자료

10기 2년 정기대의원대회

일시 : 2019. 03. 12(화) 10시

장소 : 삼산근로자복지회관 1층 대강당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회의자료 순서

대의원대회 진행순서	3
대회사	4
격려사	6
상징마크	8
선 언	9
강 령	10
금속노조가	11
금속노조 울산지부 대의원 명단	12

보고자료

울산지부 10기 1년차 사업보고	25
금속노조 10기 2년차 사업계획 및 2019년 투쟁방침 보고	69

안건자료

안건1호. 10기 1년차 사업평가 및 결산보고 승인 건	117
안건2호. 10기 2년차 사업계획 확정 및 2019년 투쟁방침 논의 건	171
안건3호. 10기 2년차 사업예산 확정 건	193
안건4호. 금속노조 10기2년차 중앙위원 선출 승인 건	201
안건5호.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 및 대의원 선출 승인 건	205
안건6호. 기타 안건	211
안건7호. 결의문 채택의 건	213

<별첨> 울산지부 규정	215
--------------------	-----

대의원대회 진행순서

1부 기념식

노래배우기	조직1부장
개회선언	사회자
깃발 입장	사회자
민중의례	사회자
내.외빈 소개 및 임원 및 지회장 소개	사회자
대회사	지부장
격려사	내외빈
축 사	내외빈
영상상영	전체
모범지회, 조합원 시상	사회자
금속노조가 제창	전체

2부 본회의

격려사	노조임원
개회선언 및 성원보고	의장
서기 및 감표위원, 사찰 지명	의장
회순통과	의장
안건토론	의장
결의의식	전체
결의문 채택 및 낭독	전체
폐회선언	의장

대 회 사

울산지부 확대간부 동지여러분!

지부장 강수열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동지여러분!

울산지부는 10기1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제2의 민주노조 운동, 조직력 강화,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 조직사업 강화, 노동자 중심 진보대통합,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투쟁에 나설 것을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가 ‘세상을 바꾸는 주인’으로 나서자 결의하였습니다.



이 결의에 따라 지난 1년, 쉼 없이 달려왔고 그 결과 2700명 대오에서 4500명 대오로 조직 확대 시켜냈습니다. 민주노조를 세우기 위해 애쓰신 신규지회 확대간부 동지들과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달려오신 기존 지회 확대간부 동지들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일 것입니다.

동지들의 노고에 지부장으로서는 존경의 마음 담아 다시 한 번 감사의 전합니다.

동지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앞에는 또 다른 과제가 놓여있습니다.

고강알루미늄지회 동지들은 구조조정 분쇄,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전면파업 투쟁이 3월 15일이면 200일을 맞이합니다.

정부는 자동차 산업 구조개편 시도와 맞물린 저임금 장시간 노동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경사노위를 앞세워 경총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쟁의행위와 현장투쟁을 금지하고 대체근로 전면허용,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자유를 주려 할 뿐만 아니라 단협 유효기간을 4년까지 연장, 탄력근로제 전면 확대 등 그야말로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민중총궐기를 통해 촛불이 모였고 이 촛불의 힘으로 몰아냈던 자유한국당 적폐세력들이 다시 활개를 치고, 한반도 종전과 평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점이었던 북미 2차 정상회담은 미국의 패권주의로 결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6일, 구속되었던 이명박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것이 지금 2019년 대한민국입니다.

동지여러분!

이제 우리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노동선배열사들의 피땀의 역사위에 서있는 우리의 역할은 외세에 빌붙어 노동자 민중의 고혈을 빨아먹는 재벌적폐 세력들을 뿌리 뽑아내는 것입니다.

의열단 단장 약산 김원봉 선생은 “자유는 우리의 힘과 피로 쟁취하는 것이지 결코 남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 노동자의 삶을 개척하고 투쟁해 나가 진정 이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포합시다.

동지여러분!

제 2의 민주노조 운동! 재벌적폐 청산!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적극 나섭시다!

그리하여 2019년 5000 조합원 시대를 힘 있게 열어 나갑시다!

지부장, 동지들을 믿고 맨 선두에서 힘차게 달려 나가겠습니다! 투쟁!

2019년 3월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지부장 강수열

격려사

지부 대의원과 조합원 동지들께 뜨거운 투쟁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속노조 위원장 김호규입니다. 투쟁!

유난히 포근했던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속노조를 둘러싼 환경은 아직도 얼어붙어 있습니다. 금속노조 건설 이후 어느 한해 쉽게 넘어간 적이 없으나 올해, 2019년도 금속노조를 둘러싼 객관적 정세는 녹록치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로 집권 3년 차를 맞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배제 기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탄력근로제 개악 · 최저임금결정제도 개악 · 노동법 개악 · 광주형 일자리 · 대우조선 일방매각” 등 노동을 배제한 산업재편과 노동개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2월 19일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개악 발표에 이어, 2월 27일 최저임금결정구조 개악안을 정부가 발표하였고, 3월 국회에는 ‘종사자인 조합원과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을 구분하여 노조활동 범위를 차등적용’하는 “산별노조통제법”을 환노위 여당 간사라는 자가 발의한 상황입니다.

한술 더 떠 경사노위에서는 ILO 협약비준과 맞바꾸는 “파업파괴법”이 공공연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직장폐쇄요건을 완화하고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사측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을 폐지하고, 단협 유효기간을 법적으로 정하지 말자’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은 올해 임단협에서 제조업 위기를 빌미로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고통분담론을 유포하며 임금동결, 복지 축소, 임금체계 개악 등을 전방위적으로 밀어붙이려 할 것 입니다.

노동을 배제하고 노동개악을 잇달아 추진하는 정부와 자본의 공격에 맞서 이제 금속노조 18만이 하나로 단결해서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금속노조는 당면한 노동개악, 일방적 산업구조 개편과 구조조정, 현장에서의 임금개악공세에 맞서 지부·지회까지 이어지는 총력대응 투쟁체계를 구축하고, 민주노총과 논의해 정권과 자본의 노동개악에 맞서는 총노동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투쟁을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전개할 것입니다.

대의원 동지들!

금속노조는 47차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10기 2년 차 사업계획과 2019년 산별교섭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올해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확대하고, 재벌 독식의 사회구조를 혁파하고, 산별교섭을 전진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대중적 평화통일운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그 길에 대의원 동지들의 힘과 지혜를 아낌없이 모아주십시오.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투쟁의 현장에서 다시 만납시다! 투쟁!

2019년 3월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김호규

상징마크



깃발을 움켜쥔 주먹을 기어로 받치고 있는 모습은 금속노동자의 노동과 삶에 뿌리 박고 선 산별노조를 만들고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힘차게 달려 나가는 기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흰색은 민주노조운동이 담고 있는 순수한 뜻과 열정을 뜻하며, 청색은 질푸른 우리나라 하늘과 동해바다와 같이 넓고 깊은 사랑으로 동지들을 끌어안는 통 큰 단결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 언

노동자는 역사의 주인이자 역사발전의 원동력이다.

우리 금속노동자는 생산의 주역으로서 금속산업 발전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해 왔으며, 또한 자본주의 착취와 억압 구조, 외세에 맞서 한국 노동운동의 선봉에 서서 투쟁해왔다.

우리는 선배 노동자들의 단결의 정신과 불굴의 투쟁의지를 이어 받아 민주노조 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금속노조를 힘차게 세운다.

우리 금속노동자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한 삶을 지키기 위해 예속과 차별, 빈곤의 확산을 가져오는 신자유주의 자본의 세계화에 맞서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해 투쟁할 것이며, 이 땅의 민중, 진보세력과 굳건히 연대하여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사회, 억압과 차별이 철폐된 평등사회, 남북이 하나 된 통일조국 건설에 앞장 설 것이다.

강 령

【조직】 우리는 임시비정규여성이주노동자 등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 노력하며 차별철폐 투쟁을 통해 금속노조의 강화확대를 위해 투쟁한다.

【노동조건】 우리는 노동시간 단축과 생활임금확보, 고용안정,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확보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한다.

【협약】 우리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바탕으로 금속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산별협약을 쟁취하고 노동의 소유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한다.

【평등사회】 우리는 초국적 자본과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다수의 빈곤을 기반으로 소수의 부를 보장하는 정치, 경제, 사회구조를 개혁하고 평등사회건설을 위해 투쟁한다.

【여성】 우리는 운동과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각종 성차별제도의 철폐와 모성보호,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투쟁한다.

【문화】 우리는 노동과정에서 발전해온 문화전통을 이어받아 민중적이고 민족적인 문화의 확산과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쟁한다.

【환경】 우리는 환경이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전 계급 계층이 향유하고 보호해야 할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하며, 자본에 의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환경친화적 사회발전을 위해 투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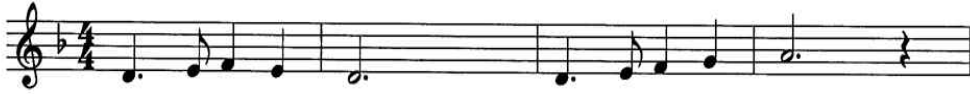
【국제연대】 우리는 전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가간 예측과 불평등, 그 어떤 명분의 전쟁에도 반대하며, 신자유주의 타파를 위해 투쟁한다.

【정치세력화】 우리는 노동자 중심의 정치세력화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노동자민중의 정당 강화를 통해 노동자민중 정권 창출을 위해 투쟁한다.

【통일】 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강점한 미군을 조속히 철수시키며,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해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다.

금속노조가

김호철 글,곡



노 동 자 의 길 해 방 의 길 에
깃 누 를 수 록 더 욱 강 하 게



당 당한 역 사의 합 성이 되어 우 리 는 간 다



피 토써 뭉 처진 강 철의 대오 아 금 속 노 조 여



나 가 자 성 벽을 깨고 죽 음의 사 선을 넘 어
말 하 의 처를 러라 민 중의 선 봉에 서 서



노 동 자 없 이 해 방의 나라 기 필 코 쟁 취하 리 라
너 나 없 이 평 등한 나라 기 필 코 쟁 취하 리 라

울산지부 대의원 명단

순번	소속	이름
1	지부장	강수열
2	고강알루미늄지회	강태희
3	고강알루미늄지회	권석진
4	고강알루미늄지회	남태훈
5	고강알루미늄지회	이종호
6	고강알루미늄지회	서병준
7	고강알루미늄지회	최민중
8	덕양산업지회	이복형
9	덕양산업지회	박종원
10	덕양산업지회	김정수
11	덕양산업지회	이성희
12	덕양산업지회	황상진
13	덕양산업지회	박정열
14	덕양산업지회	장태철
15	덕양산업지회	김태욱
16	덕양산업지회	오준협
17	덕양산업지회	정우철
18	덕양산업지회	안영수
19	덕양산업지회	유인철
20	덕양산업지회	박천원
21	덕양산업지회	권영환
22	덕양산업지회	김대열
23	덕양산업지회	구 혁
24	덕양산업지회	안홍기
25	덕양산업지회	박영민

순번	소속	이름
26	덕양산업지회	이상훈
27	덕양산업지회	김병훈
28	덕양산업지회	이홍우
29	덕양산업지회	
30	덕양산업지회	
31	덕양산업지회	
32	덕양산업지회	
33	덕양산업지회	
34	덕양산업지회	
35	덕양산업지회	
36	동진지회	김태균
37	동진지회	김종목
38	동진지회	손명기
39	동진지회	손진원
40	동진지회	신한솔
41	동진지회	이상일
42	대륙금속지회	정진희
43	대륙금속지회	임재언
44	대륙금속지회	임효준
45	대륙금속지회	장 백
46	대륙금속지회	함서우
47	대흥공업지회	황양규
48	대흥공업지회	김명수
49	대흥공업지회	이동재
50	대흥공업지회	허대영

순번	소속	이름
51	말레동헌필터시스템지회	김민기
52	말레동헌필터시스템지회	권성용
53	말레동헌필터시스템지회	김경남
54	말레동헌필터시스템지회	김영수
55	말레동헌필터시스템지회	안인숙
56	말레동헌필터시스템지회	정태종
57	말레동헌필터시스템지회	차주철
58	보성테크지회	손한락
59	보성테크지회	임종택
60	보성테크지회	
61	삼성전자서비스울산지회	조병훈
62	삼성전자서비스울산지회	최명우
63	삼성전자서비스울산지회	고성철
64	삼성전자서비스울산지회	차경호
65	삼성전자서비스울산지회	
66	삼성전자서비스울산지회	
67	서연이화지회	이영석
68	서연이화지회	강찬엽
69	서연이화지회	강효석
70	서연이화지회	권근섭
71	서연이화지회	김고삼
72	서연이화지회	김대희
73	서연이화지회	김옥선
74	서연이화지회	김은례
75	서연이화지회	김종해

순번	소속	이름
76	서연이화지회	김창수
77	서연이화지회	김철수
78	서연이화지회	김현경
79	서연이화지회	김효진
80	서연이화지회	박 경
81	서연이화지회	박동준
82	서연이화지회	박재연
83	서연이화지회	박찬상
84	서연이화지회	유영택
85	서연이화지회	이수호
86	서연이화지회	이인형
87	서연이화지회	이종술
88	서연이화지회	이평호
89	서연이화지회	이희곤
90	서연이화지회	임미숙
91	서연이화지회	조경준
92	서연이화지회	황성현
93	서연씨엔에프지회	윤성만
94	서연씨엔에프지회	김경우
95	서연씨엔에프지회	김한일
96	서연씨엔에프지회	도기태
97	서연씨엔에프지회	박국현
98	서연씨엔에프지회	윤남수
99	서연씨엔에프지회	이인범
100	서연씨엔에프지회	정외숙

순번	소속	이름
101	세종공업지회	구덕모
102	세종공업지회	강민우
103	세종공업지회	강성태
104	세종공업지회	공영군
105	세종공업지회	권오혁
106	세종공업지회	김선주
107	세종공업지회	김영창
108	세종공업지회	김운동
109	세종공업지회	김일호
110	세종공업지회	김태수
111	세종공업지회	박병일
112	세종공업지회	박성현
113	세종공업지회	박영태
114	세종공업지회	박인철
115	세종공업지회	배해운
116	세종공업지회	유광선
117	세종공업지회	이병근
118	세종공업지회	추현동
119	세종공업지회	황재운
120	세종공업지회	
121	세종공업지회	
122	세종공업지회	
123	세종공업지회	
124	세종공업지회	
125	한국ITW지회	허세현

순번	소속	이름
126	한국TW지회	박용수
127	한국TW지회	오석근
128	한국TW지회	이종일
129	한국TW지회	임민재
130	한국TW지회	진용호
131	한국TW지회	차현철
132	한국프랜지지회	차주근
133	한국프랜지지회	구봉수
134	한국프랜지지회	김두현
135	한국프랜지지회	김용권
136	한국프랜지지회	김진엽
137	한국프랜지지회	동방춘
138	한국프랜지지회	박지훈
139	한국프랜지지회	송등용
140	한국프랜지지회	안병열
141	한국프랜지지회	안지운
142	한국프랜지지회	이동율
143	한국프랜지지회	이승용
144	한국프랜지지회	이정환
145	한국프랜지지회	정해무
146	한국프랜지지회	최성우
147	한국프랜지지회	최영택
148	한국프랜지지회	홍연호
149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이기진
150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김동길

순번	소속	이름
151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김영수
152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김원석
153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김진일
154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김태준
155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안주호
156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임형섭
157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조서호
158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159	현대그린푸드지회	황선욱
160	현대그린푸드지회	강삼조
161	현대그린푸드지회	김장희
162	현대그린푸드지회	배윤자
163	현대그린푸드지회	백화숙
164	현대그린푸드지회	송명숙
165	현대그린푸드지회	신순현
166	현대그린푸드지회	염은희
167	현대그린푸드지회	이미숙
168	현대그린푸드지회	이수영
169	현대그린푸드지회	이영호
170	현대그린푸드지회	이정숙
171	현대그린푸드지회	장혜정
172	현대그린푸드지회	정순덕
173	현대그린푸드지회	홍진주
174	현대그린푸드지회	
175	현대모비스물류지회	안상호

순번	소속	이름
176	현대모비스물류지회	김남수
177	현대모비스물류지회	김태우
178	현대모비스물류지회	안규홍
179	현대모비스물류지회	윤한솔
180	현대모비스물류지회	이재영
181	현대모비스물류지회	
182	현대모비스울산지회	함형길
183	현대모비스울산지회	김동한
184	현대모비스울산지회	김용현
185	현대모비스울산지회	박경덕
186	현대모비스울산지회	송호섭
187	현대모비스울산지회	심영호
188	현대모비스울산지회	심정우
189	현대모비스울산지회	양인모
190	현대모비스울산지회	윤태일
191	현대모비스울산지회	이대훈
192	현대모비스울산지회	이신우
193	현대모비스울산지회	이정환
194	현대모비스울산지회	정용훈
195	현대모비스울산지회	정이원
196	현대모비스울산지회	정준현
197	현대모비스울산지회	
198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	박유종
199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	김호영
200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	방상현

순번	소속	이름
201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	김경락
202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	김동연
203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	김동은
204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	김범호
205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	김승락
206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	노희현
207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	문두신
208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	문상오
209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	박성웅
210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	박수민
211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	박수철
212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	박용원
213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	박주영
214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	박준영
215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	손치원
216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	송정국
217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	신상옥
218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	안현식
219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	엄근식
220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	엄준호
221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	이강령
222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	이근호
223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	이봉용
224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	이상희
225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	이재준

순번	소속	이름
226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	이재환
227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	이준석
228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	이현우
229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	장원영
230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	정동혁
231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	정민규
232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	정준홍
233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	지승환
234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	최병열
235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	최한곤
236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	하동옥
237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	한준희
238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	홍수헌

전국금속노조 울산지부 10기 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보고자료

10기 1년차 사업보고

금속노조 10기 2년차 사업계획 보고

보 고

10기 1년차 사업보고

1.조직현황보고

기간: 2017년 10월1일 ~ 2018년 12월 31일 (단위 명)

		17년 10월	11월	12월	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 고
1	고강알루미늄지회	104	104	104	104	104	104	104	104	104	104	104	97	97	97	97	18년 10월부터 조합비납부유예
2	덕양산업지회	528	528	528	528	528	528	528	523	523	528	523	523	529	529	529	
3	동진지회	83	83	83	83	83	86	86	86	86	89	89	89	89	89	93	
4	말레동현필터시스템지회	106	106	106	106	106	106	106	106	106	106	106	106	109	109	114	
5	삼성SDI울산지회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20	20	
6	서연씨엔에프지회	118	118	118	118	118	118	118	118	126	129	129	129	129	129	134	
7	세종공업지회	473	473	473	473	474	473	473	473	467	467	467	467	467	467	468	
8	한국ITW울산지회	127	127	127	127	127	127	127	127	127	127	127	127	127	127	127	
9	한국프랜지지회	339	339	339	339	339	339	339	339	339	339	339	324	324	324	324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0기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10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155	155	155	155	155	155	155	155	155	155	155	155	181	181	181	18년 10월 유창산업 가입
11	서연이화지회	476	476	476	476	476	476	476	476	478	478	478	478	464	464	464	
13	현대중공업일반직지회	21	21	21	21	31	14	14	14	14	14	14					18.08.27 현대중공업지부로 편제
14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82	82	82	82	73	82	76	78	83	80	82					
15	대흥공업지회			64	64	66	66	67	68	68	68	68	68	68	66	66	17.12.21 창립
16	대륙금속지회						77	76	108	110	111	111	109	113	98	98	18.03.11 창립
17	현대모비스울산지회						246	268	272	272	289	289	295	305	306	320	18.03.11 창립
18	현대모비스물류지회									90	101	101	101	109	110	111	18.06월 창립
19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290	280	275	225	18.08.26 창립
20	보성테크지회												41	41	41	41	18.09.27 창립
21	현대모비스비정규직울산지회													715	747	760	18.09.27 창립
22	삼성전자서비스울산지회	52	52	52	52	53	52	53	53	108	108	108	107	106	106	106	
23	개별	22	19	11	32	17	22	33	36	33	17	31	31	19	17	12	
합 계		2,696	2,693	2,749	2,770	2,760	3,081	3,109	3,146	3,299	3,320	3,331	3,547	4,282	4,302	4,290	

2. 회의보고

2-1. 운영위원회

10기 1년차 운영위 회의보고

차수	날짜	장소	주요안건
10-1	17.10.16	세종공업지회	안건1. 17년도 지부집단교섭 찬반투표 및 조인식 진행의 건 안건2. 10기 1년차 지부지회 대의원 선출의 건 안건3. 신분보장 심의 건 안건4. 기타안건
10-2	17.10.23	서연이화지회	안건1.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노동자대회 참가 조직의 건 안건2. 울산지부 주요투쟁 조직의 건 안건3. 울산지역 연대투쟁 조직의 건 안건4. 개별조합원 가입 심의 승인의 건 안건5. 기타안건
10-3	17.10.30	한국ITW울산지회	안건1. 금속노조 대의원 선거구 확정 의 건 안건2. 울산지부 10-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진행 일정의 건 안건3. 11월초 주요투쟁 진행의 건 안건4. 자산물품 폐기의 건 안건5. 기타안건
10-4	17.11.06	덕양산업지회	안건1. 11월 주요투쟁 조직 점검의 건 안건2. 민주노총 지역본부 임원선거 진행의 건 안건3. 개별조합원 가입 승인의 건 안건4. 기타안건
10-5	17.11.13	한국프랜지지회	안건1. 중앙교섭 조인식 진행 지침의 건 안건2. 노조 제44차 정기대대 정기표창 추천의 건 안건3. 기타안건
10-6	17.11.20	서연씨엔에프지회	안건1. 9-2사업평가 및 10-1 사업계획 초안 토론건 안건2. 지부 10-1 정기대대 모범상 추천의 건 안건3. 기타안건

차수	날짜	장소	주요안건
10-7	17.11.27	동진지회	안건1. 10기1년차 지부 예산안 심의 건 안건2. 10기1년차 지부대의원대회 안건 확정 건 안건3. 지부정기대회 정기표창 확정의 건 안건4. 감사위원 선출공고의 건 안건5. 기타안건
10-8	17.12.19	세종공업지회	안건1. 노조 12월 당면투쟁 조직 건 안건2. 노조 중앙위원, 민주노총 중앙위원, 대의원 선출의 건 안건3. 지부 당면투쟁사업 진행의 건 안건4. 기타안건
긴급	17.12.22	소통방	안건1. 신규지회 설립 승인건
10-9	18.01.08	울산지부 회의실	안건1. 지부 1월 사업 진행의 건 안건2. 2018년 임단협 교섭요구 공문 발송 지침의 건 안건3. 신분보장 심의 건 안건4. 기타안건
10-10	18.01.16	동진지회	안건1. 1~2월 투쟁 계획의 건 안건2. 기타안건
10-11	18.01.22	서연씨엔에프지회	안건1. 01.24 노조 신년투쟁 선포식 참가 점검 안건2. 노조 지회장 의무교육 참가의 건 안건3. 현안투쟁 집행의 건 안건4. 기타안건
10-12	18.01.29	한국ITW울산지회	안건1. 1~2월초 사업 집행 점검의 건 안건2. 2018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투쟁선포대회 안건3. 조합원 징계 심의 건 안건4. 기타안건
10-13	18.02.12	한국프랜지지회	안건1. 노조 2018년 투쟁방침(초안) 토론의 건 안건2. 울산지부 10-1 임시대회 준비일정 확정의 건 안건3. 기타안건

차수	날짜	장소	주요안건
10-14	18.02.27	한국ITW울산지회	안건1. 2018년 노조 및 지부 투쟁방침(초안) 토론의 건 안건2. 사회공헌기금 관련 의견 취합의 건 안건3.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대의원 배정의 건 안건4. 부서위원회 사업 집행의 건
10-16	18.03.14	덕양산업지회	안건1. 구조조정 저지 금속노조 집중투쟁 집행의 건 안건2. 지회설립 승인의 건 안건3. 신분보장 심의 건 안건4. 징계위원회 심의 건 안건5. 기타안건
10-17	18.03.28	세종공업지회	안건1. 당면투쟁 진행의 건 안건2. 투쟁기금 사용 승인의 건 안건3. 부서위원회 사업 집행의건 안건4. 2018년 지부집단교섭 일정 확인의 건 안건5. 기타안건
10-18	18.04.09	고강알루미늄지회	안건1. 2018년 지부집단교섭 방침 건 안건2. 당면투쟁 진행의 건 안건3. 부서위원회 사업 집행의 건 안건4. 기타안건
10-19	18.04.16	한국ITW울산지회	안건1. 당면투쟁 진행의 건 안건2. 기타안건
10-20	18.04.23	동진지회	안건1. 당면투쟁 진행의 건 안건2. 부서 및 위원회 사업 진행의 건 안건3. 기타안건
10-21	18.04.30	서연이화지회	안건1. 128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울산대회 참가 확인의 건 안건2. 기타안건
10-22	18.05.08	덕양산업지회	안건1. 지부5-6월 투쟁계획 건 안건2. 5.18 민중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안건3. 정치실천단 구성 건

차수	날짜	장소	주요안건
10-23	18.05.21	울산지부	안건1. 정치실천단 1단계 실천계획 안건2. 6.4 확대간부 결의대회 진행 건 안건3. 최저임금 개악저지 투쟁 건
긴급 운영위	18.05.25	세종공업지회	최저임금법 환노위 통과 주요내용 공유 후 실천투쟁
10-25	18.06.04	고강알루미늄지회	안건1. 선거 본선 투쟁계획 안건2. 투쟁기금 사용 승인건 안건3. 기타안건
10-27	18.06.18	고강알루미늄지회	안건1. 6월 당면투쟁 진행의 건 안건2. 7월 총파업 및 1차 조합원 상경투쟁 계획 현장 토론 의 건 안건3. 기타안건
10-28	18.06.27	한국ITW울산지회	안건1. 지부쟁대위 전환 7월 일정의 건 안건2. 6.30 전국노동자대회 진행의 건 안건3. 신규지회 설립 승인의 건 안건4. 부서 및 위원회 사업 집행의 건 안건5. ()지회 임원 징계 심의 건
10-29	18.07.02	세종공업지회	안건1. 울산지부 임단투 7월 투쟁 진행의 건 안건2. 개별조합원 가입 건 안건3. 부서 및 위원회 사업집행의 건
10-30	18.06.27	한국ITW울산지회	안건1. 7.13 총파업 및 조합원 상경투쟁 안건2. ()지회 조합원 징계 의결의 건 안건3. 기타안건
10-31	18.07.16	고강알루미늄지회	안건1. 7월 3~4주 임단투 계획 안건2. ()지회 징계심의 재확인 및 징계의결 요청의 건 안건3. ()지회 조합원 징계 의결 건 안건4. 기타안건
10-32	18.07.23	한국프랜지지회	안건1. 8.15 투쟁 확정의 건 안건2. 기타안건

차수	날짜	장소	주요안건
10-33	18.08.06	덕양산업지회	안건1. 8.11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및 남북노동자촉구대회 안건2. 8월 투쟁 계획 건 안건3. 기타안건
10-34	18.08.13	서연이화지회	안건1. 8월 주요투쟁 확정의 건 안건2. 기타안건
10-35	18.08.21	세종공업지회	안건1. 지부집단교섭 대응의 건 안건2. 기타안건
10-36	18.08.27	세종공업지회	안건1. 신규지회 설립 승인의 건 안건2. 9월 투쟁의 건 안건3. 목간전용 승인의 건 안건4. 00지회 조합원 징계 심의 의결의 건 안건5.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및 현대중공업일반직지회 지부 변경의 건 안건6. 00지회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심의의 건
10-37	18.09.03	한국프랜지지회	안건1. 9월 투쟁계획의 건 안건2. 2018년 금속노조 하반기 투쟁계획안 사전 토론의 건 안건3. 통상임금 집단소송 소취하 의견 논의의 건 안건4. 00지회 진상조사위 결과 심의의 건 안건5. 기타안건
10-38	18.09.10	한국ITW울산지회	안건1. 9월 10일주 투쟁 확정의 건 안건2. 통상임금 집단소송 소취하 의견 논의건 안건3. 기타안건
10-39	18.09.17	현대모비스 울산지회	안건1. 9월 셋째주 주요 일정 집행의 건 안건2. 기타안건
10-40	18.10.01	세종공업지회	안건1. 10월 투쟁계획 확정의 건 안건2. 신규지회 설립 승인의 건 안건3. 장기파업투쟁지원금 요청 승인의 건 안건4. 투쟁기금 사용 승인의 건 안건5. 기타안건

차수	날짜	장소	주요안건
10-41	18.10.08	고강알루미늄지회	안건1. 10월 세부계획 집행의 건 안건2. 2018년 지부집단교섭 의견접근안 승인의 건 안건3. 00지회 조사위원회 구성 건 안건4. 기타안건
10-42	18.10.22	동진지회	안건1. 10월 넷째주~11월초 주요일정 확인 및 조직집행건 안건2. 기타안건
10-43	18.10.29	고강알루미늄지회	안건1. 전국노동자대회 조직의 건 안건2. 기타안건
10-44	18.11.05	세종공업지회	안건1. 전국노동자대회 조직점검의 건 안건2. 노조 10기2년차 대의원 선거 진행의 건 안건3. 11.21 총파업 진행의 건 안건4. 기타안건
10-45	18.11.12	한국ITW울산지회	안건1. 고강알루미늄지회 조합비 납부유예 신청 승인의 건 안건2. 광주형 일자리 반대. 자동차산업과 울산경제 살리기 금속 원하청 결의대회 안건3. 기타안건
10-46	18.11.19	고강알루미늄지회	안건1. 11.21 총파업 및 주요 투쟁 진행의 건 안건2. 부서 및 위원회 주요사업 진행의 건 안건3. 기타안건
10-47	18.11.26	고강알루미늄지회	안건1. 12월1일 민중총궐기 참가 조직의 건 안건2. 고강알루미늄지회 구조조정 저지 및 민주노조 사수 투쟁의 건 안건3. 기타안건
10-48	18.12.03	고강알루미늄지회	안건1. 고강알루미늄지회 전면파업 100일 투쟁 결의대회 및 투쟁문화제 조직의 건 안건2. 부서 및 위원회 사업 진행의 건 안건3. 조사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안건4. 기타안건

차수	날짜	장소	주요안건
10-49	18.12.10	고강알루미늄지회	안건1. 12월 주요 투쟁 진행의 건 안건2. 노조 10기2년차 대의원 선거 및 지부 10기 2년차 대의원 선거 진행의 건 안건3. 기타안건
10-50	18.12.17	고강알루미늄지회	안건1. 탄력근로제 저지! 노동법 개정! 금속노조 결의대회 안건2. 노조 대의원 선거 및 지부대의원 선거 진행의 건 안건3.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10-51	18.12.24	고강알루미늄지회	안건1. 지부 투쟁기금 사용 사후 승인의 건 안건2. 목관전용 승인의 건 안건3. 10기2년차 가예산 승인의 건 안건4. 주요투쟁 및 일정 진행의 건

2-2. 대의원대회

1) 정기대의원대회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7년 12월 11일 (월) 9시 / 장소: 경주 성호리조트

○ 개회식 및 교육

○ 본회의

- ① 성원보고(총원 151명 미선출 23명 재적 128명 참석 112명) 선포
- ② 서기선출 : 김종현(지부 조직2부장)
- ③ 감표위원 선출 : 41번 손봉남(세종)/ 71번 이귀해(한국ITW) /
81번 전조환(한국프랜지) 111번 김종현(서연이화)
- ④ 자료수정
13P 23번 공석 -> 최용석 대의원, 24번 공석 -> 이응광 대의원
15P 58번 공석 -> 이 현 대의원, 59번 공석 -> 오유훈 대의원
- ⑤ 회의자료 순서는 보고 2가지, 안건 8가지 순서대로 하기로 함
- 원안통과

⑥ 보고사항

보고1 울산지부 9기 2년차 사업보고
보고2 금속노조 10기 1년차 사업계획 보고
- 보고1, 2는 자료로 대체하기로 동의함

⑦ 안건토론

안건1 9기 2년차 사업평가 및 결산보고 상정.

- 9기 2년차 사업평가 보고 : 지부 사무국장
 - 부서 위원회 별로 사업평가는 자료로 대체하기로 동의함
 - 질문과 의견이 없어서 통과함.
 - 조사통계부 79페이지 통상임금 집단소송에 관해서 동지들에게 설명을 당부함
 - 80페이지 하단 유일교섭단체 및 퇴직자 자녀우선채용 건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요구사항에 배치되고, 노조정신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지부운영위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할 것임

- 결산보고 : 감사가 없는 관계로 지부 총무부장이 결산보고 하는 것에 동의함
 - 1/4분기 업무부분, 재정부분 감사 별다른 지적사항 없음
 - 2/4분기 업무부분 감사준비와 관련하여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후 감사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 재정부분 감사 별다른 지적사항 없음
 - 3/4분기 업무부분, 재정부분 감사 별다른 지적사항 없음
 - 4/4분기 업무부분, 재정부분 감사 별다른 지적사항 없음
 - 결산보고서 보고 함
 - 공동회계는 중앙과 현대지부 감사가 감사를 하기 때문에 앞선 보고로 생략 함
 - 사회공헌기금은 1/4부터 4/4분기까지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음.
 - 질문과 의견이 없어서 통과 함

안건2 10기 1년차 사업계획 확정 건

- 지부 사무국장 보고
- 질문과 의견이 없어서 원안통과 함

안건3 10기 1년차 사업예산 확정 건

- 지부 사무국장 보고
- 질문과 의견이 없어서 원안통과 함

안건4 금속노조 10기 1년차 중앙위원 선출 건

- 지부 사무국장, 의장님 발제 보고
- 지부운영위에 위임하고 원안통과 함

안건5 민조노총 파견 중앙위원 및 대의원 선출 건

- 지부 사무국장, 의장님 발제
- 지부운영위에 위임하고 원안통과 함

안건6 10기 울산지부 감사위원 선출 건

- 한국프랜지지회 이상순동지, 세종공업지회 황승연동지, 한온시스템 김주환동지
- 재적 128명, 참가 112명, 투표자 104명, 기권 8명
 - 이상순동지 : 찬성 - 97명, 반대 - 5명, 무효 - 2명
 - 황승연동지 : 찬성 - 97명, 반대 - 5명, 무효 - 2명

- 김주환동지 : 찬성 - 98명, 반대 - 4명, 무효 - 2명
- 찬성 과반이 넘어서 10기 1년차 울산지부 감사위원 선출 확정 함.

안전7 기타 안전

- 없음.

안전8 결의문 채택의 건

- 말레동현지회 박희매 대의원, 서연이화지회 김성중 대의원

15시 폐회선언

2) 임시대의원대회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8년 3월 19일(월) 09시 30분~
- 장소: 삼산근로자복지회관

○ 개회식

○ 교육

○ 본회의

개회선언(의장 : 강수열 지부장)

① 성원보고

총원 155명, 미선출 26명, 재적 129명, 참석 111명 성원이 되었음을 선포

② 서기선출 : 김종현(지부 조직2부장)

③ 감표위원 : 지부운영위(각 지회장 - 세종, 덕양산업, 서연이화, 프랜지, 동진, 한국ITW, 말레동현, 한온, 서연씨엔에프, 고강, 현중사내하청, 대흥공업)

④ 회순통과

- 원안통과

⑤ 자료수정

- P17 공석-> 이성호

⑥ 본안건

보고사항

- 1) 투쟁방침 : 지부 사무국장 발제
 - 2) 임단협 요구안 : 지부 사무국장 발제
- 질문 없음

안전토론

안전 1호. 울산지부 2018년 지부집단교섭 요구안 및 투쟁방침 확정건

- 지부 사무국장 발제

○ 자료추가 p.108 하단

3. 집단교섭 미참여 사업장(한온시스템 포함) 필수요구

회사는 금속노조 울산지부와 울산지역사용자 단체가 맺은 집단교섭 합의 사항인

확대간부(60HR) 및 울산지부 교육위원(72HR) 유급활동 시간을 보장한다.

-> 질문과 의견 없음, 원안통과

안전 2호. 기타안전

-> 없음

안전 3호. 결의문 채택의 건

-> 결의문을 원안대로 통과

-> 서연씨엔에프지회 정외숙 대의원 낭독

폐회선언

3. 2018년 교섭보고

3-1. 중앙교섭 보고

금속산별협약

전 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협의회”)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금속산업과 회사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협약의 우선 적용】

본 협약은 조합과 사용자협의회와 회사가 맺은 산별협약으로서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를 적용범위로 하며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 및 사업장 단체협약에 우선한다. 다만, 사업장 단체협약에 이미 확보되었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조합활동 권리와 기존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 2 조 【사용자단체 가입】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여 조합과 중앙교섭에 적극 임하도록 한다.

제 3 조 【유일교섭 단체】

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조합이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노동조건·조합활동권리와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 2의 노

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산별협약준수조치】

사용자협의회는 미 합의한 회사 및 향후 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는 금속노조 관계사용자에 대해서는 산별협약을 준수하도록 조치한다.

제 5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복수노조 시 노사가 합의하는 자율적 교섭방식을 준수한다.

제 6조 【산별교섭 법제화 추진】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산별교섭 안착화를 위하여 법제도 개선요구 등을 포함한 노사공동선언을 한다. 노사 공동선언을 위해 노사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하고 2017년 9월말까지 최종합의 한다.

제 2 장 조합활동 보장

제 7 조 【조합원 및 조합간부 교육시간】

- ① 조합원의 유급 교육시간은 년 8시간을 보장한다.
- ② 조합간부의 유급 교육시간은 제1항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포함하여 분기별 6시간(연간 24시간)을 보장하되, 조합간부는 지회 임원 및 상집간부로 한다.

제 8 조 【대의원 활동시간】

조합 대의원(중앙.지부)의 활동시간은 월 5시간(연간 60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제 9 조 【중앙위원 활동시간】

조합의 선출직 중앙위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급 활동시간을 부여한다.

1. 조합 위원장 명의의 중앙위원회 소집 공문에 따른 회의시간
2. 조합 지부장 명의의 소집공문에 따른 지부운영위원회, 지부대의원회의 참석시간

제 10 조 【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 활동시간】

회사는 선출직인 중앙 감사위원, 중앙 선거관리위원들의 조합활동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다만, 조합은 7일전 위원장의 명의로 회사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열람·복사 편의와 자료제공】

- ① 회사는 조합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을 비롯한 회사의 제 규정·규칙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인사방침, 인력수급계획, 모집 및 훈련), 노동안전에 관한 사항,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 등 경영실적과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회사의 재무구조 일반적인 사항, 기타 조합활동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를 제공하고 이의 열람과 복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은 회사가 기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제 12 조 【조합전임】

회사는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조합 중앙 임원 또는 지부 임원의 전임을 사업장 단체협약에 규정된 대로 인정한다.

제 13 조 【노조전임자】

노조전임자와 관련한 내용은 노사합의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 14 조 【전임자의 처우】

- ① 회사는 조합 전임자의 전임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② 회사는 전임자의 전임 해제 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원직의 소멸로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유사직으로 발령한다.

제 15 조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손배·가압류 관련】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

제 16 조【조합비 등 일괄공제】

회사는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 공제하여 급여일 다음 날까지 공제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하고, 동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까지 인도한다.

제 3 장 노동조건, 임금, 퇴직금

제 17 조 【노동시간】

- 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노동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 ② 근무시간 및 이와 연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대 등 대기업 시행방안을 참조하며, 노사간 합의 없이는 기존 임금을 저하하지 아니한다.

제 18 조 【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 변경】

- ① 회사는 심야노동철폐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등 교대제 변경을 2014년 3월말까지 1차 협력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 ② 회사는 교대제 변경을 하는 경우 월급제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장별로 근무형태변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다.
- ③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완성차의 주간연속 2교대 시행이 늦어지거나 당해 사업장의 준비부족으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는 시행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2013년 12월 말일까지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 ④ 자동차부품사가 아닌 회사와 사업장 특성상 본조의 적용이 어렵다고 노사간 합의한 경우에는 본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노사자율로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교대제 변경을 합의하여 시행한다.
- ⑤ 조합과 사용자협의회는 교대제 변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3월말까지 부품사교대제 개선위원회를 구성하며, 부품사교대제 개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19 조 【금속산업 최저임금】

-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8,400원과 월 통상임금 1,898,4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최저임금 적용 시 기존 노동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 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경우도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 ④ 적용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 20 조 【임금 ■노동시간체계 개선】

- ① 회사는 주간 실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근무형태 변경 또는 교대제도 개선방안을 노사합의로 정한다.

- ② 회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를 일방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 ③ 회사는 주간연속2교대제 등 근무형태 변경 시 임금보전을 위한 방안을 당해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정한다.
- ④ 연간 실노동시간은 1,800시간을 목표로 하며, 구체적인 단축방안은 사업장별 실노동시간 조사위원회에서 노사합의로 정한다.
- ⑤ 월급제 시행계획은 2017년 말까지 각 사업장별 노사합의로 정한다.

제 21 조 【통상임금】

- ①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결정한다.
- ② 회사는 기존의 정기상여금을 일방적으로 변동상여금 또는 차등상여금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제 22 조 【임금차별 해소】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포괄임금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비정규직(단시간제, 기간제, 파견제)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본급 인상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 23 조 【퇴직금 및 퇴직연금】

- ① 회사는 현행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며, 노사합의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 ② 회사는 조합이 퇴직금 적립과 운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시에는 관련자료를 15일 이내에 제공한다.
- ③ 회사와 조합은 퇴직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 퇴직연금 소위원회를 설치하며, 퇴직연금소위원회는 산별연금 도입을 위한 법률적 검토 및 퇴직연금 도입방안 등을 논의하며, 소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24 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회사와 조합은 경영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하여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

제 4장 건강권, 노동안전보건

제 25 조 【일터 괴롭힘 금지】

- ① 회사는 지속적·반복적으로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훼손·침해하는 일터괴롭힘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저성과를 유도하는 행위 등)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노동자가 제1항의 일터괴롭힘이라 주장하면, 즉시 노사동수의 조사위원회를 사업장 특성에 맞추어 구성하여 진상조사, 일터괴롭힘 여부의 인정, 시정조치 권고 등을 15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위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일터 괴롭힘으로 인정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따라야 하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배치전환 등을 통하여 일터괴롭힘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일터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6 조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 ① 노사는 근골격계 예방과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다루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근골격계질환 공동대책위원회와 부서별 실행위원회의 설치·운영 사항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위험요인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질환 호소자의 증상조사 및 질환자의 치료와 산재 처리에 관한 사항
 5. 근골격계질환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6. 기타 당해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② 회사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와 고시를 준수한다.
- ③ 노사는 필요시 노사합의로 외부 유자격 전문가(의사, 교수 등)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제 27 조 【산재은폐 방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제반 응급조치를 취한 후 조합에 통보한다.

제 28 조 【산업재해 예방】

회사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하고, 가치 있는 노동자의 삶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작업방식과 작업환경 등의 변경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때에는

노사협의로 결정한다.

2. 노측 안전보건 담당자 1인(명예산업안전감독관 또는 노동안전부장)에 대하여 인정하는 월별 유급 재해예방활동은 100인 이하 16시간, 200인 이하 20시간, 300인 이하 24시간, 500인 미만 30시간, 500인 이상 사업장은 34시간으로 한다.
3. 회사는 재해발생시 관계기관에 신속히 산재신청을 하며, 재해자가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29 조 【발암물질 금지 및 예방】

① 조합과 사용자협의회는 다음 각호를 시행한다.

1. 법에서 정한 사용금지 물질 또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성 유해물질(이하 “발암물질”이라 함)의 유해성,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조사방법과 전문평가(조사)기관 등을 선정한다.
2. 발암물질의 전문기관 조사는 2년에 1회 실시한다.
3. 사용금지 물질 또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의 우선대체 원칙을 수립하고 노사 공동으로 대체물질 확보 등 대책을 강구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호 사항을 준수한다.

1. 조합과 사용자협의회가 공동으로 선정한 전문 평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조사비용을 부담한다.
2. 허용기준을 초과한 발암물질에 노출 된 작업복의 2차 오염을 막기 위하여 샤워장, 탈의실, 세탁처리 방법은 지회(분회)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3. 발암물질 실태 조사결과에 의거,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발암물질 교육은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한다.
5. 위 발암물질 관련 합의 사항은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도록 한다.

제 30 조 【위험성 평가】

- ① 회사는 산업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매년 조합(지회,분회)과 함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산업재해 감소 대책을 수립한다.
- ② 회사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노사동수가 참여하며, 조합측 인원내 대한 회의참석 시간 및 활동시간을 보장한다. 단, 위험성 평가 실시기구,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협의로 정한다.

제 5 장 고 용 안 정

제 31 조 【해외공장】

- ① 회사는 해외공장 신설계획 수립시 조합에 통보·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 ② 회사는 해외공장 생산제품을 국내로 반입시 조합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그 계획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다만, 고용문제 발생시 조합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한다.
- ③ 회사는 연구개발비 비중을 높이고 국내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 ④ 조합이 해외공장 관련자료 요청시 열람·복사할 수 있고 회사는 경영계획을 설명한다. 다만, 회사의 기밀에 관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제 32 조 【신기계도입, 공장이전】

- ① 회사는 신기계, 신기술의 도입 시 45일전에 조합에 통보해야 하고 이와 관련 고용안정의 변화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
- ② 회사는 공장이전(연구소 포함)시 7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설명하며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에 관하여는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

제 33 조 【별도법인】

- ① 회사는 별도법인 신설계획 수립 시 조합에 통보·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 ② 조합은 별도법인 설립에 관하여 관련자료 요청 시 열람할 수 있고 설명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경영계획을 설명한다.
- ③ 별도법인 신설시 인원채용은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 34 조 【분할, 합병, 분사】

회사는 분할·합병·매각 및 분사 시 7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노동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조합과 합의하여 추진한다.

제 35 조 【적정인원, 배치전환】

회사는 자연감소 시 적정인원을 유지하며, 배치전환 시 해당 조합원과 충분히 사전 협의하고 문제발생시 조합과 협의하며, 공장간 이동시에는 본인의 동의를 구하여 실시한다.

제 36 조 【산업공동화 대책】

- ① 회사는 연구개발비를 높이고 국내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 ② 회사는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를 위해 노력한다.
- ③ 회사는 국내자본이 국내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한다.

제 37 조 【고용안정 등】

- ① 회사는 해당 사업장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보장한다. 다만,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고용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 ② 회사는 사내하청의 변경시 고용, 근속 및 단협(제반사항) 등이 승계될 수 있도록 도급계약에 명시한다.
- ③ 회사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원변동은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에 대해 조합과 합의한다.

제 38 조【신규채용】

회사와 조합은 고용안정과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위한 신규채용 확대를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 1. 회사는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가 있는 부서에서 신규채용을 하게 되는 경우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 사내 채용절차에 따라 우선 채용한다.
- 2. 회사는 연간 신규채용 시 제1호에 의한 채용인력과 회사의 인력분포를 감안하여 만 29세 이하의 청년을 50%이상 채용하도록 한다. 단, 특수직종의 경우 노사협의로 한다.

제 39 조【정년】

- ① 회사는 조합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며, 사업장 노사합의에 따라 시행시기를 앞당긴다.
- ② 조합원의 정년퇴직 시점은 당해 사업장 단체협약을 적용한다.
- ③ 회사는 정년퇴직자 발생시 적정인력 유지를 위해 정규직 신규인력을 채용하도록 한다. 단, 세부방안은 사업장별 노사합의로 정한다.

제 6 장 비정규직 관련

제 40 조【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 ① 회사는 사내하청 및 비정규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고용문제 발생시 고용이 보장되도록 한다.
- ②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사내하청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다.

제 41 조【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

- ① 회사는 현재 운영 중인 생명·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고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행방안을 2018년까지 마련하고 2019년 내에 시행한다. 다만, 안전보건대행기관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회사는 생산에 직접종사하는 상시·지속 업무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위해 지회와 ‘노사공동 TF’를 2019년 안에 구성하여 협의하며, 그 외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TF를 통해 추후 협의한다.

제 42 조【불법 파견 및 용역 사용 금지】

- ① 회사는 불법파견 인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관계기관에 의해 불법파견 확인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회사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부서나 생산 물량을 외주 또는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의 고용안정,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합의하여 추진한다.

제 43 조【임시직의 정규직화】

- ① 임시직의 고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계절적 업무의 경우 예외로 한다.
- ② 임시직 근무자가 있는 부서에서는 인원보충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시직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 ③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임시직 근무기간을 수습기간에 포함한다.

제 44 조【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 ①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 처분도 행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사내하청 근기법, 산안법, 산재보상법, 기타 노동관계법을 위반치 않도록 지도 감독

한다.

- ③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동일한 작업복이 지급되도록 하고 복지후생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 ④ 회사는 생산공정에 종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시간, 교대제, 퇴직금,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주휴, 토요일 유급화,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에 노동자와 차별하여 대우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도급계약상에 명시한다.
- ⑤ 회사는 생산공정(직접 및 간접)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해당 업체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도록 권고하며, 3회 이상 법 위반시에는 해당 업체를 변경한다.

제 45 조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회사는 관계기관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결정된 경우에는 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한다.

제 46 조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 ①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재해예방과 산업안전관리를 위해 해당 업체별로 제반 예방활동에 대한 업무지도와 확인감독을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 ② 회사는 사내하청의 작업환경 측정 및 사용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한다.
- ③ 회사는 사내하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 미비, 안전장구 미지급으로 인한 사고와 산재사고 다발업체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 ④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해당업체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

제 47 조【명예감독관 위촉】

회사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적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위촉한 고충처리위원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한다.

제 7장 성폭력 예방 및 금지 요구

제 48 조 【직장 내 성폭력 등의 정의】

‘성폭력’ 및 폭언·폭행이라 함은 상대방의 동의를 수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사용자, 다른 노동

자 및 업무와 관련한 제3자(업무와 관련된 고객 등)에 의한 말, 몸짓, 신체 접촉, 추행, 강간 등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굴욕감을 가져오거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및 폭언·폭행을 말한다.

제 49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①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내용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내용과 성폭력 등 . 폭언. 폭행 예방, 성평등 교육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 ② 회사는 전문 강사 선정 및 교육 시기 등에 대하여 조합과 합의하여 실행한다.

제 50 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대응】

-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폭력 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폭력 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성평등위원회 등 진상조사위원회(각 3인 이내 노사동수,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 2인 이상 포함)를 구성하며, 조사 방법 및 피해자 구제 방안은 사업장별 노사협약에 의한다. 단,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폭력 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 ⑤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직장 내 성폭력 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성폭력 등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⑥ 회사는 성폭력 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 및 피해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노동자 및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제 8 장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

제 51 조 【영세사업장 정부지원대책 노사공동요구】

회사는 중소기업 고용세액 공제제도의 신설 등 세제지원 확대,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를 5년간 50~30% 차등감면, 설비투자자금 지원과 신규채용 노동자 인건비의 50% 지원, 생산성 향상 기반조성 장려금 지급 등 영세사업장 지원대책을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요구한다.

제 52 조 【우리 쌀 사용】

회사는 사내급식 제공시(외주·위탁업체 포함) 우리 쌀을 사용한다.

제 53 조 【납품 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 폐지】

- ① 회사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근절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
- ② 회사는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단가인하,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한 반품 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으며, 납품단가 결정시 원가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다.
- ③ 사용자협의회와 조합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개선을 위하여 금속노사감시단을 운영하며, 금속노사감시단의 구성과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은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54 조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회사는 연간 거래액(아이템별)이 70억원 이상의 납품계약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제 9 장 금속노사공동위원회

제 55 조 【금속노사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조합과 사용자협의회는 산업공동화 등 기 합의한 연구의제 및 노사합의로 정한 의제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금속노사공동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운영한다.

1. 노동시간단축 및 교대제 개선에 관한 사항
2. 산업공동화 대책에 관한 사항
3. 임금체계 개편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3-1.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기준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산별고용안정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5.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문제와 관련하여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 및 연구 용역에 관한 사항
6. 원하청 거래와 관련한 불합리한 문제 해결 및 정부지원과 노사감시단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는 노사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다.
- ③ 제1항의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56 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며,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기준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는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제 57 조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

회사는 산별임금체계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전국단위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를 금속노조와 함께 2018년 10월까지 구성한다. 세부 운영방안은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한다.

부 칙

제 1 조 【협약의 유효기간】

-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김호규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 직무대행 박근형

3-2. 지부교섭 보고

	2018년 지부집단교섭 요구안	2018년 지부집단교섭 의견접근안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노사 공동위원회 구성	회사는 전국단위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노사공동위 원회를 금속노조와 함께 2018년 10월까지 구성한다. 세부운영방안 은 실무회의를 구성하여 마련한 다.	회사는 산별 임금체계 및 노사관 계 발전을 위한 전국단위 금속산 업 노사 공동위원회를 금속노조 와 함께 2018년 10월까지 구성한 다. 세부 운영방안은 실무위원회 에서 논의한다.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및 총고용보장	회사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하 지 않으며 사업장 내 비정규직 포함한 총고용을 보장한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울산지역 소속 사업장은 정규인력(비정규직 포함)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는다.
임금인상요구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금속노 조 사업장 임금의 상향평준화를 지향하고 하후상박 원칙하에 구 간별 정률인상안을 기준으로 사 업장별 정액인상을 요구한다. 정액 146,746원 인상 (호봉승급 분 제외)	2018년 기본급 인상부분은 당해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결정한다.

- 2018년 10월 4일 17차 지부집단교섭에서 의견 접근

4. 2019년 주요 투쟁사업 집행 보고

1월 집행보고

	2018.01.04.(목)	2018.01.17.(수)
지회	공공연대노조 연대집회	고용지청 앞 항의집회
고강알루미늄지회		1
덕양산업지회		2
세종공업지회	3	1
한국ITW울산지회	1	1
한국프랜지지회		
서연이화지회	2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1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1	1
말레동현필터시스템지회		1
동진지회		1
서연씨엔에프지회	2	
현중일반직지회		
삼성전자서비스울산지회		
지부	5	6
총	14명	15명

	2018.01.12.(금)			2018.01.16.(화)	
지회	최저임금 편법대응 및 미조직 조직화를 위한 선전전				
	07시 상북농공단지	07시 외국인 투자기업단지	14시30분 효문공단	07시 두서농공단지	07시 외국인 투자기업단지
고강알루미늄지회	2			2	
덕양산업지회			1		
세종공업지회			3		
한국TW울산지회					
한국프랜지지회		1			2
서연이화지회			2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2			2
말레동현필터시스템지회		3			2
동진지회			7		
서연씨엔에프지회	2			14	
현중일반직지회					
삼성전자서비스울산지회					
지부	3	3	5	3	3
연대	지역본부2			동성1 민중당1	지역본부4
총	9명	9명	18명	21명	13명

	2018.01.18.(목)			2018.01.23.(화)		
지회	최저임금 편법대응 및 미조직 조직화를 위한 선전전					
	07시 상북농공단지	07시 외국인 투자기업단지	14시30분 효문공단	07시 두서농공단지	07시 외국인 투자기업단지	14시30분 효문공단
고강알루미늄지회	2			2		
덕양산업지회						
세종공업지회			3			
한국TW울산지회			1			1
한국프랜지지회		2				
서연이화지회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2			1	
말레동현필터시스템지회		2			2	
동진지회			8			10
서연씨엔에프지회	2			3		
현중일반직지회						
삼성전자서비스울산지회						
지부	4	2	4	4	4	3
연대	민중당 1			민중당 1	지역본부4	
총	9명	8명	16명	10명	11명	14명

	2018.01.25.(목)			2018.01.30.(화)		
지회	최저임금 편법대응 및 미조직 조직화를 위한 선전전					
	07시 상북농공단지	07시 외국인 투자기업단지	14시30분 효문공단	07시 상북농공단지	07시 외국인 투자기업단지	14시30분 효문공단
고강알루미늄지회	2			2	2	
덕양산업지회			1			
세종공업지회						1
한국TW울산지회			1			
한국프랜지지회		2				
서연이화지회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1			2	
말레동현필터시스템지회		2			2	
동진지회			3			5
서연씨엔에프지회	3			2		
현중일반직지회						
삼성전자서비스울산지회						
지부	3	2	4	3	2	4
연대	민중당1			민중당2	지역본부1	
총	9명	7명	9명	9명	9명	10명

2월 집행보고

	2018.02.02(금)	2018.02.12(월)
지회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투쟁선포대회	박일수열사 추모대회
고강알루미늄지회	5	1
덕양산업지회	3	1
세종공업지회	6	6
한국TW울산지회	9	1
한국프랜지지회	6	1
서연이화지회	3	4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15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5	4
말레동현필터시스템지회		1
동진지회	18	1
서연씨엔에프지회	2	1
현중일반직지회		8
삼성전자서비스울산지회		
대흥공업지회	1	
지부	9	7
개별	5	
총	72명	51명

3월 집행보고

	2018.03.13.(화)	2018.03.15.(목)	2018.03.24.(토)	2018.03.28.(수)
지회	자유한국당 규탄 집회	더불어민주당 규탄 집회	3.24 전국노동자대회	울산 비리 척결 시민 행동의 날 1차
고강알루미늄지회	1	1	16	2
덕양산업지회			18	2
세종공업지회	2		20	2
한국ITW울산지회			7	3
한국프랜지지회			4	
서연이화지회			14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6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2	12	4
말레동현필터시스템지회			8	1
동진지회	1		24	1
서연씨엔에프지회		1	15	3
현중일반직지회				
삼성전자서비스울산지회	1		5	
대흥공업지회	1			1
대륙금속지회			10	
현대모비스울산지회			4	
지부	4	5	1	3
총	10명	9명	164명	22명

4월 집행보고

	2018.04.06.(화)	2018.04.10.(화)	2018.04.11.(수)
지회	울산 비리 척결 시민 행동의 날 2차	현중재벌규탄 민주노총 울산 결의대회	현중 구조조정중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반대 더불어민주당 항의농성
고강알루미늄지회	1		1
덕양산업지회			
세종공업지회		12	1
한국TW울산지회	3	6	
한국프랜지지회			2
서연이화지회			2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7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3	1
말레동현필터시스템지회			1
동진지회		1	
서연씨엔에프지회	3	2	1
현중일반직지회			
삼성전자서비스울산지회			
대흥공업지회		6	
대륙금속지회			
현대모비스울산지회	50		
지부	6	3	4
총	63명	40명	13명

	2018.04.20.(금)	2018.04.21.(토)	2018.04.25.(수)	2018.04.26.(목)
지회	구조조정 저지현중재발규탄 민주노총 울산 2차 결의대회	최저임금 개악저지 비정규직철폐 4.21 대행진	현대중공업 출입문 가맹조직 집중 출투	현대중공업 구조조정저지 고용안정쟁취 금속노조 울산지역본부 공동결의대회
고강알루미늄지회	5			11
덕양산업지회	4		1	9
세종공업지회	10		1	13
한국TW울산지회	5			7
한국프랜지지회	11		2	12
서연이화지회	10			6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10	7		10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4			8
말레동현필터시스템지회	4			3
동진지회	8		1	16
서연씨엔에프지회	10			4
현중일반직지회				
삼성전자서비스울산지회		6		
대흥공업지회	2			6
대륙금속지회	1			2
현대모비스울산지회			2	61
지부	6		6	10
총	90명	13명	13명	178명

5월 집행보고

	2018.05.21.(월)	2018.05.24.(목)	2018.05.28.(월)
지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항의 농성 노조 시국농성장 결합	문재인정부규탄 선전전 민주당 울산시당 앞	최저임금 개악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울산대회
고강알루미늄지회	3	4	40
덕양산업지회	1		14
세종공업지회	2	3	25
한국TW울산지회	1		84
한국프랜지지회	6		30
서연이화지회	1		35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10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1	4	47
말레동현필터시스템지회		3	48
동진지회		1	35
서연씨엔에프지회	1	5	70
현중일반직지회			
삼성전자서비스울산지회			
대흥공업지회			8
대륙금속지회		1	4
현대모비스울산지회	1		126
지부	5	3	10
총	22명	24명	586명

6월 집행보고

	2018.06.04.(월)	2018.06.09.(토)	2018.06.21.(목)	2018.06.30.(토)
지회	2018 지부확대간부 울산지부 결의대회	최저임금삭감법폐지 민주노총 울산본부 결의대회	2018 고강알루미늄지회 울산지부 4차 결의대회	전국노동자대회
고강알루미늄지회	13(조합원93)		85	
덕양산업지회	13		5	15
세종공업지회	30		6	21
한국TW울산지회	12		12	
한국프랜지지회	22		11	5
서연이화지회	30		8	10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5		3	6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13		5	11
말레동현필터시스템지회	7		교섭	
동진지회	2	10	12	33
서연씨엔에프지회	17		5	10
현중일반직지회				
삼성전자서비스울산지회				
대흥공업지회	19	1	3	28
대륙금속지회	4		교섭	3
현대모비스울산지회	24	16	6	15
지부	9	5	9	9
총	확간220명 (총313명)	32명	170명	166명

7월 집행보고

	2018.07.13.(수)	2018.07.18.(수)	2018.07.20.(금)
지회	7.13 총파업대회	영남권 결의대회	고강알루미늄지회 구조조정저지 울산지부 5차 결의대회
고강알루미늄지회	94		80
덕양산업지회	35	5	11
세종공업지회	35	7	34
한국TW울산지회	15	5	33
한국프랜지지회	14		
서연이화지회		12	35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5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33	7	7
말레동현필터시스템지회	34	7	55
동진지회	33	4	33
서연씨엔에프지회	17	4	66
현중일반직지회			
삼성전자서비스울산지회			
대흥공업지회	35	4	8
대륙금속지회	17	3	4
현대모비스울산지회	135	3	134
현대모비스물류지회	3		
지부	10	4	9
총	506명	65명	514명

8월 집행보고

	2018.08.11.(토)	2018.08.15.(수)	2018.08.17.(금)	2018.08.20.(월)
지회	8.11 노동자 통일축구대회	8.15 민주노총 결의대회	울산노동자 결의대회 (금속울산지부 총파업대회)	고강알루미늄지회 구조조정저지 울산지부 6차 결의대회
고강알루미늄지회	2		92	92
덕양산업지회	10		17	13
세종공업지회	19	13	36	35
한국TW울산지회	4	2	65	15
한국프랜지지회			19	15
서연이화지회	4		36	27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5	—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6		38	11
말레동현필터시스템지회	3		44	12
동진지회		3	18	7
서연씨엔에프지회		5	67	18
현중일반직지회			—	—
삼성전자서비스울산지회			3	0
대흥공업지회			30	5
대륙금속지회	12	2	3	3
현대모비스울산지회	6		11	2
현대모비스물류지회				
지부	3	5	10	10 지역본부(17명)
총	69명	30명	494명	282명

9월 집행보고

	2018.09.05.(수)	2018.09.12.(수)	2018.09.14.(금)
지회	울산지부 7차 결의대회	울산과학대 투쟁승리 결의대회	울산지부 8차 결의대회
고강알루미늄지회	84	9	84
덕양산업지회	9	7	13
세종공업지회	21	7	35
한국TW울산지회	5	5	7
한국프랜지지회	9	—	8
서연이화지회	30	—	35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8	—	35
말레동현필터시스템지회	5	—	8
동진지회	14	3	2
서연씨엔에프지회	17	—	17
삼성전자서비스울산지회	—	—	—
대흥공업지회	4	2	4
대륙금속지회	3	—	35
현대모비스울산지회	14	15	10
현대모비스물류지회	—	—	—
현대그린푸드지회	—	2	—
지부	8	6	8
총	231명	56명	301명

10월 집행보고

	2018.10.15.(월)	2018.10.18.(목)	2018.10.19.(금)	2018.10.24.(수)
지회	울산지부 9차 결의대회	영남권 결의대회	울산지부 10차 결의대회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고강알루미늄지회	56	60	70	16
덕양산업지회	15	—	—	—
세종공업지회	26	3	13	—
한국TW울산지회	8	4	5	10
한국프랜지지회	9	7	9	17
서연이화지회	22	—	13	2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9	2	12	5
말레동현필터시스템지회	5	1	1	7
동진지회	3	4	2	13
서연씨엔에프지회	15	—	—	6
삼성전자서비스울산지회	—	—	—	—
대흥공업지회	4	3	4	3
대륙금속지회	6	—	38	—
현대모비스울산지회	15	5	12	14
현대모비스물류지회	4	4	3	—
현대그린푸드지회	5	—	—	—
지부	8	6	7	8
총	210명	99명	189명	101명

11월 집행보고

	2018.11.02.(금)	2018.11.10.(토)	2018.11.14.(수)	2018.11.21.(수)
지회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	전태일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광주형일자리 저지 울산경제살리기 울산노동자 결의대회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고강알루미늄지회	11명	72명	12명	70명
덕양산업지회	—	22명	선거	선거
세종공업지회	4명	35명	6명	70명
한국ITW울산지회	—	18명	5명	8명
한국프랜지지회	—	10명	0명	14명
서연이화지회	—	16명	4명	20명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6명	35명	7명	56명
말레동현필터시스템지회	3명	35명	2명	57명
동진지회	15명	24명	3명	42명
서연씨엔에프지회	—	17명	대전출장	12명
삼성전자서비스울산지회	—	35명	0명	3명
대흥공업지회	4명	34명	2명	4명
대륙금속지회	2명	31명	2명	4명
현대모비스울산지회	9명	241명	11명	140명
현대모비스물류지회	—	67명	퇴직금관련 노사간담회	8명
현대그린푸드지회	4명	56명	4명	75명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	—	288명	간부교육	36명
보성테크지회	—	4명	0명	0명
지부	5명	9명	7명	9명
총	63명	1049명	65명	628명

12월 집행보고

	2018.12.01.(토)	2018.12.04.(화)	2018.12.05.(수)	2018.12.19.(수)
지회	민중대회	고강알루미늄 투쟁결의대회 1박2일 노숙상경투쟁	고강알루미늄 전면파업 100일 투쟁결의대회 및 투쟁문화제	탄력근로 확대개약저지 노동법 전면개정 금속노조 결의대회
고강알루미늄지회	23명	75명	75명	0명
덕양산업지회	0명	0명	0명	0명
세종공업지회	10명	2명	28명	1명
한국TW울산지회	5명	1명	10명	0명
한국프랜지지회	0명	0명	11명	2명
서연이화지회	0명	0명	22명	3명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6명	2명	10명	3명
말레동현필터시스템지회	13명	0명	5명	1명
동진지회	2명	1명	5명	2명
서연씨엔에프지회	3명	2명	13명	0명
삼성전자서비스울산지회	0명	0명	4명	0명
대흥공업지회	4명	0명	3명	0명
대륙금속지회	6명	2명	4명	2명
현대모비스울산지회	8명	0명	14명	5명
현대모비스물류지회	11명	3명	4명	4명
현대그린푸드지회	0명	0명	0명	0명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	33명	2명	5명	5명
보성테크지회	4명	0명	3명	0명
지부	6명	3명	7명	6명
지역본부, 개별	2명	1명	1명	5명
총	136명	94명	224명	39명

보 고

노조 10기 2년차 사업계획 및 19년 투쟁방침

1. 정세

가. 정세 종합

1. 세계경제의 하강과 친재벌 정부정책, 노동에 대한 공세

장기저성장 구조속에서 세계경제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전세계적인 투자·수요·소비 전반이 위축되고 있고, 각국정부는 보호무역 기조로 돌아서고 있고 기존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주도 성장전략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정부는 재벌 수직계열화 해소,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등 재벌개혁으로 방향을 잡는것이 아니라 '재벌에 의존하지 않고는 경제를 활성화할 수 없다'는 기조로 정부정책기조를 수정하면서 친재벌 규제완화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재벌대기업과 정부관료의 동맹은 강화되고 있다. 요컨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은 현재, 정부의 산업정책(특히 제조업에서의 산업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산업 전반에 걸쳐 (재벌)대기업에의 의존도만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한국사회를 친(親) (재벌)대기업 방향으로 기울이고 있다.

2019년에도 문재인정부의 '노동배제' '자본편향' 경제정책은 가속화 될것이고 각종 재벌규제 완화 및 '저임금확대' '노동유연화' 등 조직노동에 대한 정치공세와 미조직노동자에 대한 수탈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문재인정부의 지지율은 개혁 지체와 친자본 정책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집권 초기에 비해 대단히 낮아져 있고, 적폐세력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경제정책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왜곡하며 반격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친재벌 행보와 노동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2020년 총선이 다가오는 2019년 연말로 향할수록 정당들의 총선표심을 향한 각개약진으로 인해 국회에서의 각종 제도개혁도 가능한지 않은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동북아 정세는 미국의 패권주의와 한-미-일의 중국에 대한 견제 기조속에 불확실성은 있으나, 문재인정부의 지지율반등 요소가 남북관계개선 이외에는 뚜렷이 보이지 않는 국내적 조건속에서 북미정상회담에 이은 남북정상회담, 남북경협확대 등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진입의 방향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월 27일~28일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올해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상수가 될것이다.

2. 노동유연화·임금체제 개악·노조법개악·구조조정

이런 흐름 속에서, 2019년 노동을 둘러싼 쟁점은 ▲ 노동을 배제한 일방적 산업재편 ▲ 광주형 일자리 등 저임금 노동조건 저하공세 ▲ 사업장내 파업금지, 직장폐쇄 요건 완화, 대체근로 확대 등 단체행동권 제약 노조법 개악 ▲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시간 유연화 및 최저임금제도 개악 ▲ 경사노위를 둘러싼 노·사·정 대화 압박 ▲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구조조정 공세 등이 노동관련 중심의제로 제기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동시간 유연화, 저임금 확대 및 노동조건 저하 피해는 노동조합 보호 바깥의 미조직·비정규 노동자에게 집중될 것이고 정부의 낮은 의지와 국회지형상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동법개정도 쉽지않다. 오히려 ILO핵심협약 비준과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에 대한 개악을 맞바꿔치기하는 노동법 개악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3. 금속노조의 2019년 중심과제 및 투쟁

이런 조건속에서 금속노조는 구조조정·노동유연화·노조법 개악 공세를 막아내고 노동지향적 산업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2019년의 중심과제로 설정하고, 19년 상반기 예상되는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악, 노조법 개악 등 노동개악저지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2020년 총선후까지를 전망하면서 단계적 교섭 및 투쟁 계획 수립으로 산별교섭제도화, 타임오프·창구단일화·손배가압류 폐지등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실제적인 노동법 개정투쟁을 이어나가야 한다.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친재벌성장정책기조에 맞서 원하청 불공정 횡포 근절을 중심으로 한 재벌개혁 투쟁을 사회적 투쟁으로 확대해야 한다. 금속노조 내부적으로는 전면적인 조직확대사업을 통해 20만 산별시대를 열고, 교육연수원 건립을 통한 산별 교육체계 정비와 ‘10년의 전망 5년의 계획’을 수립하는 금속노조 발전전략방침을 수립해야 한다.

나. 국제정세

1) 세계경제

(1) 세계경기, 짧은 상승국면 끝 하강국면 진입

-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지난 10년 간, 낮은 금리와 높은 자산(주식·채권·펀드·부동산) 가격에 따라 소비와 자산 투자가 늘었으며 금융위기 시 위축됐던 기업 생산능력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기업 생산 투자 확대도 일정 정도 있었다. 바로 이것들이 그동안 지표 상 경제회복으로 표현돼 왔었다. 하지만 지금은 지표 상 경기마저 하강국면에 진입하는 셈이다.
- 대부분의 경제전망치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2018년 3% 후반대로 정점을 찍고 2019년 3% 초반 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요컨대, 세계경기는 짧은 상승국면을 끝내고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

(2) 투자·수요·소비 전반의 위축, 경기상승 동력 불투명

- 경기 하강국면은 기업투자자 건설수요 및 소비 모두 위축시킬 것이다. 미국도 2019년 하반기부터 경기 활력이 떨어질 것이며 원자재 개발도상국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못 미친 성장률에 머물 것이다. 기업 설비투자 증가세가 뚜렷이 꺾일 것이므로 철강·기계 산업의 수요둔화가 클 것이다. 여기에 미·중 통상 불확실성이 세계교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
- 세계경기가 언제 다시 살아날 것인지 그 시점도 불확실하다. 중국효과·IT효과라는 뚜렷한 경기상승 동력이 있었던 1990년대·2000년대와 달리 지금은 경기 상승 동력이 뚜렷하지 않다. 산업의 디지털화 효과는 빠르지 않을 것이다. 산업의 디지털화가 실제 수요·소비증가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3) 세계적인 자국 산업 육성정책 흐름

- 세계교역 위축으로 각국마다 ‘자국 내 수요를 통한 성장’ 필요성이 커져 있다. ‘타국 값싼 노동력 - 저가 제품 유입’의 세계화 환경이 지금은 제조업 저성장 및 서비스 산업 중심 성장흐름 지속과 세계교역 둔화, 그리고 보호주의로 바뀌어 있다. 각국 정부의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독일 인더스트리 4.0, 중국 제조 2025 등)은 더 강화될 것이다. 각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재정지출)도 펼칠 것이다. IMF·OECD 등 국제기구들도 공공투자확대·인프라확충 등 적극적 재정 집행을 권고해 왔다. 이에 따라 각국의 국가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

2) 동북아 및 한반도정세

(1) 미국의 패권주의와 동북아 갈등환경으로 인한 불확실성 존재

- ▣ 현재 남북관계는 한미관계와 북미관계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방향으로 구조화돼 있다. 미국은 현재 북한 비핵화 완료시까지 대북 제재 유지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미국 내 보수파와 군산복합체들도 여전히 건재한 상황에서 2월 27일~28일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올해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상수가 될것이다.
- ▣ 한-미-일의 대 중국 견제 구조 속에서 동북아 갈등 환경은 심화돼 있고 미-중 무역 갈등까지 지속되는 중이다. 여기에 헌법 9조 개정 등 일본 아베 정권의 극우적 성격도 새로이 발호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수많은 난제들이 지속돼 있는 셈이다.

(2) 한반도 평화체제진입의 방향성은 지속

- ▣ 이런 가운데, 사상초유의 북한 최고지도자의 방남이 북미정상회담이후로 가시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의 성사는, 이것이 향후 남북당국 관계를 넘어 민간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교류와 경제협력 본격화의 물꼬가 될 가능성이 크다.
- ▣ 속도의 문제이나, 2019년에 추가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또는 한-북-미 3자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다양한 실무자급 회의나 기업들의 교류도 잇따를 것이다.
- ▣ 이 같은 흐름은 한반도에서는 건설·철도·에너지 등의 인프라 개발, 자원 개발, 관광 기획, 대북 지원 등의 사업 본격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정부는 당장 남북협력기금 누적 잔액 7.1조 원을 쓰는 단기 프로젝트 추진에 돌입할 수 있고 해외 진출 한국 기업들을 불러들이는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정책을 구사할 수도 있다.
- ▣ 요컨대, 동북아 환경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촉매하는 변수들이 맞물려, 한반도 평화 체제 실질적 진입은 담보와 교착국면을 거듭하겠지만, 계속 그 방향으로 전진해갈것은 분명해 보인다.

(3) 정부주도 정책의 한계

- ▣ 한편,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라는 틀속에 움직이는 정부주도의 남북관계의 한계때문에 문제인 정부는 주체적인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분단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민간의 자류적 교류는 제한하고 있다. 지난 11월 초 민주노총 대표단의 방북 불허에도 드러나듯이 정부의 틀을 벗어나는 자주적 교류는 통제하고 있다. 때문에 남북 화해 국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가로막는 분단적 폐 (미군 주둔 및 한미방위조약 문제와 국가보안법, 자주교류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되지 않고 있는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 ▣ 이런 상황속에서 민주노총은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고(노동자 자주 교류 확대) 한반도 평화 정착을 가로

막는 분단 적폐(국가보안법, 한미상호방위조약 등)를 극복하면서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대중적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국내정세

1) 한국경제

(1) 반도체 호황 한계, 기업들의 투자 회피, 수출주도 성장 어려워

□ 반도체 호황은 지속될 수 없다. 2017년 반도체 투자가 60% 이상 확대돼 전체 설비투자 평균치(16%)를 높였으나, 대규모 투자가 일단락되면서 전체 설비투자 평균치마저 감소세로 전환했다. 메모리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으로 반도체 가격이 올랐던 반도체 효과(기저효과)가 사라져 간다.

□ 그 외에, 수출환경 및 미-중 무역 불확실성에 기업들은 현재 투자 회피 상황이다. 국내 금리인상이 기업 자금 조달 여건마저 악화시킬 수 있다. 조선·해운 업종은 자본이 노후설비 교체 외의 투자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특히 자동차 업종도 자본이 완성차 뿐 아니라 관련 부품 생산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 설비투자가 지속되는 것 같은 착시상황은 반도체 기저효과와 유가상승에 기인한 석유화학 부문 설비투자 분 때문이다.

□ 앞으로 수출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가능성은 낮다. 미-중 통상마찰 불확실성도 수출 불투명성을 계속 가중시킨다. 특히 중국기업들의 우리 산업 잠식과 첨단산업 분야 기술을 선점하는 선진국 기업 사이에서 한국 기업들의 입지는 더 좁아져 있다. 요컨대, 당분간 수출주도 성장 자체를 기대하기 어렵다.

(2) 가계구매력·소비도 줄고 고용창출 어려워

□ 수출둔화-기업실적둔화가 임금상승을 낮추고 고용부진마저 이어져 가계구매력이 줄 것이다.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소비심리를 위축시킨다. 금리상승에 따른 부채상환 압력도 소비를 줄이게 한다(가계 빚은 사상 처음으로 1천500조원을 넘어섬). 자산 가격 상승세도 꺾여 자산 보유자마저 소비를 줄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중장기 성장 전망 불투명성은 노후대비를 위해 소비 자체를 더 줄이게 만든다.

□ 우리나라도 2017년부터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2020년부터 감소폭은 더 확대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가능 인구 감소 속도가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빠르다. 이는 내구재 등 소비활력과 주택건설 투자를 더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대신 건강식품·여가·요양·의료 장비용품·교육 등 고령친화 산업은 증가할 것이다.

□ 한편, 20~29세 청년의 실업률(10%) 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계속 갱신해가면서 높은 청년실업률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여기에 2차 베이비붐 세대(1968년~1974년생)의 자녀들이 고용시장 경쟁체제에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청년실업은 더 장기화될 수 있다.

(3) 고용부진 상황과 저임금확대, 그리고 자영업 수익률 악화와 구조조정

□ 수출에 의존하던 제조업에서 고용창출은 부진해지고 건설 마이너스(-) 성장으로 건설업 고용은 감소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같은 고용 상황은 지속적으로 저임금 확대를 부추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고용부진이 저임금 확대를 부추기는 이유는, 저부가가치-저생산성 업종 종사 저임금 노동자가 OECD 일반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이다. 한국 임금노동자의 1인당 소득은 OECD 평균의 68% 수준에 머물러 있다(OECD평균 47.6천 달러의 67.6% 수준인 32.2천 달러).

□ 소비전반이 줄어 자영업 수익률마저 낮아질 것이므로 자영업 시장은 경기 대응 역할인 임금 노동자의 완충 지대 역할을 전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한 자영업 퇴출(구조조정)까지 이어지면 고용축소 추가 요인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6백 만 명에 육박하는데, 이는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38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자영업 비중일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1인당 평균소득은 OECD 평균(49.8천 달러)의 32%(16.1천 달러)에 불과하다.

2) 제조업 산업전망

- 2019년 세계경제가 저성장국면으로 지속되면서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최근 한국의 제조업을 이끌어 왔던 반도체 시장 성장세가 정체되면서 전기전자와 기계 산업은 후퇴로, 자동차, 철강은 내수부진과 수요산업의 경기악화로 하락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조선업은 바닥을 치고 회복되고 있으나 성장세는 미약할 전망

(1) 자동차

-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시장의 수요둔화, 글로벌 경쟁심화 등으로 생산과 수출은 줄어들 전망
- 미중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통상환경악화,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위기설과 관세분쟁, 재료비 상승으로 인한 차량 구매비용 가중 등 부정적 요인이 우세하나 신차출시효과, 전기차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등 긍정적 요인으로 침체효과를 완화해 급격하락이 예상되지는 않음. 무디스는 2019년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2018년 1.8%, 2019년 1.4%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자율주행차 시장이 열리면서 디지털 전장 부품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과 세계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의 주도권 싸움, 이종기업들이 합종연횡하는 자동차 산업의 융복합 혁신경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 국내적으로는 신규취업자수 감소, 소비심리악화,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 이자부담 확대 등으로 인해 민간소비는 둔화되며 내수 수요는 정체될것으로 예상
- 현대차는 12월 14일 하반기 해외법인장 회의를 통해 19년 해외시장에서 실적 및 수익성 회복, 구조적 혁신 및 민첩성 제고, 미래사업 실행력 강화를 추진해 미국·중국 등 핵심시장에서 수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논의.
- 산자부는 12월 17일 업무보고를 통해 자동차 부품업계 자금경색 해소 위해 부품업체 대상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 신설, GM 협력업체 대상 만기연장·특례보증 확대, 급증하는 친환경차 수요에 맞게 전기수소차 보급 지원 대폭 확대 및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프로젝트 추진 등 19년 계획을 보고함.
- 또한 12월 18일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부품업계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3.5조원 + α 자금 지원, 개소세 감면 연장, 노후차 교체 등 내수확대로 부품기업 일감확보 지원, 부품기업의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차 핵심기술 R&D 2조원 투자 등의 부품사 지원방안을 발표함.

(2) 조선

- 조선업은 세계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한국에 유리한 선종들의 발주 증가등으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단계로 전환되고 있으나 상승폭이 아직까지는 크지는 않음 상황임. LNG선 시장확대 및 대형 컨테이너선 발주가 증가하며 국내조선사들의 신규수주는 개선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서 상승폭이 크지는 않음. 2019년 신규수주량은 2018년 1,000만 CGT에서 1,250만 CGT로 증가할 전망
- 조선 건조 단가도 2018년보다 상승될것으로 예상되나 금융위기 이전 호황기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전망이고, 선박수출도 2018년 195억달러에서 290억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나 전방산업인 조선해운 시황이 회복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선업황 개선세는 다소 불안요소가 있음.
- 특히 대형 조선소는 업황 개선세가 유지되겠지만 중소형 조선소는 여전히 신규수주가 바닥인 국면이라 조선사간에 양극화가 심화되며 추가 구조조정의 가능성도 있음. 수주회복세는 대형조선사들이 강점인 대형선박과 고부가가치선 위주로 이뤄지고 있음. 대형조선소도 BIG2로의 재편 등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함.
- 강화된 환경규제에 대응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지 않는 LNG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기술경쟁력에서 우위가 있는 국내조선사들에게 유리한 환경임.
- 산자부는 12월 17일 업무보고를 통해 2025년까지 LNG연료추진선 140척을 발주(1조원규모)하여 친환경

경 선박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수소연료 선박('19~'23년 420억원), 자율운항선박('20~'25년 5천억원)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조선사·기자재 업체에 1.7조원의 금융지원 제공계획을 발표함.

(3) 철강

- 세계 철강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 자동차산업 등 주요 수요산업의 불황지속으로 철강생산은 다소 감소할 전망.
- 세계 철강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미국의 철강 수입품에 대한 쿼터제 일부 예외 조치 등으로 수출은 소폭 회복될 전망이고, 주요 수요산업인 조선업이 회복세로 가고 있어 내수수요의 부진 감소폭을 완화할 전망.
- 인도철강 산업의 급부상(세계 2위로 성장) 및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철강 감산을 완화하는 등 아시아 지역의 철강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중국은 오염물질 배출 감축을 위해 철광석을 이용하는 고로의 비중을 줄이고 철스크랩을 이용하는 전기로 비중을 높일 계획이라 생산원료의 가격 변동 요인이 국내 철강산업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4) 기계

- 세계경제가 저성장기조로 가면서 기업투자와 건설수요가 위축될것으로 예상, 국내적으로는 건설투자가 하강되고 있고, 설비투자를 견인한 반도체 산업 투자가 마무리 되면서 전반적인 설비투자가 감소할것으로 전망
- 일본, EU 등 선진국의 성장세가 약화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의 경기부진이 이어지면서 일반 기계 수출이 줄어듦 전망임. 그러나 미국은 향후 10년동안 최소 1조 5,000억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고,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인도 등 일부국가를 대상으로한 수출은 증가할 전망이고 부품공급, 수리, 유지 보수등의 기계 지속적인 가동을 위한 기계 판매 서비스업은 확대전망임.
- 산자부는 2020년부터 7년동안 6,000억원 규모로 미래 기계 및 로봇 기술 연구개발 사업추진 발표

(5) 전기전자(ICT)

- 스마트폰은 신제품 출시로 성장이 예상되나, 반도체는 수요둔화로 소폭성장, 디스플레이 패널은 감소세 완화 전망
- 4차 산업 확대로 부품수요는 지속되겠으나, 글로벌 경쟁 심화, 해외공장 생산증가로 생산과 수출은 소폭증가예상, 반도체는 메모리 호황지속과 자율주행차 확대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확대가 예상되고 스마트폰은 폴더블 및 5G 스마트폰 출시로 성장세로 전망, 디스플레이는 글로벌 경쟁심화로 공급과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에 따른 수용확대로 감소세가 완화될것으로 전망

3)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1) 시작도 못한 소득주도성장

- 소득주도성장 정책(보편적 복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그리고 공정경제 확립을 포괄하는 복지국가 정책 수단들)이 논란만 키운채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2019년으로 넘어왔다. 그러나 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과 신년구상에서도 소득주도성장은 단어만 살아있고 우선순위에서도 밀려있다.
- 보육·교육·의료·요양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보장성이 제대로 정착이 안 돼 있고,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제대로 확충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도 사각지대가 전체 대상자의 절반에 이른다.
-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대선공약도 이미 폐기된 상황이며,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공공기관에서부터 온전한 정착이 지연돼 있다.
-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산업정책이 과연 있긴 한가라는 국민적인 의문도 커져있으며, 정부의 공정경제 및 재벌개혁 정책은 실질적으로 정착되지도 못하고 정부우선과제에서 밀려있다.
-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그 실효성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정책을 독점하고 있는 재벌대기업과 기득권 세력(여야를 막론하고)의 반대 공세에 2019년 내내 시달릴 것이다.

(2) 재벌대기업 중심의 정부정책

- 문재인정부는 초기, 낙수효과(대기업, 재벌, 고소득층 등의 성과가 늘면 후발·낙후 부문에 유입되는 효과)가 없어진 한국경제 체제에서 대기업 위주 성장정책이 도리어 '갑질'과 불공정거리를 야기해 불평등(사회양극화)만 심화시켰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대기업 경제권력 하에 수직계열화 돼 있는 기존 체제는 근본 변화 없이 2019년으로 진입해 있다.
- 구체적으로, 문재인정부가 밝혀온 공정경제 및 재벌개혁 정책은 실질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재벌의 갑질 해소(공정경제)와 특히 재벌개혁이 병행되지 않고, 원-하청 관계를 통한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은 그대로다. 정부의 중소기업 혁신 생태계 구축방안도 실효성 있는 가시적 성과가 없다.
- 이런 상황에서, 2018년 하반기 본격화 된 국내경기 하향과 고용절벽에 마주하면서, 정부 경제정책은 급속히, 당장 투자 여력이 있고 고용창출(혹은 유지)이 가능한 재벌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규제완화 정책으로 도로 변해 있다. 요컨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은 현재, 정부의 산업정책(특히 제조업에서의 산업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산업 전반에 걸쳐 (재벌)대기업에의 의존도만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한국

사회를 친(親) (재벌)대기업 방향으로 기울이고 있다.

(3) 10% 늘린 정부예산, 일자리 창출 실효성 미지수

□ 문재인정부는 2019년 정부예산안을 2018년보다 9.7% 늘렸다(2000년대 들어 최고 증가율). 이를 통해 정부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지출을 늘릴 것이며, 일자리 창출 예산집행도 늘리려 할 것이다. 정부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도 국가재정을 많이 투입하려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산업단지 환경개선, 혁신 창업, 소상공인 지원, 연구개발(R&D)지원 등을 늘리려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경찰·집배원 등 현장인력 공무원을 늘릴 것이다.

□ 그러나 정부의 산업정책이 부재하고 재벌대기업에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 상황에서 일자리 및 산업 정책 예산지출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4) 문재인정부 노동정책

(1) 민주노총 배제와 저임금 확대 공세

□ 문재인 정부는 18년초에 일방적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후에는 ‘탄력근로시간 제개약’을 첫 의제로 다루고, 최근 광주형 일자리와 대우조선 일방매각을 노조와 아무런 소통이 없이 밀어부치는 등 민주노총에 대한 패싱은 더욱 강화하며 기울어진 협상장인 노사정대화를 강요하고 있다.

□ 경기둔화에 따라 높아지는 고용불안정성을 악용하여, 광주형 일자리 등 저임금 확대 공세와 노동조건 저하 압박이 노동전반에 확산되고 있음. 특히 저임금 확대 및 노동조건 저하 피해는 노동조합 보호 바깥의 미조직·비정규에게 집중될 것이다.

(2) 자본의 노동시간 유연화 공세

□ 기업실적 악화를 빌미로, 자본의 노동시간 유연화 공세도 드셀 것이다(이미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공세가 본격화돼 있음). 당연히 노동시간 유연화 공세의 피해는 노동조합 보호 바깥의 미조직·비정규 노동자에게 집중될 것이다.

□ 소득 양극화 수준은 지금 최악이다. 때문에 노동 전반의 임금불평등 해소방안을 둘러싼 공방도 2019년 내내 본격화될 것이다. 특히 201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 된 경기하락이 저임금 확대를 더 부추기고 있어 임금체계 개편 기획은 더 대두할 것이다.

□ 차기연도(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둘러싼 공방은 2018년보다 더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 공방은, 2018년의 최저임금 산업범위 확대 개약 법제화 상황,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2020

년 1만원 공약 폐기 상황, 경기하락에 따른 중소기업체사의 지불능력 문제점이 더욱 부각돼 있는 상황 등이 복잡하게 맞물릴 것이다.

(3) 사회적 의제가 될 '일자리'문제

▣ 2019년에도 '일자리'가 사회적 의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년 미만 단기 근속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고도의 고용불안정 사회(OECD 평균의 두 배 육박)이며 저부가가치-저생산성 저임금 일자리가 많고 우리나라 고용서비스기관이 양질의 일자리 중개 기능조차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각 산업 및 업종별로 획기적 산업투자 없이는 좋은 일자리 창출의 뾰족한 대책은 없다.

▣ 기존 조직노동과는 다른 새로운 임금 체계를 전제로 지방정부가 부지와 투자금을 대고 재벌·대기업이 생산물량을 대는 형태로 독립법인 공장을 새로 짓는 지방정부 주도형 일자리 창출 모델(가령 광주형일자리)을 전국에 확산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지만 노동법위반 및 공장의 지속가능성이 계속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

▣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도 현재 후퇴해 있거나 지연돼 있다.

(4)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법 개악국면의 상존

▣ ILO 출범 100주년(2019. 6.)을 앞두고 ILO 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와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호 협약) 비준과 관련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 의제가 쟁점으로 대두해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이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오히려 핵심협약 비준과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에 대한 개악을 맞바꿔치기하는 노동법 개악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5) 재벌특혜세력의 반격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동법 개악! 규제완화!

재벌·대기업·보수언론과 관료집단의 적폐세력 동맹은 촛불투쟁 이후 문재인 정부 집권초기 적폐청산과 재벌개혁 움직임이 확산되는 속에서, 잠시 몸을 낮추는듯하더니, 문재인 정부가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조급증을 드러내고 재벌에게 투자와 일자리를 구걸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하는 등 “재벌대기업의 경제활력제고”로 경제정책을 전환하자 재벌특혜세력은 힘을 받아 역공에 나서고 있다.

경총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폐지,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최대 4년),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강화, 단체교섭 대상 명확화(인사경영사

항, 정치적 문제 교섭대상 제외 명확화), 직장폐쇄 요건 완화(예방적 직장폐쇄 허용)등 ” 등이 필요하다고 노동법 개악을 경사노위에 주문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구분 적용, 결정주기 확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특별 연장근로 허용, 재량근로제 확대를 주장하며 노동시간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올해 1월 3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박용만 대한 상의 회장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새해 정책 방향에 저희 기업들의 호소가 상당수 반영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냈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외의 불안과 부담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완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투자분위기를 높이고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화답하는 등 정부의 친재벌 정책은 강화되고 있다.

6) 국내 정치

적폐청산 제도개혁의 정체와 적폐세력의 반격

□ 문재인정부의 지지율은 개혁의 지체와 친자본 정책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집권 초기에 비해 대단히 낮아져 있고, 적폐세력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경제정책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왜곡하며 반격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 상황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친재벌 행보와 노동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2020년 총선이 다가오는 2019년 연말로 향할수록 정당들의 총선표심을 향한 각개약진으로 인해 국회에서의 각종 제도개혁도 가능한지 않은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다. 주체 정세

1) 전체 운동 상황

(1) 늘어나는 문재인정부 규탄 흐름

□ 한국사회 대개혁 과제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과제와 ‘부분적으로’ 공존한다. 또한 민주주의 진전 및 한반도 평화체제 진입 과제도 역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와 ‘부분적으로’ 공존한다. 때문에 그동안 전체운동 전반에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가 부분적으로 지속돼 왔다.

□ 그러나, 2018년을 경과하고 2019년에 진입하면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정착은 더 불안정해지고 산업정책을 독점하는 재벌대기업의 정부정책 개입력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대통령 주도 국정동력이 약화되는 흐름까지 가세돼 있어, 문재인정부에 대한 기대는 예전보다 줄었고 반대로 문재인정부 규탄 흐름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2) 전체운동 전반의 연대는 미흡

□ 그런데 전체운동 전반은, 문재인정부를 대체할 진보정치 운동이 ‘대중적으로’ 온전히 정립돼 있지 못한 채 분열돼 있고, 때문에 문재인정부의 실패가 진보정치로 대체되기보다 재벌-재벌특혜세력 동맹에만 반사이익이 되는 현실에도 직면해 있다.

□ 이에, 노동운동·민중운동·진보운동 전반의 연대는, 정부에 대한 ‘기대나 규탄이나’를 넘어 한국사회 대개혁 실천전략이 온전히 합의·정립되지 못한 채, 박근혜 퇴진투쟁으로 집결해 펼쳤던 연대운동에 비할 바 없이 취약한 상태에서 2019년으로 진입하고 있다.

2) 민주노총의 상황과 조건

(1) 대중 투쟁력의 재확인

□ 민주노총은 2018년 한 해, 3. 27. 전국노동자대회(1만 5천명), 5. 1. 세계노동절대회(전국 3만 명), 5. 28.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총파업대회(전국 5만 명), 6. 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6만 명), 11. 10. 전태일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5만 명), 11. 21. 적폐청산-노조할권리-사회대개혁 총파업 대회(파업 16만 명, 집회참가 4만 명) 등 대중투쟁 능력을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인시켜줬다. 민주노총은 현재 조직노동을 대표하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잘 조직화된 운동 세력이다.

□ 하지만 민주노총의 대중투쟁은 아직 한국사회 대개혁을 향한 ‘적극적 기획투쟁’이라기보다 정부와 자본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응하는 반대(저지)투쟁 또는 규탄투쟁으로 비쳐져 왔다. 즉, 민주노총은 정부와 자본이 추진하는 정책의 반노동성을 대중적으로 폭로하는 유의미하고 강력한 세력이긴 하나, 아직 한국사회 대개혁 방안을 대중적으로 제시하고 그 이행을 추진하는 책임 있는 정치경제사회 주체의 위상까지는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

(2) 민주노총의 정부정책 개입력 및 전체 노동대표성의 한계

□ 진보정당이 원내에 유의미하게 정립돼 있지 못하고, 민주노총은 정치 전략이 부재한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민주노총은 대표 여야 정당이 어떤 법을 통과시키려 하는지 여하에 따라 대국회 투쟁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주요 입법 과정이 대표 여야 간 협상의 도구·수단으로 전락되기 일쑤여서 민주노총의 국회 입법예의 실질적 개입력 한계는 지속되고 있다.

□ 민주노총 조직률은 여전히 전체 노동자의 5% 수준이다. 특히 민주노총 조합원 수 증가는 촛불항쟁 이후 지속돼 온 높아진 민주적 인식과 높은 고용불안정성 사회에 기인한 자발적 노조가입의 결과일 뿐, 민

주노총이 조직화 사업을 전략적으로 펼친 결과는 아니다.

▣ 갈수록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및 업종별 투자(산업정책)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일자리 안정화(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법정최저임금 △보육·교육·의료·요양 정책 및 노후소득 등 업종·산업·정부재정정책이 노동 전반을 훨씬 더 규정해 가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구성하는 산하노조들은 아직 기업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 교섭-투쟁에 대체로 머물러 있다.

3) 금속노조의 상황과 조건

(1) 금속노조의 주체적 조건

금속노조의 산별교섭은 자본의 완강한 거부로 20여 년째 가로막혀 있지만, 노조는 사용자의 산별교섭 참여를 강제할 힘을 갖지 못한 상태다. 조합 내에서도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 교섭 등 산별교섭에 대한 회의 분위기가 만연한 상태다.

또한 금속노조의 사업 및 투쟁은 기업별 의식과 관행을 좀처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금속노조 내부의 지부형태, 기업규모, 고용형태, 세대에 따른 내부균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조합의 지도집행력과 조직구심력이 약화되고 있다. 아울러 간부·조합원의 고령화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사회변혁의 열정과 헌신성을 가진 신규활동가 재생산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세차례의 총파업 조직과정에서 드러나듯이 지부별 조직력의 편차도 심각한 상태이다. 조직확대는 지부별 노력으로 꾸준히 되고 있지만, 조직확대에 걸맞는 금속노조의 사업 및 지원체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2) 상반기 정치일정과 중반기 임단협, 하반기 11기 선거

2019년은 년초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 ‘탄력근로시간제확대’, ‘최저임금법개악’등의 노동법 개악과 ‘ILO 협약비준에 따른 단결권’ 등 노동법개정 논의가 동시에 중첩될 2~4월 임시국회, 4월 재보궐선거, 6월 10일 ILO 100주년 총회 등의 주요한 정치일정이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고, 금속노조 내부적으로는 7-8월 임단협, 하반기 ‘발전전략방침 논의 임시대의원대회’와 금속노조 11기 동시 임원선거 등 주요한 일정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다. 금속노조가 2019년 사업기조를 강조점을 정확히 잡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상반기 정치일정 대응과 여름의 임단협, 하반기 선거일정으로 19년 한해가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다.

(3) 일방적 산업재편과 구조조정공세

광주형일자리 확대와 대우조선 일방매각 추진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배제 산업정책은 2019년초에도 노조와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저임금구조를 확산할 광주형 일자리와 구조조정을 동반할 대우조선 일방매각 저지를 당면한 주요 투쟁과제로 제기해야 한다. 또한 2019년에는 자동차 산업(부품사)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공세가 강화될 전망이며, 대다수 사업장에서 실제적 위기와는 별개로 위기를 강조하며 비정규직 우선 해고·임금동결·단협개악·복지축소 등 다방면에서 사용자들의 공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제조업 이윤율 하락’, ‘일자리 감소 등 고용위기’, ‘노동자간 임금격차’ 등의 경제위기의 책임을 대기업 노조 탓으로 돌리며, 임금을 하락시키고 고용을 흔들기 위한 전방위적인 정부와 자본의 공세도 예상된다.

(4) 10기 2년차 중심의제 수립 필요

이같이 금속노조를 둘러싼 2019년의 조직 내외 여건은 금속노조가 현안 대응에 급급해 사업을 진행하면, 산별노조의 장기적 전망을 만들기 위한 ‘산별교섭 제도화 등 노동법 전면개정’, ‘20만 금속노조로 조직확대’, ‘금속노조 발전전략방침 수립’ 등의 중심과제가 졸속화 될 가능성이 크다. 금속노조는 구조조정 대응, 노동법 개악저지, 재벌개혁투쟁 등 전체 투쟁전선을 정비해가면서 19년 중심사업의제를 분명히 세우고 투쟁과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

2. 10기 2년차 총괄 사업계획

1. 총괄 사업기조 및 4대 전략 . 6대 사업

가. 10기 2년차 총괄 사업 기조

- 2019년에도 문재인 정부의 노동배제 정책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탄력근로제 개악·노동법개악·광주형일자리·대우조선 일방매각·임금체계 개악 등 노조와 아무런 소통 없는 정부주도의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며 기울어진 협상장인 노사정대화해 들어오도록 강요하고 있다. 또한 자본은 제조업 위기를 빌미로 위기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고통분담론을 유포하며 임금동결, 복지 축소 등을 올해 임단협에서 전방위적으로 밀어부칠 것이다. 금속노조는 이에 맞서 각 지부·지회까지 이어지는 “노동개악·구조조정·임금개악”에

맞서는 투쟁본부 구성 등 총력대응방안을 정기대대 이후 중집에서 논의하고, 민주노총과 논의해 총연맹 차원의 총노동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한다.

- 또한 연초(2월~4월)에 국회에서 논의가 예상되는 탄력근로제확대, 최저임금제도가개악, 노조법개악 등 노동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개악안 상정시 총파업 등 18만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6월 10일 ILO 100주년 총회를 계기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법 전면개정' 사회쟁점화 투쟁을 하반기까지 벌여나간다.

- 금속노조는 '원하청 불공정 횡포 근절'을 재벌개혁투쟁의 중심기조로 잡고, 19년 임단협에서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요구안'과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요구'를 교섭의제로 다루고, 노사공동위 및 노정교섭에서도 '원하청 불공정 횡포 근절'을 논의 의제로 제기한다.

또한 급속히 기울고 있는 정부의 친재벌정책과 재벌의존 산업구조를 바꿔내기 위해 광범위한 연대운동체를 구성해, '계열사간 내부거래 규제', '협력사와의 전속거래 금지', '기술탈취, 납품단가 강제인하(CR)금지' 등 재벌, 대기업 독식의 수익구조를 혁파하는 재벌개혁투쟁을 2019년의 주요한 사회적 과제로 제기한다.

- 광주형일자리 확대와 대우조선 일방매각 추진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배제 산업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저임금구조를 확산할 광주형 일자리와 구조조정을 동반할 대우조선 일방매각 저지를 당면한 주요 투쟁과제로 제기한다. 자동차, 조선, (철강) 업종의 일방적 구조조정, 노동유연화 저지투쟁을 전개하고, 제조업 산업변화(인공지능, 자동화 확대, 미래차로의 전환, 일자리축소 및 물량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노동지향적 산업정책'을 연구하고, 노사공동위 및 노정교섭에서 제조업을 살리고 총고용을 지키기 위한 방안 마련을 주요한 논의 의제로 제기한다.

- 금속노조 내부적으로는 20만 금속노조로 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조직화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진행하고, 향후 산별노조의 10년의 발전방향을 만들기 위한 2년차 전략위 사업에 집중해 하반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산별노조 발전전략 방침을 논의한다. 교육연수원 건설에 맞추어 20만 조합원 시대에 걸맞는 산별교육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한다.

- 또한 한반도 종전협정, 국가보안법 철폐 등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반전평화사업과 통일시대를 열기위한 사업을 대중적으로 벌여나가고, 노동자 자주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나. “노동개악 · 구조조정 · 임금개악”저지 총력 투쟁 체계 구축

- 당면한 노동개악(탄력근로제확대, 최임결정구조개악, 노동법개악)과 일방적 산업구조 개편 및 구조조정(광주형일자리확대, 대우조선 일방매각 추진)과 현장에서의 임금개악(임금동결 및 반납, 복지축소) 공세에 맞서는 금속노조의 총력대응 투쟁체계를 구축한다.
- 정기대대이후 중집에서 “노동개악·구조조정·임금개악 저지 금속노조 투쟁본부” 구성 등 총력투쟁 세부방안을 수립하고, 민주노총과 함께 논의해 총노동전선을 구축하기 방안을 마련한다.

다. 10기 2년차 4대 전략 방향

산업변화 대응전략

구조조정·노동유연화저지, 제조업살리기

- 노동지향적 산업정책 연구
- 구조조정·노동유연화 저지 대응팀 구축
- 구조조정 단계별 현장대응 지침 준비
- 노조산하 자동차 부품사에 대한 전수실태조사
- 자동차 부품사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사업
- 제조업 발전전망 마련을 위한 노정협약·노사정 대화
- 제조업발전특별법 입법화 사업 전개
- 노동시간 단축 사회적 의제화 사업 전개

사회적 투쟁 전략

노동개악저지 총력투쟁 및 재벌개혁 투쟁

- 최저임금법·탄력근로제개악주휴수당폐자노조법개악 등 노동 개악 저지 총파업총력투쟁 전개
- 6월 IL0총회 대응 노동법 개정요구 전면화
- 2020년까지 단계별 노동법개정투쟁 계획수립
- 단가후려치가기술탈취근절 등 원하청불공정횡포근절투쟁
- 재벌의 불법적 비정규직 사용 근절!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투쟁 전개
- 재벌개혁 요구안 마련 및 조합원 교육

조직확대강화 전략

20만산별조직, 금속노조 조직진단, 연수원개원

- 장기적 전략조직화 계획하에 물적·인적 자원 토대구축
- 미조직기금 확대와 전략조직활동가 총원
- 재벌사, 업종별 조직화 계획 마련
- 전기전자/서비스 업종 조직화 방안 마련
- 청년노동자 및 퇴직조합원 조직화 방안 마련
- 산별전략위 2년차 사업으로 금속노조 체계 및 운영, 재정 전체에 대한 조직진단 사업
- 교육연수원 개원과 20만 산별 교육체계 수립

산별교섭 전략

산별교섭 진전을 위한 2019년 투쟁

- 생활임금 쟁취 및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18만 시기집중(7월) 총파업
- 임금격차해소를 위한 구간별(2단계) 임금인상 요구
-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및 사회양극화 해소 특별요구
- 노정협약의 활성화 및 노사공동위 안착화
- 산별협약 정책생산과 산별교섭 전문기관으로 단협위 상설운영 및 강화
- 단협위 논의를 강화해 사업장간 임금단협통일성 확대
- 산별교섭제도화 대정부대국회 사업 전개
- 현대차 임금가이드라인노무관리 분쇄그룹사투쟁 전개

라. 6대 사업 방향

1. 노동지향적 산업정책 마련! 구조조정 저지! 비정규직 철폐! 제조업 살리기
2. 재벌개혁 · 원하청 불공정횡포 근절 · 사회공공성강화 투쟁 전개
3. 노조할권리 쟁취! 노동법 개정투쟁 전면화
4. 조직확대 전면화! 교육연수원설립! 전략방침 수립! 20만 산별노조 준비
5. 산별교섭 진전을 위한 2019년 18만 임단협 투쟁
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자주적 교류 활성화

마. 세부 사업계획

1. 노동지향적 산업정책 마련! 구조조정 저지! 비정규직 철폐! 제조업 살리기 투쟁

(1) 비정규직 포함 총고용 쟁취, 구조조정대응 금속노조 총력투쟁 전개

- 비정규직 우선해고 저지투쟁전개 및 총고용보장을 요구하는 “함께살자” 사회적 캠페인 전개
- 일방적 구조조정 · 노동유연화 저지 조합 대응팀 구축과 조합·지부·지회와 함께하는 구조조정 사업장 상시 대응체계마련
- 자동차 부품사 지역별 순회 간담회 및 노조산하 자동차 부품사에 대한 전수실태조사 진행
- 구조조정 사업장 경영분석을 통한 정책적 대응강화 및 산업발전 로드맵 수립
- 구조조정 단계별 현장대응 지침 준비 및 교육

(2) 상시업무 정규직사용, 불법파견 정규직전환, 비정규직 차별철폐 투쟁

- 18년 중앙교섭 합의내용인 '2019년내 상시업무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전조직적인 투쟁 전개
- 금속노조 내 불법파견 철폐 투쟁 및 불법파견 제소 사업장 공동투쟁을 통한 사회적 파급력 확대, 불법 파견 범죄자 엄중처벌 및 문제해결 촉구
- 민주노총 전체 비정규직 공동투쟁을 통해 간접고용 제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위한 노조법2조(간접 고용까지 사용자 범위확대) 개정투쟁 및 위험의 외주화 저지 투쟁전개

(3) 노동지향적 산업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 사업 및 노정교섭 · 노사정 대화

- 조선.철강.자동차(부품사)의 업종별 노정교섭 추진 및 노사정대화를 통한 산업정책 개입
- 노동지향적인 산업정책과 산업전략 모색연구, 제조업 위축과 자본의 혁신전략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연구
- 산별의제(미래산업·임금체계·노동시간·노동과정) 및 조선산업 발전연구 등 제조산업 전망 연구
- 지속가능한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위한 자동차 부품사 생태계 구축방안 연구사업 전개

(4) 제조업발전특별법 입법화를 위한 사업 전개

- 2017년 9월 국회발의후 산자위와 기획재정위, 환경노동위원회에 동시 상정되어,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제조업발전특별법 통과를 위해 상임위원 압박 투쟁 등 입법화 사업 전개

2. 재벌개혁·원하청 불공정횡포 근절·사회공공성강화 투쟁 전개

(1)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투쟁 및 민주노총 재벌사 노동자 공동투쟁 전개

- 재벌의 불법적 비정규직 사용 근절!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투쟁 전개
- 금속, 화섬, 서비스, 건설 등 재벌사 노동자 재벌개혁 공동투쟁 추진
- 삼성, LG 등 재벌 그룹사 공동투쟁 전개
- 민주노총 재벌개혁 요구안 마련 및 조합원 교육

(2) 원하청 불공정횡포 근절과 재벌개혁투쟁 연대강화

- 단가후려치기·기술탈취근절 등 원하청 불공정 횡포근절투쟁 및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캠페인 전개

- 현대차그룹 및 1, 2차 하청 밴더의 불공정 갑질 감시.대응
- 공정임금을 위한 하청/부품사 발주시 노무비용 분리계약제 도입
- 현대차그룹 노무관리 체제 분쇄 및 노동자 경영참가 방안 모색
- 공정거래법 제개정 개입 및 재벌총수 전횡 및 세습 감시 및 대응
- 재벌총수 사익편취 규제,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과 초과이익 공유제, 노동자대표 사외이사 추천제 요구 등 재벌개혁 투쟁 전개와 재벌 개혁 투쟁단위 연대강화

(3) 사회공공성 강화 및 최저임금 인상 투쟁전개

- 민주노총과 교육·의료·연금 등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집중투쟁의제를 선정하고 사회적 투쟁 전개
- 총고용보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노동시간단축 사회적 의제화
-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투쟁 전개
-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최저임금 원상회복·개악저지 투쟁 전개
- 최저임금 인상 반대에 대한 대응논리 마련 및 여론홍보, 교육선전 사업전개

3. 노조할권리 쟁취! 노동법 개정투쟁 전면화

(1) 2020년까지 단계별 노동법 개정투쟁 계획 수립 및 토론

- 2019년 상반기에 간부 및 조합원 대상으로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정세 및 단계별 계획 교육

(2) 탄력근로제확대 · 최저임금개악 · 주휴수당폐지 · 노조법개악 등 노동개악저지 18만 총파업·총력투쟁 전개

- 2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개악, 단체행동권에 대한 노조법 개악 등의 노동개악 의제가 안건으로 다뤄지고, 4월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예정이라 당면한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개악안 상정시 총파업 전개 등 상반기 18만의 총력 투쟁 전개

(3) 2019년 6월 ILO 100주년 총회 및 비준국면을 활용한 총력투쟁 전개로 노조할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법 개정 필요성 사회여론 확대

- 2019년 상반기 노동법 전면개정 대국민 캠페인 및 국회의원 압박투쟁 전개
- 2019년 5월 1일 노동절 투쟁에 ‘타임오프 노사자율 보장, 교섭창구 단일화와 손배·가압류 폐지’ 등 노

동법 전면개정을 핵심 요구화

- 2019년 6월 10일(월) ILO 100주년 총회에 즈음해 6월초 전체 확대간부가 참여하는 ‘노동법 전면개정 촉구! 산별교섭 제도화! 임단투 승리! 금속노조 전진대회’ 개최

(4) 장기투쟁·현안사업장 및 복수노조 · 외투 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전개

- 투쟁사업장대책위 정례화
- 정세에 부응하는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을 적극 기획하고 추진
- 투쟁·현안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노조-지부-지회와의 긴밀한 소통구조 확립
- 노동법 개정 정세와 연동해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단일화 제도 폐기를 위한 사업 및 투쟁 기획
- 소수노조 복수노조 사업장 조직사업비 지원
- 외투사업장 간담회 등 지원 방안 마련

4. 조직확대 전면화! 교육연수원설립! 전략방침 수립! 20만 산별노조 준비

(1) 장기적 전략조직화 계획 하에 물적·인적 자원 토대구축

- 조직확대 방향에 대한 전조직적 토론 전개
- 미조직기금의 확대와 전략조직활동가 충원
- 지부 차원의 조직확대 사업을 전담할 인력 확충방안 마련
- 미조직위원회, 전략조직화 회의 강화 및 전략조직 사업지역 확대
- 지역차원의 공단/산업 전략 조직화 사업단 구성 지원 및 확충
- 지역금속지회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사업강화

(2) 재벌사, 업종별 조직화 계획 마련

- 미조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전사업 강화
- 재벌사 조직확대 대응 계획 마련
- 자동차/조선/철강 외 전기전자/서비스 업종 조직화 방안 마련
- 청년노동자 및 퇴직조합원 조직화 방안 마련
- 조선 및 자동차 업종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금속노조 가입 추진사업 전개

(3) 교육연수원/청소년수련원 운영 방안 마련과 연수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 토목 시공 후 건축 완공까지 차질없이 교육연수원/청소년수련원 사업 진행
- 연수원 운영규정 마련 및 청소년수련원 등록 준비 완료

- 연수원 교육과정 개발팀 운영을 통한 간부 및 조합원 교육과정(교재 및 교안) 준비
- 2018년 간부 교육시간 확보를 위한 단체협약 요구
- 노조간부 기본과정 교재 재검토 통한 지부별 교육 확산 및 노조간부 심화과정 교재 마련
- 조합원 교육 방식을 듣는 방식에서 함께 활동하는 방식으로 변화 추구
- 회기 변경에 의한 조합원 상하반기 의무교육 체계 구축 도모

(4) 산별노조 중장기 전략과 발전토대 구축을 위한 2년차 전략위 사업 전개

- 조직확대사업 전면화 방안, 산별교섭 진전방안, 조직강화방안의 3개축으로 2년차 전략위 연구사업 집중
- 금속노조 조직 체계 및 운영, 재정 등 금속노조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 사업 전개
- 노조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규정 미비부분과 발전전략위 논의에서 제기된 규정개정건의 등 종합해 하반기 중앙위에서 노조 운영혁신 규정 개정
- 노동운동의 사회세력화를 위한 노조의 지역개입 및 사회연대사업 전략마련
- 산별노조 10년의 전망! 5년의 계획! 금속노조 발전전략안 하반기 임대에서 수립
- 기업지부 해소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5. 산별교섭 진전을 위한 2019년 18만 임단협 투쟁 (임단투 세부방침 첨부)

(1) 생활임금 쟁취 및 원 . 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18만 시기집중 총파업 및 공동투쟁 (* 해당시기 쟁대위에서 세부 투쟁시기 및 방안 수립)

- 휴가전 타결을 목표로 7월 중순 전국동시다발 1차 총파업 대회
- 8월 미타결 사업장 공동파업 (지부 및 현장 조직력을 강화하는 방식의 총파업 대회 개최)
- 임금격차해소를 위한 구간별(2단계) 임금인상 요구와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및 사회양극화해소 특별요구

(2)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노사공동위 안착화 및 확대

- ‘중앙교섭·추가합의 사업장’ 110곳으로 우선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운영하고,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구두약속·단서조항 사업장 모임’을 병행 추진해 노사공동위를 안착화
- 노사공동위 미쟁취 사업장은 19년 사업장 보충교섭을 통해 노사공동위 참여쟁취

- (3) 산별협약 정책생산과 산별교섭 추진 전문기관으로 단체협약위원회 강화
- '단협위원장 대대 선출' 규약개정 추진 및 단협위원 중앙위 인준(전문위원포함)
 - 단협위를 '연중 상시운영' 하며, 월 1회 정기회의시 '단협위원에 대한 전문교육' 배치
 - 산별교섭의 전진을 위해 단협 시기 및 체계 통일 방안 및 3중 교섭체계 정비에 대한 논의 전개
- (4) 산별교섭 제도화 노정TF 추진 및 대정부·대국회 여론화 사업 전개
- 산별교섭 제도화 국회의원 모임 구성 및 국회 토론회
 - 국제심포지엄 후속 사업 진행 및 산별교섭 제도화 사회 여론화 사업 전개
 - 9월 정기국회에 맞추어 산별교섭 제도화 전국확대간부 상경투쟁 전개

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자주적 교류 활성화

- (1) 자주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통일운동의 전개
- 자주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지부·지회의 일상적인 실천활동 전개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조합원 실천사업 전개
- (2) 판문점선언 이행과 조합원 자주교류사업 및 통일기행사업
-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조합원 교육선전 및 실천 사업
 -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와 노동자 자주교류사업 전개(1~2월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 예정)
- (3) 70년 낡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 현장캠페인 및 조합원 교육선전 사업 전개
 - 금속노동자 국가보안법 철폐 선언운동 전개
- (4) 강제징용노동자 등 민족 문제 해결
- 3.1운동 100주년 강제징용 사죄배상 투쟁 전개
 - ILO 100주년 강제동원 사죄보상을 위한 인더스트리올 국제연대 운동 전개

2. 2019년 투쟁흐름 초안

시기	대정부, 대국회, 사회적 투쟁	산별 교섭 · 투쟁
1~2월	2019년 금속노조 신년투쟁 선포식(2월 20일)	
	민주노총과 함께 탄력근로제확대! 최저임금 개악! 노조법 개악 등 노동개악저지 18만 총파업·총력투쟁 전개(~4월까지)	2019년 사업계획 · 투쟁방침에 대한 조직적인 현장토론 및 의견수렴
		2월 25일 금속노조 정기대회 : 사업계획· 투쟁방침 확정
3~4월	재벌개혁 연대체 구성 및 원하청 불공정형포 근절 캠페인 전개	19년 투쟁승리결의 지부별 대의원대회
		2019년 투쟁방침 및 사업계획 공유 조합지도부 전국순회간담회(~4월까지)
	4월 3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진보정당 후보 지원 사업	산별교섭 돌입, 지부별 임단협 출정식
5~6월	5월 1일 129주년 세계 노동절 대회 및 노조할권리보장 노동법 전면개정 · 재벌개혁 대국민 캠페인	ILO 100주년 총회맞이 노동법 전면개정! 19년 임단투승리 전국 확대간부 결의대회(6월 초)
	6월 22일 비정규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	6월 하순, 쟁대위로 전환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
7~8월	노동법 전면개정 대정부, 대국회 사업전개	7월 중순 임금체계개악 저지! 생활임금 쟁취! 원 · 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18만 시기집중 총파업 <해당시기 쟁대위에서 세부 투쟁방침 결정 >

		8월 미타결 사업장 2차 공동 파업 투쟁 전개
9월	재벌개혁 · 노동법 전면개정 전체확대간부 상경투쟁 및 정기국회 대응 총력투쟁	미타결 사업장 지부별 집중투쟁 전개, 금속노조 전략방침 수립 임시대의원 대회
10월	노동법 전면개정 · 재벌개혁 지역별 집중캠페인 지속	
11월	11월 전국노동자대회	금속노조 11기 동시 선거
12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와 재벌개혁을 위한 2020년 총선투쟁 선포 결의대회 및 12월 민중대회	

3. 2019년 산별교섭(임단협) 투쟁방침 금속노조 2019년 산별교섭 방침(안)

1) 기조

2019년 산별 교섭 · 투쟁 기조

첫째, 임금동결 · 복지축소와 임금체계개악을 저지하고, 생활임금 쟁취와
원 · 하청 불공정거래 개선에 집중한다.

둘째, 중앙교섭 · 지부집단교섭 및 노사공동위 불참사에 대한 조직적 대응
을 강화한다.

셋째, 2018년 확보한 노사공동위원회와 강화된 단체협약위원회를 통해
2020년 이후 산별교섭 발전을 위한 내실을 기한다.

2) 요구방침

금속노조 2019년 요구방침

- (1) 중앙교섭 요구안은 모든 교섭단위 요구안에 포함한다.
- (2) 중앙교섭·지부교섭·사업장보충교섭의 교섭단위별 요구안은 조합승인을 얻는다.
 - ▶ 중앙교섭은 조합대의원대회 승인
 - ▶ 지부 요구는 조합 승인, 지회 요구는 지부 심의 후 조합 승인
- (3) 단협 교섭이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단협 공동요구를 포함하며 공동요구 밑으로 하향할 수 없다.
- (4) 기본급 인상 요구액은 조합 요구방침에 따르며, 하향하여 요구할 수 없다.

요구방침 주요 초점

* 요구방침(1)

0. 중앙교섭 요구안을 모든 교섭단위 요구안에 포함하는 것은 중앙교섭은 물론 지부교섭·사업장보충교섭 등 모든 교섭에서 다루는 것임. 다만 해당 요구안이 확보된 사업장에서는 교섭에서 다루지 않을 수 있음.

* 요구방침(3)·(4)

0. 하향하지 않는 요구방침은 산별노조 원칙이 최저기준이며 그 위에서 사업장별 상향노력을 열어놓는 ‘산별노조의 기본원리’를 구현하는 것임.
0. 특히 기본급 요구 밑으로 하향하지 않는 것은, 금속노조의 최저기준에 모든 사업장을 맞출 경우 임금인상이 추가로 필요한 사업장의 상향노력을 막는 것일 뿐 아니라, 기본급 비중을 줄이게 되는 악순환을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임.

임단협 공동요구

통일요구 (임·단협 년도와 무관)	※ 2018년 임단협 교섭에서 통일요구 미합의 사업장 모두 *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참여
중앙교섭 요구	*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 일터 괴롭힘 금지
지부별 공동요구	* 임금인상 요구 : 임금격차 해소방향 정액 인상 * 그 외, 지역 내 주요 현안
사업장 공동요구 (출수 년도 단협교섭 사업장)	1) 필수 요구안 *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참여 * 비정규직 포함 총고용 보장 / 조합간부 유급교육시간 확보
	2) 권고 요구안 * 노동시간 : 임금삭감 없는 주52시간 상한제 업무시간 외 SNS 근무지시 금지 등 * 재벌개혁 : 원·하청 납품단가 정상화, 초과이익 공유제 등 * 노동안전 : 위험성 평가 * 그 외 : 정년퇴직 노사공동 지진대응 매뉴얼 지엠오(GMO) 식품표시제 준수

☞ 요구안 세부내용은 '붙임자료-1. 금속노조 2019년 임·단협 요구안' 참조

3) 교섭방침

금속노조 2019년 교섭방침

- (1) 중앙교섭 · 지부집단교섭 중심의 단일한 교섭체계로 진행한다.
- (2) 교섭 진행순서는 중앙교섭 ⇨ 지부교섭 ⇨ 사업장보충교섭 순으로 진행한다.
- (3) 임금교섭은 중집위원회 결정에 따라 돌입한다.
- (4) 산별교섭 불참 사업장에 대한 조합 · 지부 차원의 교섭 · 투쟁에 집중한다.

- 교섭방침 주요 기조

* 교섭권 위임

0. 기업지부 대각선교섭에 조합이 직접 결합

(규약 제 66조 단체교섭의 권한 ③ 기업 교섭단위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다)

0. 다만, 조합 임원의 대각선교섭 역할을 현실화하기 위한 세부방안 실행

조합임원은 상견례와 체결 시 필참, 교섭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참석 등

* 불참 사업장

0. 지역지부 내 불참 사업장에 대해 지부 내 공동투쟁 단위를 설정

0. 교섭위원 교차배치와 공동실천·공동투쟁을 지부방침에 따라 전개

4) 타결방침

금속노조 2019년 타결방침

(1) 중앙교섭 합의 없이 지부 · 지회 타결 없다.

(2) 모든 단체교섭을 체결할 때는 합의절차를 준수하고 조합승인을 얻는다. (참조 : 임단협 승인요청 양식)

■ 합의절차

▶ 중앙교섭 : 의견접근 ⇨ 중앙위에서 의견접근안 승인 ⇨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 조인식 (위원장 체결)

▶ 지부교섭 : 의견접근 ⇨ 지부교섭단 및 지부운영위 심의 ⇨ 중앙집행위원회 승인 ⇨ (조합원 찬반투표) ⇨ 조인식(위원장 체결)

▶ 사업장보충교섭 : 의견접근 ⇨ 지부운영위 심의 ⇨ 조합에 승인요청서 제출(의견접근안 첨부) ⇨ 위원장 승인 ⇨ 조합원 찬반투표 ⇨ 조합에 직인신청서 제출 ⇨ 조인식(위원장 체결) ⇨ 임단

협 합의서 전문 조합에 제출

(3) 임·단협 승인 기준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 미승인 기준과 처리 방침 : 미승인 이후 조인식 등 타결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차기 중앙위에
서 최종 처리될 때까지 지부 관장 하에 보완 노력

* 기준 : 산별중앙협약 중에서 ① 제1조 협약의 우선적용 ② 제2조 사용자단체 가입 ③ 제13조 조
합비 일괄공제 조항의 타결 유무 / 사업장 단체협약 중 전문(금속노조), 유효기간(3월말까지,
짝수 년 또는 매년)이 미흡한 경우

▶ 지부요구 : 지부 판단에 따름

▶ 불승인 기준과 처리 방침 : 이후 타결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징계에 회부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 국한해서 불승인 처리

* 기준 : 기존 노동조건의 현저한 후퇴, 무분규 문구가 포함된 경우, 임금동결·임금저하를 합의한
경우, 중앙교섭·지부교섭 타결전 타결 / 다만, 구조조정 사업장 및 노조파괴공작·부당노동행
위로 조직력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 구조조정사업장 타결방침(2018.10.2 제34차 중집 결정)에 따
라 중집위에서 별도 판단

* 통일요구(노사공동위) 미합의시 불승인하며, 후속조치는 중집위원회에서 사업장별 검토 후 결정

* 처리 : 지부운영위에서 불승인 처리 후 즉각 조합에 보고, 중집위원회에서 최종 승인 여부 판단
(지부운영위에서 불승인되면 타결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타결절차를 진행할 경우 중집위원회
에서 징계위에 회부, 중집위원회 불승인에 이의 있을 경우 중앙위를 통해 최종 결정)

(4) 조인식은 승인 후 해당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위원장 명의로 체결한다.

(5) 임금·단체협약과 단협에 의해 규정되는 사항(고용·임금체계 변화 등), 노조와 합의한 사항,
단체교섭에서 이월된 사항들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수 없으며 사전에 지부에 보고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한다. (규약 제73조, 지회모범규칙 제37조)

(6) 신규 사업장은, 첫째 단체교섭의 경우 위 승인 기준을 준용하지 않고 해당 지부에서 판단하여
승인절차를 진행한다.(복수노조 사업장도 해당 지부 판단하여 승인절차 진행)

5) 교섭 세부방침

(1) 모든 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으며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규
약66조)

- ▶ 금속노조 :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 ▶ 금속노조 : 지역 관계사용자
- ▶ 금속노조 : 개별 사용자

※ 지역지부에 교섭권 위임 가능(지역지부 임원), 체결은 위원장 명의로 한다.

(2) 요구안 발송은 중앙교섭·지부교섭·사업장보충교섭 요구를 하나의 묶음으로 하여 전 조직적으로 일괄발송하며, 요구안 발송사업장 현황을 조합으로 보고한다.

※ 다만, 사전·사후 발송 사업장은 중집위원회에서 승인 후 진행한다.

(3) 교섭요일은 중앙교섭 화요일, 지부교섭은 목요일, 지회교섭은 금요일을 기본으로 한다.

(4) 모든 조정신청은 조합위원장 명의로 하며(규약 68조), 임단협 교섭돌입 사업장은 조합지침에 따라 일제히 조정신청에 돌입한다. 구조조정 및 현안투쟁으로 불가피하게 먼저 교섭에 돌입해야 하는 경우 중앙집행위원회 승인을 얻는다.

6) 교섭단 및 쟁의대책위원회

(1) 중앙교섭단 : 조합임원, 상집간부 약간 명과 각 지부 지부장 등 25명 내외

(2) 지부교섭단 : 지부집단교섭의 교섭단은 지부대의원대회에서 구성

(3) 쟁의대책위원회 : 조합 쟁의대책위원회는 중집위원회 성원으로 구성

금속노조 2019년 요구안

I. 2019년 중앙교섭 요구안

○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현행	개정안
제19조 【금속산업최저임금】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8,400원과 월 통상임금 1,898,4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최저임금 적용 시 기존 노동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경우도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④ 적용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19조 【금속산업 최저임금】 ① <u>회사는 금속산업최저임금을 통상시급 10,000원으로 한다.</u> ② 회사는 제1항의 최저임금 적용시 기존 노동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경우도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④ 적용기간은 <u>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u> 한다.

○ 원 · 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요구

현행	개정안
제53조 【납품하도급 계약시 불공정 거래 폐지】 ① 회사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근절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 ② 회사는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단가인하,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한 반품 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으며, 납품단가 결정시 원가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다. ③ 사용자협의회와 조합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개선을 위하여 금속노사감시단을 운영하며, 금속노사감시단의 구성과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은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3조 【납품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 폐지】 ① 회사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근절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 ② 회사는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단가인하,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한 반품 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으며, 납품단가 결정시 원가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다. ③ 사용자협의회와 조합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개선을 위하여 금속노사감시단을 운영하며, 금속노사감시단의 구성과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은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u>④ 회사는 하청·도급회사와 투자와 조달 의사 결정시 해당 기업의 ‘노동권 보장 및 차별금지’ 내용을 협력회사 선정시 기준으로 사용하며, 하청·도급회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이행한다.</u>

☞ ④항은 민주노총 모범요구안의 하나임.

☞ 참고로 국가인권위는 2019년 1월 현대제철 관련 진정사건(17-진정-0317000, 사내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복리후생 등 차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정도급비를 보장할 것,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자가 차량 출입 및 비품 제공 등에서 차별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일터 괴롭힘 금지

현행	개정안
제 25 조 【일터 괴롭힘 금지】 ① 회사는 지속적·반복적으로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훼손·침해하는 일터괴롭힘 행위(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저성과를 유도하는 행위 등)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노동자가 제1항의 일터괴롭힘이라 주장하면, 즉시 노사동수의 조사위원회를 사업장 특성에 맞추어 구성하여 진상조사, 일터괴롭힘 여부의 인정, 시정조치 권고 등을 15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위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일터 괴롭힘으로 인정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따라야 하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배치전환 등을 통하여 일터괴롭힘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일터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5 조 【일터 괴롭힘 금지】 ① <u>누구든지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파견,용역, 사내하청,특수고용 등 포함)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터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② <u>일터괴롭힘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저성과를 유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며, 특히 일터괴롭힘이 지속적·반복적이거나 회사가 구조조정·성과압박 및 조합탄압 목적으로 일터괴롭힘 행위를 주도한 경우 가중책임을 진다.</u> ③ 노동자가 <u>내지 조합이</u> 제1항의 일터괴롭힘이라 <u>신고하거나</u> 주장하면, <u>회사는 즉시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피해 노동자의 신원보호 및 가해 노동자 등에 대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으로, 피해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제외한다)를 취하며, 즉시</u> 노사동수의 조사위원회를 사업장 특성에 맞추어 구성하여 진상조사, 일터괴롭힘 여부의 인정, 시정조치 권고 등을 15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일터괴롭힘 행위 발생시 회사는 일터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조합과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위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일터 괴롭힘으로 인정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따라야 하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배치전환 등을 통하여 일터괴롭힘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u>이때 회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⑥ 회사는 <u>피해 노동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전환배치,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④⑦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일터괴롭힘으로 <u>발생사실을 신고한 노동자 및</u> 피해를 입은 노동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위 개정 요구안은 기존 합의조항에다 개정 근기법 내용을 포함, 그 외 정서적 괴롭힘, 비정규직 보고, 노조탄압 금지를 추가한 것임.

II. 2019년 임금인상 요구안

[임금인상]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금속노조 사업장 임금의 상향평준화를 지향하고, 격차해소를 위해 구간별 인상안(2단계)을 기준으로 사업장별 정액인상을 요구한다.

1. 임금인상의 목표와 원칙

가. 임금인상의 목표

- 인간다운 생활임금 보장
- 임금·소득 불평등 해소
-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

나. 임금정책의 원칙

- 생활임금의 확보 : 자본의 생산성 논리를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
- 연대임금의 원칙 : 노동자간 임금불평등 해소와 전체 금속노동자의 계급단결을 위해

2. 2019년 임금인상 요구의 방향

- 금속노조 임금인상 요구는 ▲ 첫째 2019년 예상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소득분배 개선분을 참고하고 ▲ 둘째 정책대의원대회 대의원 설문결과와 2018년 금속노조 임금실태를 바탕으로 하며 ▲ 셋째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실태를 감안하여 제시함.
- 2019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2.7%(추정치) 및 1.6%(추정치)임.

경제성장률 전망치 2.7% / 물가상승률 전망치 1.6%

- 그러나 금속노조는 경제·사회 조건을 고려하여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추정치) 물가상승률 전망치 1.6%(추정치) 외에, 소득분배 개선분은 최소한으로 제시함.

[해설]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

- * 임금수준을 최소한 현상유지하려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한 수준을 확보해야 함
- *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노동소득분배율(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한 수준을 넘어서야 노동소득 분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음
- * 즉, 임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노동소득분배율을 최소 기준으로 수립해야 함

- 2019년 1월 1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기본급 월평균 00원 인상 요구’ 설문에 대한 대의원 답변은, 평균값이 122,587원으로 나왔고 중위값 12만원, 최빈값 15만원임.

3. 격차해소를 위한 임금인상 요구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생애임금과 함께 전노협 이래 민주노총에 이르기까지 민주노조운동의 임금정책이었음.
-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영세 사업장의 임금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져 있는 현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격차해소 임금인상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음.
- 하지만 기업별로 임금격차가 심하게 벌어져 있는 현재 상황에서 당장 격차해소 임금인상을 실현하기 어려우며, ‘산별임금체계’를 만들어가는 것과 함께 몇 년에 걸쳐 상황평준화를 이루어가는 목표 하에 추진해야 함.
- 다시 말해, 한 지부 안에서도 사업장마다 임금격차가 있기 때문에 금속노조 모든 사업장 임금차이를 반영한 요구는 산별임금체계 차원에서 수립해가야 하며, 심하게 벌어져 있는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우선 큰 범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함.
-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제시방안의 경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개년 계획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기준으로 하후상박 인상률로 제시해왔으며, 2013년부터 정규직·비정규직·최저임금 노동자까지 동일금액 임금인상안을 제시했음. 물론 이때도 정규직 요구율과 비정규직 요구율은 다름.

연도	민주노총 요구율(액)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정규직	비정규직	
2002	12.5	-	6.9
2003	11.1	-	9.1
2004	10.5	-	8.1
2005	9.3(±2)	15.6	7.0
2006	9.1	17.4	8.0

2007	9.0	19.5	7.0
2008	8.0	20.2	8.0
2009	-		5.0
2010	9.2	29.8	7.4
2011	-	24.0	8.0
2012	9.3	19.1	7.0
2013	219,170원		5.3
2014	225,000원		6.1
2015	230,000원		5.3
2016	237,000원		3.8
2017	239,000원		4.7
2018	209,000원		4.7

- 금속노조는 제조업의 연계사슬 최상위 2개사(현대차·기아차)를 하나의 군으로 하고 그 외의 대다수 사업장을 다른 군으로 하여 격차해소 인상요구를 제시함. 이때 임금인상액 차이는 노동소득 분배 개선분에서, 2개사는 최소한으로 요구하고 다수 사업장은 대의원 설문결과에 기초함.
- 또한 격차해소 임금인상요구에 대해 ‘하청업체 납품단가 인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격차해소 임금인상을 관철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속제조업 연계사슬의 최상위에 위치하는 완성2사에 대해 “적정납품단가 보전방안”으로 ‘△ 일방적인 납품단가인하 근절 및 최초계약 납품단가 보장 △ 업체별 납품계약 시 보장된 임를 적용여부 노사합동 조사’를 임금인상 요구안에 포함하여 묶음으로 제시함.
- 한편 산별최저임금은, 법정최저임금과 달리 산업별 임금실태에 기초해 1/2~2/3 사이에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시급 1만원을 기준으로 요구함.

금속노조 2019년 임금인상 요구안		
사업장	임금인상 요구액	비고
2사 외의 모든 사업장	123,526원	기본급평균 5.8% (경제성장률2.7% + 물가상승률1.6% + 노동소득분배개선분1.5%)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123,526원	기본급 인상요구 91,580 원
		격차해소 특별요구 31,946 원
	※ 사회양극화 해소 특별요구 (임금인상 묶음요구) (1)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근절 및 최초계약 납품단가 보장 (2) 업체별 납품계약 시 보장된 임를 적용여부 노사 합동 조사 (3) 인상액 차이 31,946원(1.5%)은 원청사에 특별요구 및 쟁취	

☞ 격차해소 특별요구에 대해서는 불임자료-3. '사회양극화 해소 특별요구' 참조

< 참고자료-1 > 2018년 군별 기본급 현황

조사 대상	조합원수	조합원 평균		
150개 사업장	136,429	연령	근속년수	기본급
		45.1	19	2,129,761
148개 사업장	57,175	연령	근속년수	기본급
		43.3	16.7	2,031,249
2개 완성차 (현대차·기아차)	79,254	연령	근속년수	기본급
		46.5	20.7	2,200,828

Ⅲ. 사업장단협 공동요구

- 사업장단협 공동요구는 2018년의 단협요구안을 준용하며, 2019년 단협교섭이 있는 모든 사업장이 요구하는 ‘필수요구안’ 및 사업장 판단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권고요구안’ 으로 나눈다.
- 단협교섭 시기를 짝수년으로 일치시키는 것은 단체협약위원회에서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2019년 현재 홀수년도 단협교섭 사업장 29개)

1. 통일요구

※ 2018년 교섭에서 통일요구 미합의 사업장은 임·단협 년도와 무관하게 모두 제기

-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참여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참여]

회사는 산별임금체계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전국단위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에 참여한다. 세부 운영방안은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한다.

☞ 참고 : 통일요구 문구를 2018년 합의안에 맞추어 수정한 것임.

2. 필수 요구안

-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참여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참여]

회사는 산별임금체계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전국단위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에 참여한다. 세부 운영방안은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한다.

- 비정규직 포함 총고용 보장

[고용보장 등]

회사는 사업장 내 비정규직 포함한 총고용을 보장한다.

- 조합간부 유급 교육시간 확보

[조합간부 유급 교육시간 확보]

회사는 조합간부(조합·지부·지회단위 간부 및 대의원)에게 년1회 2박3일(24시간)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3. 권고 요구안

○ 실노동시간 단축

[실노동시간 단축]

회사는 임금삭감 없는 주52시간 상한제를 실시하며, 이로 인해 부족한 인원을 정규직으로 충원한다.

○ 업무시간 외 근무지시 금지

[업무시간 외 근무지시 금지]

회사는 업무시간 외 근무지시를 SNS(사내통신망·카톡 등 메신저 일반) 등을 통해 별도로 하지 않으며, 필요시 노사 합의한다.

○ 원하청 불공정거래 해소

[원하청 불공정거래 해소]

회사는 납품단가 조작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그 거래를 취소하고 다시 조정한다.

○ 원하청 초과이익공유제 실시 및 원하청 노사공동위 구성

[원하청 초과이익공유제 실시 및 원하청 노사공동위 구성]

회사는 매년 영업이익 목표 대비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하청업체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이 비용을 사용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원하청 노사공동위를 설치해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 정년퇴직

[정년퇴직]

정년퇴직은 조합원이 국민연금에 수급하게 되는 직전 연도의 연말까지로 한다. (조합원의 연령대별 퇴직일시는 1957년~1960년 만61세, 1961년~1964년 만62세, 1965년~1968년 만63세, 1969년 이후 만64세 연말까지로 한다.)

○ 노사공동 지진대응 매뉴얼 구성

[노사공동 지진대응 매뉴얼 구성]

노사는 지진대응 노사공동 매뉴얼에 대해 노사합의하고, 이를 이행한다.

○ 회사 내 식당 개선 요구

[회사 내 식당 개선]

회사는 사내 식당 개선을 위해 지엠오(GMO) 표시제를 준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며, 전체 노동자 건강을 위해 지엠오 식품 사용을 제한한다. 또한 회사는 식당 식재료에 대한 세부 사항을 분기별로 조합에 보고한다.

○ 위험성 평가 요구

[위험성 평가]

1. 회사는 노동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년1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2.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제도의 정착과 올바른 실행을 위해, 위험성평가가 안전보건관리의 기본이며 회사경영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실천의지를 밝힌다.
3. 회사는 위험성 평가를 위한 노사 실시기구를 아래와 같이 구성 운영한다.
 - ① 회사는 잠재적으로 예측 가능한 유해위험의(노동재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노사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결정하는 “위험성 평가 노·사 공동 실행위원회”와 “부서별 실행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② “위험성 평가 노·사 공동 실행위원회”는 회사측 0명, 조합측 0명의 노사동수로 구성하며 회사측 위원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조합측 위원 중 노동자대표,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노동안전보건부장(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단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공동으로 맡는다.
 - ③ 위험성 평가 노·사 공동 실행위원회는 월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노사 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 임시회의를 7일 이내에 개최한다.
 - ④ 위험성 평가 노·사 공동 실행위원회는 “위험성 평가”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1)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수립 및 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 실시의 목적
 - 위험성평가 실시 노·사 책임자의 역할
 - 위험성평가 실시 노·사 담당자의 역할
 - 위험성평가 노·사 실시자의 역할
 -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 위험성평가 실시 연간계획
 -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 위험성평가 교육 등 주지 방법
 - 위험성평가 실시상 유의사항 - 수시 위험성 평가
- 2) “부서별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위험성 평가 사전준비에 관한 사항(교육, 평가대상, 작업별 분류,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 4)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노동자 참여에 관한 사항

- 5) 부서와 공정별로 파악된 유해 위험요인 공유와 심의에 관한 사항
- 6) 부서 공정별로 논의된 “위험성 추정” 에 관한 사항
- 7) 부서 공정별로 논의된 “위험성 결정” 에 관한 사항
- 8) 위험성 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에 관한 사항
- 9) ” 평가 기록” 및 “위험성 재평가” 에 관한 사항
- ⑤ 회사는 “위험성 평가 노·사 공동 실행위원회” 의결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행 현황을 차기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조합에 문서로서 보고한다.
- ⑥ 회사는 “위험성 평가” 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험성 평가 노·사 공동 실행위원회” “부서별 실행위원회” 조합측 위원의 활동을 보장한다.
- ⑥-1. 회사는 조합측 위원의 회의 준비(안건의 수집·의견수렴·준비회의)와 회의 참석 및 회의결과 보고와 관련한 활동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조합측 위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월 ○시간의 활동을 보장한다.
- ⑦ 회사는 조합측 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외부교육을 요청할때 적극지원한다.
- ⑧ 회사는 전체 노동자의 “위험성 평가” 참여를 위해, 최소 8시간 이상의 교육과 토론을 보장한다(위험성 평가 교육, 유해위험 요인 토론, 위험성의 추정과 확정, 감소대책 토론 각 2시간)
- ⑨ 노·사는 필요시 노사합의로 전문가(의사, 교수, 연구소, 금속노조 안전보건담당자 등)의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작업환경개선 및 사후관리에 반영한다.
- ⑩ 회사는 “위험성 평가” 에 참여한 조합원 및 노동자 및 관리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0기 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상 정 안 건

안건 1호. 10기 1년차 사업평가 및 결산보고 승인 건

안건 2호. 10기 2년차 사업계획 확정 및
2019년 투쟁방침 논의 건

안건 3호. 10기 2년차 사업예산 확정 건

안건 4호. 금속노조 10기 2년차 중앙위원 선출 승인 건

안건 5호.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 및 대의원 선출 승인 건

안건 6호. 기타안건

안건 7호. 결의문 채택의 건

안건 1 10기 1년차 사업평가 및 결산보고 승인 건

의결주문

- ① 제출된 ‘10기1년차 사업평가(안)’을 심의하여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제출된 ‘10기1년차 결산감사’ 보고를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부 9기 2년차 사업평가 안]

영역별 주요사업 평가

1. 주요사업 방향과 목표

1) 제2의 민주노조 운동 시작

- 87년 이후 노동조합의 정체기에 과감한 변화를 가해 제2의 노동운동을 시작하는 기조로 노동자 단결투쟁의 체계를 만들었다. 특히 실천투쟁을 강화하며 주요 투쟁 목표 및 과제로 제출한 구조조정 분쇄 투쟁을 지부 중심으로 위력적으로 전개했다.
- 그러나 제2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상이 모호했고 혁신의 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내지 못했고 위원회 각 지회 담당자 선임이 되지 않은 지회가 여러 곳 있었다. 이는 지회지부 소통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집행체계를 만든다는 목표에 부족한 점으로 자리한다.

2)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 조직사업 강화

- 총7개 신규지회 약1,700여명의 조합원을 조직화 하며 울산지부의 장기간 2,500 조합원 시대에서 5,000조합원 시대를 열어가는 빛나는 성과를 만들어 냈으며, 신규지회 설립과정에서 지부 간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고 이로 인해 미조직 조직화 사업에 대한 역량이 축적되며 미조직 조직화 역량이 비약적으로 강화되었다.
- 이는 그동안 정체되어있던 노동조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제2의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실질적 전망을 논할 수 있게 한 계기가 되었다.

3) 노동자 중심 진보대통합 건설

- 2018년 지방선거에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노동자 직접정치를 강조한 만큼 울산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진보정당의 후보로 나섰다. 이는 노동조합과 정치세력화 두 가지 날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하는 분기점을 마련했다.
- 그러나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방도로 제출된 진보대통합 건설 사업은 울산지부가 설정하기엔 과도한 목표 설정임을 현실에서 확인하였다.
- 주로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한 후보단일화 사업과 조합원 교육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 및 진보정당 단결의 필요성과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 정도 수준에서 진행되는 한계를 보였다.

4)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투쟁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투쟁’을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한국사회의 적폐의 근원은 재벌과 친일분단세력에 기인한다는 점을 분명히하여 적폐세력 청산 투쟁, 평창올림픽 응원단 조직, 남북정상회담 환영 실천, 통일선봉대, 한반도 평화협정 투쟁 등의 다양한 교육과 실천투쟁을 이어갔다.
- 4.3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및 역사기행은 안정화 되어 더욱 확대할 것에 대한 요구성이 높아지고 있다.
- 그러나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관련하여 지회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사업방식은 미비했다.

5) 지역 및 사회연대 강화

- 사회공헌기금을 통한 노동자, 한부모가족,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을 돌봐주는 지역 아동센터가 제대로 된 지원이 없는 열악한 상황임을 공유하고 지부집단교섭 합의로 만들어진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 그 외의 사회연대 사업에선 투쟁사안에 결합하는 정도로 또 다른 유의미한 사업은 진행하지 못한 미비점이 있다.

2. 2018년 투쟁 방침 및 목표

1) 금속노조 투쟁 목표 수행

- 금속노조의 방침에 따라 총파업에 적극 복무하였고, 집단교섭을 통해 금속산업노사공동위 참여를 쟁취하였고, 단협 체결된 신규사업장 중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에서도 금속산업노사공동위 참여를 쟁취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2018년 임단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지회와 합의하지 못한 지회의 금속산업노사공동위 쟁취를 위한 2019년 투쟁이 필요하다.

2) 구조조정 분쇄 투쟁 및 2018 임단투 승리

가. 구조조정 분쇄 투쟁

- 고강알루미늄지회 구조조정 분쇄투쟁에 4번의 지부 총파업, 5번의 지부확대간부 투쟁, 10여 차례 지부결의대회를 힘있게 진행했고, 사업장별 릴레이 투쟁 결합하였다. 또한 지부집단교섭에서 고강알루미늄 단협 해지 철회 구조조정 문제를 제기하며 압박하였고 조합원 1인당 1만원 투쟁기금 결의 및 각 지회 자발적인 조합원 투쟁기금 모금과 재정사업 등을 통해 투쟁기금을 확보하는 등 지부 전체 하나로써 강력한 투쟁을 진행해 나갔다.
- 또한 가족대책위 활동을 조직해 내면서 고강알루미늄지회 투쟁을 울산지역 투쟁으로 여론화 시켜내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 신규사업장인 대흥공업과 보성테크 등에서 구조조정 징후가 포착되었으나 지부·지회의 적극적인 초기 대응으로 구조조정 시도를 사전에 분쇄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나. 2018년 임단투

- 금속노조의 방침에 복무하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금속노사공동위 참여를 이끌어 내었으며, 집단교섭 및 대각선 교섭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 포함한 총고용 보장을 쟁취하는 성과를 남겼다.
- 경제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신규노조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높은 임금인상률을 쟁취하며 생활임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 다만 공동투쟁 전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시기 집중을 해내지 못한 한계와 각지회별 각개 투쟁이 주되게 진행된 점은 이후 극복되어야 할 점이다.
- 이후 신규지회가 계속 건설되는 상황에서 지부집단교섭 참여 문제와 공동투쟁을 만들어가는 과제가 요구된다.

3) 2018년 6.1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선거 투쟁

- 사법적폐에게 빼앗긴 노동자 국회의원 재탈환 투쟁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계급투표 조직, 정치실천단 활동과 현장 조합원 교육 선전 등을 전개하였다.
-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편법 적용,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자본의 꼼수를 폭로하고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 및 보수야당의 최저임금 개악 시도를 쟁점화 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조합 설립 문의 계기가 마련하였다.
- 울산지부 소속 조합원 4명이 출마하였고 활발한 선거투쟁을 전개하였으나,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지마 광풍 속에 진보교육감만 승리하였고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와 지방선거 참패를 겪게 되었다.
- 아무리 문지마 광풍이 있었다 하더라도 노동자도시, 진보정치 1번지인 울산지역에서 진보정당의 패배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전략 부재와 진보정당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가져다주는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

4) 공단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 효문공단, 남구외국인투자공단, 울주 상북 두서 공단에 최저임금 편법 꼼수 적용에 대한 폭로와 노조설립 권리찾기 캠페인을 지속적이고 대대적으로 펼침으로써 공단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을 이끈 매우 중요한 성과를 남겼다.
- 촛불혁명 이후 노동자들의 권리의식 높아진 조건에서 최저임금 편법적용과 공단 미조직 조직화 캠페인 등으로 7개의 신규지회 설립하는 성과를 남겼다.

총괄평가

- 1) 2018년 금속노조의 투쟁방침에 적극 복무하며 총고용보장과 금속산업노사공동위 구성하는 성과와 신규지회 임단투를 지부 중심으로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경제위기 국면에서 예견된 구조조정 분쇄 투쟁은 위력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울산지부 투쟁력과 현장 조직력을 강화해 냈다.
- 2) 1년 동안 7개 신규지회, 약1,700여명의 조합원을 조직하며 장기간 2,500으로 정채되어있던 울산지부의 조직력을 5,000 조합원 시대를 열어가는 매우 중요한 성과를 남겼다. 이는 이후 제2의 민주노조 운동에 있어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의 중요성과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는 성과를 만들었다.
- 3) 그러나 제2의 민주노조운동을 제기와 달리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한계와 강력한 지도집행력 구축, 전략적 노동운동의 과제인 정치세력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의 변화된 정세에서 분단적폐를 청산투쟁에는 여전히 관성적인 사업 방식을 보여주는 한계가 있었다.

[조직사업부]

1. 사업목표 및 방향

- 1) 조직담당자회의 내실화
- 2) 지부 조직강화 사업
- 3) 현장조직력 강화 및 확대사업
- 4) 취약지회 조직화 지원 및 투쟁사업 지원
- 5) 지부 문화사업 지원

2. 주요사업 평가

1) 조직쟁의담당자회의 내실화

- 조직쟁의담당자회의 정례화
- 지부 조직부 전투적 기풍 강화와 실천형 노동운동 간부로 육성
 - 총 12회, 월 평균 1회 회의를 정례화하여 안정되게 운영하였음
 - 조직쟁의담당자 교육을 통해 집회 기획 및 사회 및 진행 실전 투입

2) 지부조직강화사업

- 실천형 노동 간부 육성 프로그램 실시
- 지부투쟁지침의 관철기풍 확립
 - 조직쟁의담당자 집체교육과 소통을 통해 실천규범을 세움
 - 지부투쟁지침의 관철기풍을 세움

3) 현장조직력 강화 및 확대사업

- 상시적인 지회간담회 실시
- 조직부 네트워크 강화
- 신규지회 사업
 - 2017. 12월 이후 창립된 신규지회를 중심으로 상시적인 현장 간담회 실시
 - 조직쟁의 소통방을 통한 지회 투쟁 사례 전파 및 공유

- 신규지회 조직화 성과적으로 정착

4) 취약지회 조직화 지원 및 투쟁사업 지원

- 노동조합 불안정 지회의 지원 및 투쟁사업 관장
- 현대중공업일반직지회 및 사내하청지회 등 취약지회 투쟁사업 지원

5) 지부 문화사업 지원

- 분기별 문화담당자 연석회의 실시
- 총 4차례의 조직쟁의문화담당자 연석회의(수련회)를 실시하였다.
- 문화담당자(문화부장, 체육부장, 문체부장)만의 특화된 회의 및 수련회를 실시하지 못했다.

3. 총괄평가

- 10-1년차 조직쟁의문화부 사업은 전반적으로 안정되게 진행되었다.
월 1회 안정화된 회의와 상시적인 지회 순회 간담회를 통해 지부-지회간 소통과 지부 관장력을 높여내는 성과를 내었다. 또한 신규지회 조직사업을 통해 1,700여 명의 울산지부 소속 조합원 확대를 이끌어냈다.
- 현대중공업일반직지회 등 취약지회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 지부 문화사업 지원 영역에서는 분기별 1회 연석회의(수련회)는 실시하였으나 문화패 구성과 노동문화 활성화 계획은 실시되지 못했다. 그렇지만, 고강알루미늄지회의 파업프로그램이었던 ‘불패의 전사들-고강노동자 얼굴전시회’와 ‘불패의전사들’ 노래보급을 통한 불패의 투쟁 이미지화를 통한 승리의 자신감 배양에 일조하였다. 또한 각 지회별 파업프로그램을 보급 지원한 것은 성과적이었다.

[교육선전부]

1. 사업방향 및 목표

- 1) 제2 민주노조 운동을 시작, 조합원 및 간부 교육프로그램 안착화
- 2) 교육선전부 역량강화 사업
- 3) 교육위원회 활동 안정화와 전문성 강화
- 4) 다양한 선전사업 진행

2. 주요사업 평가

1) 제2 민주노조 운동을 시작, 조합원 및 간부 교육프로그램 안착화

- 조합원 의무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하면서 2018년 정세와 총파업투쟁의 의의를 전달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짐. 다만 임·단협 투쟁으로 전체지회가 참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 새로운 시대에 맞게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인 금속노조 간부 기본과정 강사단 학교에 참여하여 강사단을 배출함. 이후 기본과정 강사단 육성에 집중 할 필요가 있음.

2) 교육선전부 역량강화 사업

- 교육선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총 4회 진행하고, 학습한 프로그램으로 직접 유인물 및 영상제작을 함. 이후 더 다양한 방식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야 함.

3) 교육위원회 활동 안정화와 전문성 강화

- 교육위원회 활동을 진행하지 못 함. 향후 교육위원회 구성 및 교육위원회 회의가 정기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함.

4) 다양한 선전사업 진행

- 웹자보 발행 등의 다양한 선전물을 발행했다.

3. 총괄평가

하반기 민주노총 총파업에 앞서 조합원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민주노총 총파업 조직화에 기여하였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참여형 교육을 위한 강사단 학교에 참여하여 이후 교육의 내실을 다짐. 다만 향후 강사단을 늘려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각 지회 교육선전담당자들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각지회의 유인물과 동영상 제작하는 등 커다란 성과가 있다.

2018년 많은 신규지회들이 생기고 2019년에도 신규지회가 생길 것이 예상되는 봐 신규사업장에 대한 간부 및 조합원 교육을 내실 있게 준비해서 집행해야 함.

[총무부]

1. 사업목표

- 회계프로그램 및 회계규정 통일화로 효율적 업무집행
- 지부, 지회 각종사안에 대한 법률대응 및 역량강화사업
- 통상임금 집단대표소송 지원
- 지부 산하사업장 경영분석 및 일상적 경영감시체계 구축

2. 사업평가

1) 회계프로그램 및 회계규정 통일화로 투명한 재정집행

- 노동조합의 투명한 재정집행은 사업예산안을 지회의 규모와 조건에 맞게 각 지회 집행부의 공약을 실현하고 금속노조차원의 사업목표와 지회의 계획된 사업을 실현 하는데 있다.

금속노조가 단위지회에 권장하는 회계프로그램(쾌산자)은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

해당 지회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프로그램을 해당지회에 설치하며, 초기 설치비용은 노조가 부담하고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지회가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9개 사업장 중 6개 지회를 제외하고 13개지회가 노조가 권고하는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통일화를 기하고 있다.

나머지 사업장들은 신규지회들로 10-2기에 회계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재정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담보해나가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회계규정은 각 지회별로 회계규칙을 제정한곳과 제정하지 않고 집행하는 지회가 존재하지만 지회별 회계규칙을 천편일률적으로 통일 할 수는 없지만, 지회의 조건에 맞추어 최소한 지부차원의 통일가이드 방안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여 10-2기에 사업을 반영하여 집행하여야한다 .

- 10-1기에 회계담당자회의를 통해 통일적인 회계프로그램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2기에는 회계프로그램 교육과 지부의 회계규정 개정과 지회 회계규칙을 통일적으로 마련하는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2) 울산지부 통상임금 집단소송 경과 및 각종사안에 대한 법률대응

- 울산지부 통상임금 집단소송은 2019년 9월 6일 재개되어 13차 재판을 예정하고 있다. 2019년 1월 1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신의칙”의 기준을 대법원이 제시하지 않았지만, 신의칙의 경영상어려움을 노동자에게 엄격히 적용하라는 판결의 내용이라 향후 재판의 진행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서연이화, 덕양산업은 2018년 6월 20일 휴일 및 연장근로에 대한 대법원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울산법률원이 이후 재판의 실익이 없다는 권고에 따라 지부운영위원회에서 확인하고 소 취하 권고를 결정하여, 2018년 11월 6일에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소 취하를 결정하였으며, 세종공업은 노사간에 조합원 평균 300만원에 통상수당 관련 소송 취하에 합의하여 2019년 1월 31일 울산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 동진지회 구속자 법률대응을 통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고강알루미늄, 한국프랜지에 대한 노동부울산지청의 “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유일교섭단체, 산재자 유가족 우선 채용문제에 대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단협시정명령 의결 요청건은 지역본부와 공동 대응하여, 2017년 11월 27일에 자율교섭을 통한 결정을 전제로 11월 27일 노동부울산지청이 취하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일교섭단체 및 퇴직자 자녀우선채용 건은 그동안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요구사항에 배치되고, 노조정신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조직내의 논의를 통해 노조정신에 맞는 방침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건번호	2013가합122	사건명	임 금	
원 고	강관중 외 1,707명	피 고	(주)고강알루미늄, 세종공업(주), 한국프랜지공업(주), (주)서연이화, 덕양산업(주)	
재판부	제5민사부			
접수일	2013.01.04	종국결과		
일 자		내 용		결 과
2013.01.04		소장접수		
2013.01.04		원고들 소송위임장 제출		
2013.05.08		피고대리인 김종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3.05.09		1차 변론기일(법정 제113호 11:00)		속행
2013.06.27		변론기일(법정 제113호 10:20) 추정기일(추정사유:기록검토를 위하여)		속행
2014.03.24		피고 준비서면제출, 원고 문서제출명령신청서(임금대장)		속행
2014.03.27		3차 변론기일		속행
2014.07.24		4차 변론기일		속행
2014.10.30		5차 변론기일		속행
2015.03.26		6차 변론기일		속행
2015.07.09		7차 변론기일		속행
2015.09.17		8차 변론기일		속행
2015.11.05		9차 변론기일(2016.01.14. 15시 선고일자 잡음)		속행
2016.01.13		선고연기 재판속행 결정		
2016.03.24		10차재판 재판부 추정기일 (신의칙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이후 진행)		추정
2018.09.06		변론재개		
2018.10.18		11차 변론기일		
2018.11.06		서연이화지회, 덕양산업지회 집단소송 소 취하		
2019.01.10		12차 변론기일		
2019.01.31		세종공업집회 통상임금 집단소송 소 취하.		
2019.03.07		13차 변론기일 예정		
		통상임금 집단소송 승소 사업장		비 고
말레동현 필터시스템	판결요지: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휴일근로 연장수당 판단 안함. 2017년 5월 10일 울산지법 승소, 11월 2일 부산고법 승소. 대법원 계류 중..			

3) 경영분석 및 일상적인 감시체계 구축

- 임.단협 교섭과 경영상황에 따른 조합원의 고용불안 개책을 수립하기 위해 고강알루미늄, 덕양산업, 서연이화, 세종공업 등11개 지회 사업장에 대하여 경영분석을 진행하였다.

경영분석을 통해 조합원의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임.단협 요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근거로 고강알루미늄의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신청”에 대응과 상시적인 경영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3. 총괄평가

- 지부를 포함하여 지회의 회계규정 개정 및 지회규칙의 통일화까지 하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은 한계이나, 노조가 권고하는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13개지회가 사용하고 있으며, 이후 신규지회를 포함하면 회계의 투명성은 9기보다는 높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지회 회계 투명성에 대한 감사기능의 강화는 지회 감사위원의 회의를 통해 금속노조의 회계규정과 매뉴얼에 대한 교육 속에서 통일적인 감사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과제로 남아있다.

- 통상임금 집단소송은 1월 14일 대법원 판결로 “신의칙”에 대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 초래한다는 판결을 내려 향후 집단소송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019년 임금협상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요구는 현실적인 문제로 교섭테이블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는 2019년 1월 2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회사가 1안과, 2안으로 임금체계 개편안을 노조 측에 제시하였으며, 현대자동차는 2019년 임금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현자지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상여금이 퇴직자에게 일할 지급여부를 떠나 부품사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미비위원회]

1. 사업목표 및 방향

- 1) 미조직비정규직위원회 회의 정례화 및 교육진행
- 2) 비정규직단위 지회 강화
- 3) 미조직공단 조직사업 강화

2. 주요사업평가

1) 미조직비정규직위원회 회의 정례화 및 교육진행

- 지회별 미비위원 선출을 요구하였으나 미선출로 미비위원회 회의가 이뤄지지 못함.
- 신규노조 가입상담이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하여 각 지회별 미비위원 선출이 필요함.
- 미비위원 선출과 동시에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

2) 교육선전사업

- 효문공단, 상북, 남구외투단지 선전활동을 진행.
- 비정규직단위 교육활동이 필요함.

3) 비정규직단위 지회 강화

- 비정규직단위 신생지회가 생겨남에 따라 2~3차례 간부교육 및 전 조합원 교육을 시행
- 지속적인 노조활동의 지도와 지원 필요.
- 기존 비정규직단위 지회의 조합원 교육 및 실천 활동이 부족했음.

4) 미조직 공단조직화 사업

- 효문공단과 남구지역에 신규노조가 설립됨.
- 앞으로 좀 더 많은 선전전 및 연고자 찾기 등 미조직공단 사업 강화가 필요.

5) 신규지회설립

- 10-1기에 대흥공업지회, 대륙금속지회, 현대모비스울산지회, 현대모비스물류지회, 현대그린푸드지회,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 보성테크지회가 설립 됨.
- 체계적인 준비와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함. 지회가 빠르게 안정화 되어가고 있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3. 총괄평가

- 각 지회별 현 정세에 맞춰서 미비위원 선출에 적극성을 보여야 하며 미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비정규직단위 지회의 지도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미조직된 노동자들의 선전 및 사업을 지회가 함께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서 신규 노조 조직을 강화해 나가야 함.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용자들의 꿈수가 늘어나는 시점이고 그에 따른 미조직된 노동자들의 요구가 곳곳에서 분출되는 시기에 맞춰서 신규조합원가입이 1,600여명이나 늘어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다양한 방식의 조직화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선전 및 가입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 10-1년차 초기부터 노조설립 상담이 이루어졌고 대흥공업지회, 대륙금속지회, 현대모비스울산지회, 현대모비스물류지회, 현대그린푸드지회,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 보성테크지회가 설립이 되었다. 이들 지회는 설립초기부터 체계적인 설립준비와 교육으로 지회가 설립되고 빠르게 지회가 정착화되고 안정화 되어갔다. 향후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에 토대가 될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정치위원회]

1. 사업방향 및 목표

- 1) 2018년 지방자치선거에서 진보정치 승리
- 2) 금속울산 정치위원회의 안정화
- 3) 지회 일상정치활동 지원

2. 사업 계획

1) 2018년 지방자치선거에서 진보정치 승리

- 금속울산지부 지자체선거에 대한 정책방향 수립
- 진보정치 승리를 위한 선거 지원책 마련
- 진보정당 초청 간담회
 - 금속울산 정치실천단을 구성하여 민주노총 전략지역이었던 북구와 동구에서 실천 활동을 완강하게 벌였다.
 - 지방자치선거에서 노동자 후보발굴(최용규, 전영수)과 금속조합원후보(안승찬, 강진희)를 내세워 민주노총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분투했으나 전국 전역에 휩쓸렸던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패배하였다
 - 지방자치선거와 교육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노총울산본부를 중심으로 후보단일화 사업과 조합원 교육을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 울산지부 정치위원회의 안정화

- 금속노조, 민주노총 정치위원회와의 연계 강화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정치위원회와의 연계 강화
- 지부 정치위원회의 월1회 정례화
- 지부 정치위원의 정치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 배치, 수련회 실시
 - 지회 정치위원이 미션임, 안정적인 정치위원회를 운영하기 어려웠다.

3) 지회 일상정치활동 지원

- 지부-지회 정치위원 및 지회간부 일상적인 간담회 실시
- 제2회 <팟캐스트> 또는 제2회 <정치토크콘서트> 실시 (울산지역공동운영위원회)
- 9기의 성과를 이어 대중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기획된 <정치토크콘서트>는 진행하지 못했다.
- 신규지회 조직과 고강알루미늄 구조조정 저지투쟁으로 지회 일상정치활동을 안정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 상반기 지자체선거 국면 속에서 후보당선이 아닌 ‘비정규직철폐! 최저임금 개악 저지!’ 등 민주노총 노동자의 구호를 지속적으로 선전하며 정치활동을 벌였으나 선거 이후 연속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 하반기 ‘양승태 구속 수사하라!’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정치위원회 활동을 하였으나 형식적인 투쟁에 머물렀다.

3. 총괄평가

- 지자체 선거에서 노동자후보의 대거 탈락으로 진보정치의 1번지 울산을 지켜내는데 실패하였다. 하지만 진보적인 울산교육감을 당선시켰고 선거공간속에서 진행된 정치 실천단 활동을 통해 이후 신규노조 설립의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 또한 수구보수세력의 거둬들인 탄압으로부터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를 지켜내는데도 한계가 있었으나 시민사회 연대체를 구성하여 문재인정부시대의 진보정치 탄압의 대표적 사례로 전국적 이슈화 하는데 기여하였다.
-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선거 국면이 아닌 일상적인 정치활동에 기반 되어야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안전보건위]

1. 사업방향 및 목표

- 1) 금속울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체계를 강화 안정화하고 공동사업과 연대투쟁을 실현한다.
- 2) 지부.지회의 노동안전보건 일상활동과 건강권 대책투쟁을 활성화한다.
- 3) 위험성평가 및 작업환경 개선활동
- 4) 산재은폐 근절투쟁 진행.
- 5) 법제도 개악에 따른 산재노동자 권리확보와 일상적인 투쟁체계 구축을 위해 권역 대책위 활동에 적극 복무한다.
- 6) 하청노동자(사외)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쟁점화를 통한 조직적 실천을 마련한다.
- 7) 노동안전보건 일상활동과 대책활동 활성화.
- 8) 산재보험법 제도개혁 및 안전보건 권리확보 투쟁의 전면화.
- 9) 금속노조 사업 조직 및 집행을 통한 현장활동 강화.

2. 주요사업 평가

- 금속울산 노동안전보건위원회[울산지부, 현대자동차지부, 현대중공업지부, 울산산추련] 활동체계는 지역지부와 기업지부가 공동활동 원칙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였다.
- 노동안전보건 일상활동[현장안전점검, 교육선전 사업 등] 활성화 및 현장투쟁을 조합원과 함께 진행은 노동안전보건위원 역량강화 교육 / 조합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31조[안전보건교육] 시간을 활용하여 진행을 하였다. 4월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에 조합원 선전전 및 집회 등 실천적인 투쟁을 진행하였다.
- 위험성평가 및 작업장 개선활동 각 지회별로 상황에 맞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

고, 이에 따른 작업자 개선활동을 진행하였다.

- 노동안전보건 법제도개악 분쇄 및 권리확보 투쟁은 자본과 정권이 획책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개악을 비롯한 안전보건 법제도 개악과 공공성 파괴에 맞선 조직적 실천과제에 방향을 제시하였다.
- 노동안전보건 일상활동과 대책활동은 산재상담을 통해 산재신청과 사업주 허위 진술에 대한 노동지청 고발투쟁 등 지부 소속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공단 및 노동지청 항의방문을 통해 전원 승인을 이끌어 내었다.
- 금속노조 사업집행 및 조직화 과제는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주요사업 조직 및 집행을 위해 현장 활동을 진행하였다.

3. 총괄 평가

- 금속울산 노동안전보건 활동체계는[울산지부, 현대자동차지부, 현대중공업지부] 공동예산과 공동활동을 원칙으로 진행되고 있고, 정기회의와 수련회 등 공동 투쟁이 상시적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커다란 성과이다.
- 위험성평가는 각지회의 상황에 맞게 진행하고 작업장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하였다.
산재은폐 근절투쟁은 산재은폐 제도 개선 투쟁은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다.
- 신규지회가 많이 만들어 지면서 신규지회에 대한 교육사업을 진행하여 신규지회에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신규지회에 대한 실무 및 법·제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위원회]

1. 사업방향 및 목표

- 1) 여성위 회의 주기적 개최
- 2) 여성간부 발굴육성 사업
- 3) 금속노조 수임사업

2. 주요사업 평가

1) 여성위 회의 주기적 개최

- 각 지회 여성사업 담당자가 대부분 부재
-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2) 여성간부 발굴 육성 사업

- 2018년 전체 간부 육성 사업에 대한 제기에 갖가지 사업이 진행되었다.
- 그러나 여성간부 발굴 육성 사업이라는 점을 특화시켜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3) 금속노조 수임사업

- 성평등 교육 및 3.8 여성대회를 진행하였다.
- 그러나 특정시기 사업에만 그치고 형식적인 진행에 머물렀다.

3. 총괄평가

- 2018년 우리사회 안의 성차별과 폭력에 대한 직시가 미투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이는 기존 질서와 인식에 대한 고찰을 가져다 주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 금속노조가 남성 조합원의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나, 우리 스스로 여성조합원과 함께하는 사업 및 육성사업을 순위에 따라 진행하는 영역으로 둔 것도 사실이다.
- 이에 이후 여성위원회 사업의 목표를 정확하게 두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과제등이 제출되었다.

[통일위원회]

1. 사업 목표 및 방향

- 1) 역사기행 대중적 확대
- 2)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국방자주권 되찾는 투쟁 전개
- 3) 남북노동자 교류사업
- 4) 금속노조 수임사업

2.주요사업 평가

1) 역사기행 대중적 확대

- 4.3등 역사기행 진행
- 일본강제징용 등 역사를 바로 알리고 우리의 역할을 찾아갈 수 있는 역사기행을 진행
- > 4.3전국노동자대회 및 역사기행은 매년 확대되고 있으면 역사기행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다. 일본강제징용 역사기행은 여러 일정 속에 진행 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2019년 3.1운동 100주년 사업으로 울산에도 강제징용노동자상을 건설을 힘차게 준비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몫이다.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책임을 미루지 못하도록 강제징용 사죄배상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또한, 강제징용노동자상 사업과정에서 재일동포의 열악함을 알게 되었고 이후, 재일동포(조선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2) 반전평화 운동, 전쟁훈련 반대투쟁, 평화협정 체결운동 전개

- 한미일 군사동맹의 허구성을 알려내고 한반도 전쟁반대 투쟁과 영구적 평화를 위한 평화협정 체결운동을 전개
- > 지난해 급변하는 통일정세에 적극적으로 복무하였지만 정세의 부합하지는 못하였다. 남북정상 회담을 시작으로 우리민족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주인은 우리민족임을 확인하는 한해였고, 2019년 또한 통일위원회에 조직적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3) 남북노동자 교류산업과 8.15 통일선봉대 조직화 사업

- 남북노동자 통일축구 개최 등 교류사업
- 통일선봉대 조직

-> 8.15 전국노동자대회를 축구대회로 대체한 것은 불가피 했던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투쟁시기에 진행되면서 모든 일정이 변경되어 예전보다 많은 숫자가 참가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하지만, 지난 12월 남북정상회담을 기하여 추가로 통일선봉대를 조직하고 있고, 올해 실천이 중요한 조건에서 통일선봉대 조직에 노력해야한다.

4) 지부통일위원회 회의 정례화 및 역량강화

- 월 1회 회의 정례화
- 지부통일위원회 일상적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 통일위원회 회의 및 통일담당자 교육은 안정되었다고 하기는 미진하다. 하지만, 신규지회에서 통일담당자가 선임되어 회의에 결합하고 있고, 일부 사업장은 통일사업 담당자를 선임하지 못함으로 사업 논의 및 집행에 한계가 있다. 위원회사업은 집행부의지가 없으면 사업집행이 어렵다. 통일위원회 과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강령이고 의무이다. 통일위원을 선임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본부에서 진행된 통일강좌는 급변하는 통일정세에 부족

5) 금속노조 수임사업

-> 노조 수임사업에 적극적으로 복무하였다.

3. 총괄평가

- 우리 노동자들에게 분단은 경제적으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문제이다. 지난 정상회담이 열리고 우리민족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주인은 우리민족임을 확인하는 한해였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대북제재와 미국의 내정간섭 등 판문점 선언을 훼손하는 것들을 뿌리 뽑고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갈 결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물론이고 지회 또한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응하는 담당자 및 역량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결의하고 집행을 하고 있지만 일상적인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울산지부 10기 1년차 5/5분기 감사결과 보고서

1. 감사일자 : 2019년 1월 16일
2. 감사장소 : 울산지부 회의실
3. 수검자 : 지부장 강 수 열 (인)
사무국장 고 은 아 (인)
총무부장 이 정 현 (인)

2019년 1월 16일

지부 감사위원

이 상 순

황 승 연

김 주 환

조합 감사위원

김 홍 규 (인)

노 한 균 (인)

금 재 호 (인)

박 민 구 (인)

전 성 중 (인)

허 준 (인)

■ 10기 1년차 1/5분기 업무부문 감사결과 ■

부서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1		-	
2			

■ 10기 1년차 1/5분기 재정부문 감사결과 ■

순	전표NO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조치요구		
				환입	시정	주의
1		-	-			
2		-	-			

■ 10기 1년차 2/5분기 업무부문 감사결과 ■

부서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1		-	-
2			

■ 10기 1년차 2/5분기 재정부문 감사결과 ■

순	전표NO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조치요구		
				환입	시정	주의
1		-	-			
2		-	-			

■ 10기 1년차 3/5분기 업무부문 감사결과 ■

부서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1		-	-
2			

■ 10기 1년차 3/5분기 재정부문 감사결과 ■

순	전표NO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조치요구		
				환입	시정	주의
1		-	-			
2		-	-			

■ 10기 1년차 4/5분기 업무부문 감사결과 ■

부서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1		-	-
2			

■ 10기 1년차 4/5분기 재정부문 감사결과 ■

순	전표NO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조치요구		
				환입	시정	주의
1		-	-			
2		-	-			

■ 10기 1년차 5/5분기 업무부문 감사결과 ■

부서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1		-	-
2			

■ 10기 1년차 5/5분기 재정부문 감사결과 ■

순	전표NO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조치요구		
				환입	시정	주의
1		-	-			
2		-	-			

울산지부 10기 1년차 5/5분기 결산 보고서

1. 조직원 현황 (납부현황)

기간: 2017년 10월1일 ~ 2018년 12월 31일 (단위 명)

		17년 10월	11월	12월	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 고
1	고강알루미늄지회	104	104	104	104	104	104	104	104	104	104	104	97	97	97	97	18년 10월부터 조합비납부유예
2	덕양산업지회	528	528	528	528	528	528	528	523	523	528	523	523	529	529	529	
3	동진지회	83	83	83	83	83	86	86	86	86	89	89	89	89	89	93	
4	말레등현필터시스템지회	106	106	106	106	106	106	106	106	106	106	106	106	109	109	114	
5	삼성SDI울산지회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20	20	
6	서연씨엔에프지회	118	118	118	118	118	118	118	118	126	129	129	129	129	129	134	
7	세종공업지회	473	473	473	473	474	473	473	473	467	467	467	467	467	467	468	
8	한국ITW울산지회	127	127	127	127	127	127	127	127	127	127	127	127	127	127	127	
9	한국프랜지지회	339	339	339	339	339	339	339	339	339	339	339	324	324	324	324	
10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155	155	155	155	155	155	155	155	155	155	155	155	181	181	181	18년 10월 유창산업 가입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0기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11	서연이화지회	476	476	476	476	476	476	476	476	478	478	478	478	464	464	464	
13	현대중공업일반직지회	21	21	21	21	31	14	14	14	14	14	14					18.08.27 현대중공업지부로 편제
14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82	82	82	82	73	82	76	78	83	80	82					
15	대흥공업지회			64	64	66	66	67	68	68	68	68	68	68	66	66	17.12.21 창립
16	대륙금속지회						77	76	108	110	111	111	109	113	98	98	18.03.11 창립
17	현대모비스울산지회						246	268	272	272	289	289	295	305	306	320	18.03.11 창립
18	현대모비스물류지회									90	101	101	101	109	110	111	18.06월 창립
19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290	280	275	225	18.08.26 창립
20	보성테크지회												41	41	41	41	18.09.27 창립
21	현대모비스비정규직울산지회													715	747	760	18.09.27 창립
22	삼성전자서비스울산지회	52	52	52	52	53	52	53	53	108	108	108	107	106	106	106	
23	개별	22	19	11	32	17	22	33	36	33	17	31	31	19	17	12	
합 계		2,696	2,693	2,749	2,770	2,760	3,081	3,109	3,146	3,299	3,320	3,331	3,547	4,282	4,302	4,290	

2. 일반회계 수입 현황

기간: 2017년 10월1일 ~ 2018년 12월 31일 (단위 명)

과 목			당초예산	경정 전용	최종예산	수입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수입률 (%)
관	항	목				2017년 10월	11월	12월	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교부 금	교부 금	교부 금	136,906, 320	0	136,906,320	9,112,0 13	9,456,5 57	9,177,2 17	9,584,0 23	9,753,7 46	8,822,4 43	11,198, 096	9,712,2 05	10,651, 318	11,420, 910	11,232, 068	11,855, 097	12,105, 512	14,349, 596	13,275, 070	161,705 ,871	-24,799,551	118
부과 금	부과 금	부과 금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수입	잡수 입	잡수 입	0	0	0	0	0	1,709	0	0	1,832	0	0	2,127	0	0	3,453	0	0	6,135	15,256	-15,256	0
	기타 수입	기타 수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136,906, 320	0	136,906,320	9,112,0 13	9,456,5 57	9,178,9 26	9,584,0 23	9,753,7 46	8,824,2 75	11,198, 096	9,712,2 05	10,653, 445	11,420, 910	11,232, 068	11,858, 550	12,105, 512	14,349, 596	13,281, 205	161,721 ,127	-24,814,807	118

3. 특별회계 수입 현황

기간: 2017년 10월1일 ~ 2018년 12월 31일 (단위: 원)

과 목			당초예산	경정 전용	최종예산	수입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수입률 (%)
관	항	목				2017년 10월	11월	12월	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투쟁 기금	이월금	일반 이월금	20,071,160	0	20,071,160	20,071,16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071,160	0	100		
	이월금	투쟁기금 이월금	12,034,701	0	12,034,701	12,034,701	0	0	0	0	0	0	0	0	0	0	0	0	0	12,034,701	0	100		
	본조지 원금	투쟁사업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수입	지부자체 결의금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수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잡수입	이자수입	0	0	0	0	0	5,649	0	0	5,864	0	0	4,847	0	0	3,167	0	0	1,420	20,947	-20,947	0	
	소 계		32,105,861	0	32,105,861	32,105,861	0	5,649	0	0	5,864	0	0	4,847	0	0	3,167	0	0	1,420	32,126,808	-20,947	100	
미 조 직 기 금	이월금	이월금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미조직 기금	본조지원금	1,700,000	0	24,550,000	0	1,700,000	0	8,350,000	0	0	1,300,000	0	0	10,100,000	0	0	0	3,100,000	0	24,550,000	0	100	
	잡수입	이자수입	0	0	0	0	0	193	0	0	718	0	0	858	0	0	1,332	0	0	573	3,674	-3,674	0	
	소 계		1,700,000	0	24,550,000	0	1,700,000	193	8,350,000	0	718	1,300,000	0	858	10,100,000	0	1,332	0	3,100,000	573	24,553,674	0	100	
합 계			33,805,861	0	56,655,861	32,105,861	1,700,000	5,842	8,350,000	0	6,582	1,300,000	0	5,705	10,100,000	0	4,499	0	3,100,000	1,993	56,680,482	-24,621	100	

4. 공동회계 수입 현황

기간: 2017년 10월1일 ~ 2018년 12월 31일 (단위: 원)

과 목			당초 예산	경정, 전용	최종 예산	수입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수입률 (%)
관	항	목				2017년 10월	11월	12월	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지역 공동 사업비	이월금	공동사업 이월금	142,662, 496	0	142,662, 496	142,662 ,49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42,662 ,496	0	0.00
	본 조 지급금	공동 사업비	0	0	75,600.0 00	11,061, 995	10,708, 471	10,784, 489	10,657, 171	10,748, 695	10,568, 178	11,048, 636	13,902, 625	11,195, 291	11,157, 036	11,221, 254	11,216, 673	11,356, 412	11,376, 539	11,457, 952	168,461 ,417	-92,861.4 17	223
	기타 수입	기타수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잡수입	이자수입	0	0	0	0	0	63,404	0	0	76,962	0	0	91,444	0	0	105,812	0	0	110,441	448,063	-448,063	0
합계			142,662, 496	0	218,262, 496	153,724 ,491	10,708, 471	10,847, 893	10,657, 171	10,748, 695	10,645, 140	11,048, 636	13,902, 625	11,286, 735	11,157, 036	11,221, 254	11,322, 485	11,356, 412	11,376, 539	11,568, 393	311,571 ,976	-93,309.4 80	142

5. 일반회계 지출 현황

기간: 2017년 10월1일 ~ 2018년 12월 31일 (단위: 원)

과목			예산액			지출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지출 율 (%)
관	항	목	당초예산	경정 전용	최종 예산	2017년 10월	11월	12월	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운 영 비	유 지 비	관리비	5,250,000	0	5,250,000	236,044	143,867	290,103	0	618,751	384,192	0	292,680	519,168	0	599,570	0	0	498,343	554,055	4,136,773	1,113,227	79	
		차량유지비	9,000,000	+1,000,000	10,000,000	260,000	834,000	359,600	350,000	340,000	1,224,250	1,766,500	460,000	751,750	225,000	410,000	677,600	460,000	383,000	370,000	8,871,700	1,128,300	89	
		신문도서비	750,000	0	750,000	180,000	0	0	180,000	0	0	0	0	0	0	0	0	0	0	0	360,000	390,000	48	
		소모품비	2,500,000	0	2,500,000	100,000	9,000	209,000	20,950	40,000	133,400	112,500	170,150	278,400	272,945	55,200	327,550	129,450	418,850	88,300	2,365,695	134,305	95	
		통신비	3,000,000	0	3,000,000	177,980	131,610	134,830	174,030	175,790	160,350	159,690	157,250	110,840	115,600	103,200	126,830	100,800	93,670	104,000	2,026,470	973,530	68	
		비품비	2,000,000	-1,000,000	1,000,000	0	0	0	0	0	0	0	0	0	0	0	515,210	0	0	0	515,210	484,790	52	
		인쇄비	200,000	0	200,000	30,000	0	0	0	0	0	0	0	0	0	0	0	25,300	0	0	55,300	144,700	28	
		기타유지비	800,000	0	800,000	102,000	0	0	54,280	0	17,400	43,000	30,000	0	0	0	106,660	0	141,800	0	495,140	304,860	62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0기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항의 소계	23,500,000	0	23,500,000	1,086,024	1,118,477	993,533	779,260	1,174,541	1,919,592	2,081,690	1,110,080	1,660,158	613,545	1,167,970	1,753,850	715,550	1,535,663	1,116,355	18,826,288	4,673,712	80
복리 후생 비	복리후생비	23,240,000	+2,100,000	25,340,000	1,247,350	1,348,700	1,428,000	2,155,150	2,280,100	1,584,300	1,717,100	1,575,750	1,444,800	1,501,840	1,584,200	1,312,000	1,956,050	1,164,900	1,348,850	23,649,090	1,690,910	93
	항의 소계	23,240,000	+2,100,000	25,340,000	1,247,350	1,348,700	1,428,000	2,155,150	2,280,100	1,584,300	1,717,100	1,575,750	1,444,800	1,501,840	1,584,200	1,312,000	1,956,050	1,164,900	1,348,850	23,649,090	1,690,910	93
업무 추진 비	직무활동비	15,000,000	0	15,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5,000,000	0	100
	항의 소계	15,000,000	0	15,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5,000,000	0	100
	관의 소계	61,740,000	0	63,840,000	3,333,374	3,467,177	3,421,533	3,934,410	4,454,641	4,503,892	4,798,790	3,685,830	4,104,958	3,115,385	3,752,170	4,065,850	3,671,600	3,700,563	3,465,205	57,475,378	6,364,622	90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0기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과 목			예산액			지출액																	최종 예산 대비 잔액	지출 율 (%)
관	항	목	당초예산	경정 전용	최종예산	2017년 10월	11월	12월	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사 업 비	여비	출장비	10,500,000	0	10,500,000	0	377,200	439,600	1,277,800	831,900	774,000	1,358,400	505,500	283,800	1,333,600	124,000	477,900	617,200	697,000	1,101,000	10,198,900	301,100	97	
		항의 소계	10,500,000	0	10,500,000	0	377,200	439,600	1,277,800	831,900	774,000	1,358,400	505,500	283,800	1,333,600	124,000	477,900	617,200	697,000	1,101,000	10,198,900	301,100	97	
	회의 비	총회	1,500,000	+1,200,000	2,700,000	368,000	763,400	0	0	0	0	0	0	0	0	0	0	0	0	1,548,820	2,680,220	19,780	99	
		대의원 대회	7,000,000	0	7,000,000	0	0	4,406,910	206,000	0	2,347,610	0	0	0	0	0	0	0	0	0	6,960,520	39,480	99	
		운영 위원회	2,000,000	0	2,000,000	380,000	609,060	0	200,000	443,000	0	0	164,000	0	0	0	200,000	0	0	0	1,996,060	3,940	100	
		집행 위원회	1,500,000	-1,200,000	300,000	0	0	0	0	150,000	0	0	0	0	0	0	0	0	0	0	150,000	150,000	50	
		기타 회의비	500,000	0	500,000	0	0	0	0	0	222,900	210,000	0	0	0	0	0	0	0	0	432,900	67,100	87	
		항의 소계	12,500,000	0	12,500,000	748,000	1,372,460	4,406,910	406,000	593,000	2,570,510	210,000	164,000	0	0	0	200,000	0	0	1,548,820	12,219,700	280,300	98	
	수련 회비	교섭위원 수련회	2,000,000	0	2,000,000	0	0	0	0	0	0	0	665,150	0	0	0	0	0	0	0	665,150	1,334,850	33	
		항의 소계	2,000,000	0	2,000,000	0	0	0	0	0	0	0	665,150	0	0	0	0	0	0	0	665,150	1,334,850	33	
	부서	총무사업	2,000,000	0	2,000,000	40,000	40,000	249,000	40,000	149,500	40,000	40,000	85,000	162,600	40,000	40,000	40,000	342,000	40,000	62,000	1,410,100	589,900	71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0기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사업비	비																				0	
	조직사업비	7,000,000	+2,500,000	9,500,000	30,000	490,000	321,500	861,700	659,400	827,400	320,460	471,200	271,620	1,148,500	1,094,110	1,121,350	290,100	1,501,500	87,000	9,495,840	4,160	100
	노안사업비	3,500,000	0	3,500,000	191,000	0	91,000	283,000	0	686,200	147,000	240,000	0	118,000	900,000	0	0	50,000	417,860	3,124,060	375,940	89
	교육사업비	4,000,000	0	4,000,000	0	316,200	0	0	155,950	0	478,550	0	0	609,000	0	240,000	1,150,000	1,031,000	0	3,980,700	19,300	100
	선전사업비	7,000,000	0	7,000,000	154,000	308,000	576,000	0	421,000	274,000	0	154,000	1,428,000	869,000	75,000	219,000	1,577,000	729,000	216,000	7,000,000	0	100
	문체사업비	2,500,000	-2,500,0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향의 소계	26,000,000	0	26,000,000	415,000	1,154,200	1,237,500	1,184,700	1,385,850	1,827,600	986,010	950,200	1,862,220	2,784,500	2,109,110	1,620,350	3,359,100	3,351,500	782,860	25,010,700	989,300	96
연대사업비	대외협력비	3,500,000	0	3,500,000	100,000	0	0	0	0	0	269,000	0	0	130,000	240,000	0	310,000	400,000	1,500,000	2,949,000	551,000	84
	향의 소계	3,500,000	0	3,500,000	100,000	0	0	0	0	0	269,000	0	0	130,000	240,000	0	310,000	400,000	1,500,000	2,949,000	551,000	84
위원 회	통일위원회	3,500,000	0	3,500,000	0	140,000	0	0	240,000	0	120,000	0	0	350,000	626,000	0	0	570,000	310,000	2,356,000	1,144,000	67
	정치위원회	4,500,000	-1,000,000	3,500,000	0	0	0	0	0	300,000	99,000	1,113,000	30,000	0	0	0	0	742,000	0	2,284,000	1,216,000	65
	여성위원회	1,000,000	0	1,000,000	0	0	0	0	0	210,000	0	0	0	0	0	0	0	0	0	210,000	790,000	21
	미비위원회	4,000,000	+1,000,000	5,000,000	0	0	776,800	1,206,000	427,000	943,000	345,000	0	190,000	60,000	0	0	50,000	110,000	0	4,107,800	892,200	82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0기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단협 위원회	1,000,000	0	1,000,000	0	0	150,000	0	300,000	0	60,000	0	0	0	30,000	0	0	225,000	0	765,000	235,000	76
		1,000,000	0	1,000,000	82,400	0	0	105,000	0	0	43,000	0	0	72,000	0	0	22,000	0	0	324,400	675,600	32
	항의 소계	15,000,000	0	15,000,000	82,400	140,000	926,800	1,311,000	967,000	1,453,000	667,000	1,113,000	220,000	482,000	656,000	0	72,000	1,647,000	310,000	10,047,200	4,952,800	67
	집회 행사비	3,500,000	0	3,500,000	0	0	0	0	400,000	0	87,250	1,500,000	826,000	504,800	13,000	0	0	0	0	3,331,050	168,950	95
	항의 소계	3,500,000	0	3,500,000	0	0	0	0	400,000	0	87,250	1,500,000	826,000	504,800	13,000	0	0	0	0	3,331,050	168,950	95
	관의소계	73,000,000	0	73,000,000	1,345,400	3,043,860	7,010,810	4,179,500	4,177,750	6,625,110	3,577,660	4,897,850	3192,020	5,234,900	3,142,110	2,298,250	4,358,300	6,095,500	5,242,680	64,421,700	8,578,300	88
예비비	예비비	2,166,320	-2,100,000	66,32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66,320	0
	항의소계	2,166,320	-2,100,000	66,32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66,320	0
	관의 소계	2,166,320	-2,100,000	66,32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66,320	0
합계		136,906,320	0	136,906,320	4,678,774	6,511,037	10,432,343	8,113,910	8,632,391	11,129,002	8,376,450	8,583,680	7,296,978	8,350,285	6,894,280	6,364,100	8,029,900	9,796,063	8,707,885	121,897,078	15,075,562	89

6. 특별회계 지출 현황

기간: 2017년 10월1일 ~ 2019년 12월 31일 (단위: 원)

과 목			당초예산	경정 예산	최종예산	지출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지출율 (%)
관	항	목				2017년 10월	11월	12월	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투쟁 기금	투쟁 기금	투쟁 사업비	32,105,861	0	32,105,861	2,986,400	-389,430	92,000	6,557,000	-5,408,000	8,225,000	-5,255,000	11,325,090	-8,275,000	4,800,681	4,863,200	1,421,000	4,516,000	4,333,360	2,029,280	31,821,581	284,280	99	
미조직 기금	미조직 사업	미조직 사업비	1,700,000	0	24,550,000	0	1,700,000	0	1,700,000	0	2,641,100	850,000	1,730,800	1,613,190	1,219,250	3,513,000	2,605,500	3,235,360	1,224,450	2,059,210	24,091,860	458,140	98	
지부 결의금	지부 사업비	지부 사업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33,805,861	0	56,655,861	2,986,400	1,310,570	92,000	8,257,000	-5,408,000	10,866,100	-4,405,000	13,055,890	-6,661,810	6,019,931	8,376,200	4,026,500	7,751,360	5,557,810	4,088,490	55,913,441	742,420		

7. 공동회계 지출 현황

기간: 2017년 10월1일 ~ 2018년 12월 31일 (단위: 원)

과 목			당초예산	경정 전용	최종예산	지출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지출률 (%)	
관	항	목				17년 10월	11월	12월	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공동 사업비	공동 사업비	공동 사업비	0	0	218,262,496	0	0	0	0	0	0	0	0	0	0	0	1,670,000	29,597,698	15,522,886	14,364,401	61,154,985	157,107,511	
합계			0	0	218,262,496	0	0	0	0	0	0	0	0	0	0	0	1,670,000	29,597,698	15,522,886	14,364,401	61,154,985	157,107,511	

8. 총수입 및 총지출 현황

2017년 10월1일 ~ 2018년 12월 31일 (단위: 원)

항 목		총 수입액	총 지출액	잔액	지출 율(%)	비 고
일반회계		161,721,127	121,897,078	39,824,049	75.37	
특별회계	투쟁기금	32,126,808	31,821,581	305,227	99.05	
	미조직기금	24,553,674	24,091,860	461,814	98.12	
공동회계		311,571,976	61,154,985	250,416,991	50.17	
합계		529,973,585	238,965,504	291,008,081	45.09	

9. 총수입, 총지출, 시재 현황

기간: 2017년 10월1일 ~ 2018년 12월 31일 (단위: 원)

	구분	총수입	총지출	총잔액	통장번호	통장잔액	통장용도	비고
일반회계	일반회계	161,721,127	121,897,078	39,824,049	1002-454-407377	39,824,049	일반반회계	교부금 수입 및 일반회계 지출
					현금보유	0		
	소계	161,721,127	121,897,078	39,824,049	소계	39,824,049		
특별회계	투쟁기금	32,126,808	31,821,581	305,227	1002-154-377648	305,227	특별회계 투쟁기금	일반회계, 투쟁기금 이월금 및 지출
	미조직기금	24,553,674	24,091,860	461,814	1002-854-387755	461,814	특별회계 미조직	미조직사업 교부금 및 지출
					현금보유	0		
	소계	56,680,482	55,913,441	767,041	소계	767,041		
공동회계	공동사업비	311,571,976	61,154,985	250,416,991	1002-254-414663	250,416,991	공동사업비	지역공동사업비 교부금 및 지출
	소계	311,571,976	61,154,985	250,416,991		250,416,991		
합 계		529,973,585	238,965,504	291,008,081	합계	291,008,081		

울산지부 10기 1년차 5/5분기 사회공헌기금 감사결과 보고서

1. 감사일자 : 2019년 1월 16일

2. 감사장소 : 울산지부 회의실

3. 수검자 : 지 부 장 강 수 열 (인)

사무국장 고 은 아 (인)

총무부장 이 정 현 (인)

2019년 1월 16일

지부 감사위원

이 상 순

황 승 연

김 주 환

조합 감사위원

김 홍 규 (인)

노 한 규 (인)

금 재 호 (인)

박 민 구 (인)

전 성 중 (인)

허 준 (인)

■ 10기 1년차 5/5분기 사회공헌기금 업무부문 감사결과 ■

부서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1	사무국		

■ 10기 1년차 5/5분기 사회공헌기금 재정부문 감사결과 ■

순	전표NO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조치요구		
				환입	시정	주의
1						

1. 사회공헌기금 납부현황

기간: 2017년 10월1일 ~ 2018년 12월 31일 (단위 명)

월별 지회	2017년 10월	11월	12월	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고강알루미늄	194,000	196,000	196,000	194,000	184,000	184,000	188,000	184,000	182,000	0	0	0	0	0	0	1,702,000
덕양산업	1,046,000	1,046,000	1,044,000	0	1,042,000	1,040,000	1,042,000	1,036,000	1,036,000	1,032,000	1,034,000	1,032,000	1,052,000	2,114,000	1,056,000	15,652,000
세종공업	1,886,000	0	922,000	0	1,876,000	0	0	0	0	4,654,000	930,000	928,000	928,000	928,000	930,000	13,982,000
한국프랜지	341,000	678,000	676,000	676,000	666,000	658,000	658,000	658,000	654,000	654,000	650,000	648,000	646,000	648,000	650,000	9,561,000
한국TW	252,000	252,000	252,000	252,000	240,000	240,000	240,000	238,000	238,000	238,000	238,000	238,000	238,000	238,000	238,000	3,632,000
한온시스템울산	310,000	308,000	308,000	308,000	308,000	308,000	310,000	308,000	308,000	310,000	310,000	310,000	310,000	310,000	312,000	4,638,000
서연이화	924,000	920,000	924,000	924,000	910,000	906,000	910,000	906,000	902,000	900,000	918,000	916,000	920,000	918,000	916,000	13,714,000
예금결산이자	0	0	73,340	0	0	78,498	0	0	32,151	0	0	25,848	0	0	31,792	241,629
합계	4,953,000	3,400,000	4,395,340	2,354,000	5,226,000	3,414,498	3,348,000	3,330,000	3,352,151	7,788,000	4,080,000	4,097,848	4,094,000	5,156,000	4,133,792	63,122,629

2. 사회공헌기금 수입 현황

기간: 2017년 10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단위: 원)

과 목			당초 예산	경정 전용	최종 예산	수입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수입률 (%)
관	항	목				2017년 10월	11월	12월	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사회	이월금	사회공헌 이월금	169,780, 188		169,780, 188	169,78 0,188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69,780, 188	0	100
공헌	사회사업비	사회사업비	0		150,000, 000	4,953,0 00	3,400,0 00	4,322,0 00	2,354,0 00	5,226,0 00	3,336,0 00	3,348,0 00	3,330,0 00	3,320,0 00	7,788,0 00	4,080,0 00	4,072,0 00	4,094,0 00	5,156,0 00	4,102,0 00	62,881,0 00	87,123,000	0
사업	기타수입	기타수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비	잡수입	이자수입	0		0	0	0	73,340	0	0	78,498	0	0	32,151	0	0	25,848	0	0	31,792	241,629	-241,629	0
합계			169,780, 188		319,780, 188	174,73 3,188	3,400,0 00	4,395,3 40	2,354,0 00	5,226,0 00	3,414,4 98	3,348,0 00	3,330,0 00	3,352,1 51	7,788,0 00	4,080,0 00	4,097,8 48	4,094,0 00	5,156,0 00	4,133,7 92	232,902, 817	86,881,371	1.28

3. 사회공헌기금 지출 현황

기간: 2017년 10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단위: 원)

과 목			당초예산	경정 전용	최종예산	지출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지출률 (%)
관	항	목				2017년 10월	11월	12월	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사회	사회	사회	169,780,188		319,780,188	0	0	0	0	0	0	150,000,000	0	0	0	0	0	0	0	0	150,000,000	169,780,188	88.34
공헌	공헌	공헌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합계			169,780,188		319,780,188	0	0	0	0	0	0	150,000,000	0	0	0	0	0	0	0	0	150,000,000	169,780,188	0.00

4. 총수입 및 총지출 현황

기간: 2017년 10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단위: 원)

항 목	총 수입액	총 지출액	잔액	지출 율(%)
사회공헌사업비	232,902,817	150,000,000	82,902,817	64.40

4. 총수입, 총지출, 시재 현황

기간: 2016년 10월 1일 ~ 2017년 9월 30일 (단위: 원)

	구분	총수입	총지출	총잔액	통장번호	통장잔액	통장용도	비고
공 동 회 계	사회공헌사업비	232,902,817	150,000,000	82,902,817	1002-654-414673	82,902,817	사회공헌사업비	
	소계	232,902,817	0	82,902,817		82,902,817		

울산지부 10기 1년차 5/5분기 지역공동사업비 감사결과 보고서

1. 감사일자 : 2019년 1월 16일

2. 감사장소 : 울산지부 회의실

3. 수검자 : 지 부 장 강 수 열

사무국장 고 은 아

총무부장 이 정 현

2019년 1월 16일

울산지부 감사위원 :

현자치부 감사위원:

현증지부 감사위원:

이 상 순 (인)

황 승 연 (인)

김 주 환 (인)

이 상 규 (인)

손 덕 현 (인)

김 철 규 (인)

오 영 성 (인)

전 명 환 (인)

우 석 현 (인)

조합 감사위원:

김 홍 규 (인)

노 한 규 (인)

금 재 호 (인)

박 민 구 (인)

전 성 중 (인)

허 준 (인)

■ 10기 1년차 5/5분기 지역공동사업비 업무부문 감사결과 ■

부서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1	사무국	고강알루미늄 투쟁이 장기화되고 있어, 투쟁기금도 고갈된 상태입니다. 고강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공동운영위를 조속히 개최하여 투쟁지원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운영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2019년 예산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0기 1년차 5/5분기 지역공동사업비 재정부문 감사결과 ■

순	전표NO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조치요구		
				환입	시정	주의
1	18-05-15 외	상경 투쟁 결산서 작성 시 지출부분은 주단위로 하되 세부적으로 일계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상경투쟁 시 주단으로 결산하되 세부적으로 일별 지출항목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
2	18-05-21	쟁의철농 물품으로 구입한 침낭은 자산으로 등재해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바랍니다.	자산으로 등재해서 유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공동회계(지역공동사업비) 수입 현황

기간: 2017년 10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단위: 원)

과 목			당초 예산	경정, 전용	최종 예산	수입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수입률 (%)
관	항	목				2017년 10월	11월	12월	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지역 공동 사업 비	이월금	공동사업 이월금	142,662,496	0	142,662,496	142,662,49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42,662,496	0	1000
	본 조 자금금	공동 사업비	0	0	75,600,000	11,061,995	10,708,471	10,784,489	10,657,171	10,748,695	10,568,178	11,048,636	13,902,625	11,195,291	11,157,036	11,221,254	11,216,673	11,855,097	12,105,512	14,349,596	172,580,719	-96,980,719	223
	기타 수입	기타수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잡수입	이자수입	0	0	0	0	0	63,404	0	0	76,962	0	0	91,444	0	0	105,812	0	0	110,441	448,063	-448,068	0
합계			142,662,496	0	218,262,496	153,724,491	10,708,471	10,847,893	10,657,171	10,748,695	10,645,140	11,048,636	13,902,625	11,286,735	11,157,036	11,221,254	11,322,485	11,855,097	12,105,512	14,460,037	315,691,278	-97,428,787	143

2. 공동회계(지역공동사업비) 부서별 지출 현황

기간: 2017년 10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단위: 원)

과목			예산액			지출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지출율 (%)
관	항	목	당초 예산	경정 전용	최종 예산	2017 년 10월	11월	12월	2018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공 동 사 업 비	공동 사업비	투쟁사업비	0	0	50,000,000	0	0	0	0	0	0	0	0	0	0	0	1,670,000	20,177,698	15,522,886	12,609,401	49,979,985	20,,015	100	
		미비사업비	0	0	10,000,000	0	0	0	0	0	0	0	0	0	0	0	0	0	620,000	0	1155,000	1,775,000	8,225,000	18
		정책사업비		0	15,600,000	0	0	0	0	0	0	0	0	0	0	0	0	0	8,800,000	0	600,000	9,400,000	6,200,000	60
		항의소계	0	0	75,600,000	0	0	0	0	0	0	0	0	0	0	0	0	1,670,000	29,597,698	15,522,886	14,364,401	61,154,985	14,445,015	81
	관의소계		0	0	75,600,000	0	0	0	0	0	0	0	0	0	0	0	1,670,000	29,597,698	15,522,886	14,364,401	61,154,985	14,445,015	81	

3. 공동회계(지역공동사업비) 지출 현황

기간: 2017년 10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단위: 원)

과 목			당초예산	경정, 전용	최종예산	지출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지출률 (%)
관	항	목				2017년 10월	11월	12월	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지역 공동 사업비	지역 공동 사업	지역 공동 사업	142,662,496	0	218,262,496	0	0	0	0	0	0	0	0	0	0	0	1,670,000	29,597,698	15,522,886	14,364,401	61,154,985	157,107,511	28.0
합계			142,662,496	0	218,262,496	0	0	0	0	0	0	0	0	0	0	0	1,670,000	29,597,698	15,522,886	14,364,401	61,154,985	157,107,511	28.0

4. 총 수입 및 총 지출 현황

기간: 2017년 10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단위: 원)

항 목	총 수입액	총 지출액	잔액	지출 율(%)
공동회계	311,571,976	61,154,985	250,416,991	19.63

5. 총수입, 총지출, 시재 현황

기간: 2017년 10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단위: 원)

	구분	총수입	총지출	총잔액	통장번호	통장잔액	통장용도	비고
공동회계	공동사업비	311,571,976	61,154,985	250,416,991	1002-254-414663	250,416,991	공동사업비	
	소계	311,571,976	0	250,416,991		250,416,991		

의결주문

- ① 제출된 ‘10기 1년차 사업계획(안)’을
심의하여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제출된 2019년 투쟁방침을 논의해 주십시오

[울산지부 10기 2년차 사업계획 안]

1. 정세

1) 세계경제의 하강과 친재벌 정부정책, 노동에 대한 공세 (노조)

- 세계 경제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세계적인 투자 수요 소비 전반이 위축
- 각국 정부는 보호무역 기조로 돌아섬.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주도 성장전략 한계
- 문재인 정부는 친재벌 규제 완화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는 등 재벌 대기업과 정부 관료의 동맹이 강화되고 산업 전반에 걸쳐 재벌 대기업에의 의존도만 지속 강화되고 있음
- 2019년에도 문재인 정부의 자본편향 경제정책 가속화 전망
- 각종 재벌규제완화 및 저임금확대, 노동유연화 등 조직노동에 대한 정치공세와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수탈 확대 전망
- 청와대 주도의 국정주도동력 약화와 적폐청산의 지체 전망
- 각 정당은 2020년 총선의 이해득실에 집중하는 국면으로 전환하며, 연말로 갈수록 국회에서의 각종 제도개혁 불능 상황 심화 예상
- 동북아 정세는 미국의 패권주의와 한-미-일의 대 중국 견제 기조 속에 불확실성 존재
-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남북경협확대 등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진입의 방향성은 지속 전망

2) 노동유연화 임금체계 개악 노조법개악 구조조정(노조 발취)

- 2019년에는 △임금체계 개악 및 노동조건 저하공세 △단체행동권 제약 등 노조법 개악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시간 유연화 및 최저임금제도 개악 △지방정부 주도형 일자리 창출모델 논란 △경사노위를 둘러싼 노사정 관계 문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공세 등이 중심의제로 제기될 전망

- 정부의 낮은 의지와 국회 지형 상 2019년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동법 개정은 쉽지 않고, 오히려 ILO핵심협약 비준과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에 대한 개악을 맞바꿔치기하는 노동법 개악 국면으로 전환되거나 실질적 변화는 없는 형식적 ILO 협약 비준으로 그칠 가능성이 큼

3) 울산지부를 둘러싼 정세

가. 자동차 산업의 구조개편으로 구조조정 노동자 양보론 등의 공세 강화

- 울산지부 19개 사업장중 18개 사업장이 자동차 부품사 또는 유관 업체로서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울산지부 전사업장에 걸쳐 구조조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현재 고강알루미늄은 구조조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18년에 대흥공업, 보성테크 등의 구조조정 시도를 넘어 자동차산업의 불확실성과 광주형일자리 등으로 전사업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경제위기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여금 월할 지급 및 기본급화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는 사측의 공세가 예상되고 있음
- 2019년 임단협에서는 양보를 요구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임금인상을 억제하려는 시도가 더욱 강해질 것이 예상되며 이에 맞선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나. 202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간 대결, 진보정치 세력의 사활을 건 생존 전략으로 정치 세력간 치열한 격돌

-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의 결집이 강화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울산경남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격돌이 벌어질 것임
-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및 개혁정책의 부진과 울산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지방자치에서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집권여당이 고전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보수 세력의 강력한 도전이 예상됨
- 진보정당들은 각자 도생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며 집권여당과 보수정당들과 경쟁에서 생존을 위한 사활을 건 투쟁과 정치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임

다. 최저임금 개악 및 편법적용 임금삭감 등으로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으로 분출

- 2018년에 이어 계속적인 최저임금 개악 및 편법적용 임금삭감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올해 서진산업사내하청지회를 시작으로 신규조직 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이 예상되고 있어, 2018년 성과를 바탕으로 미조직 조직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라. 5,000 조합원 시대를 넘어 확대되고 있는 울산지부

- 2018년 7개 신규조직 1,700여명의 조합원이 확대되고 향후 지속적으로 조직 확대가 예상되고 있음
- 울산지부의 양적확대와 새로운 세대가 주력으로 주도하는 급변하는 시기에 따른 지도집행력 강화, 안정된 조직체계, 새로운 노동운동의 전망을 열어야 하는 과제가 있음

2. 사업방향과 목표

1) 조직의 혁신 및 전략사업을 통한 제2 민주노조 운동

2)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 조직사업 강화를 통한 조직 확대

3) 신규노조 안정화 및 조직력 강화

4) 5000조합원 시대, 지부 집행체계 강화

5) 노동적폐 청산, 구조조정 분쇄 및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법 전면개정 투쟁

6)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자주통일 투쟁 및 정치세력화 강화

7) 민주노총, 금속노조 투쟁방침 복무

3. 세부사업계획

1) 조직의 혁신 및 전략사업을 통한 제2 민주노조 운동

- 소통 강화를 위한 각 사업 지회 담당자를 반드시 선임 조직한다.
- 지부지회 집행력을 일치시켜 나간다.
- 조직력 강화를 위한 전략사업을 전개한다.

2)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 조직사업 강화를 통한 조직 확대

- 공단 조직화 선전전 및 조직화 사업
- 청년노동자 조직사업 전개
- 지부-지회 미조직 조직화 사업체계 구축

3) 신규노조 안정화 및 조직력 강화

- 신규지회 간부 교육체계 마련
- 신규지회 공동 수련회 및 공동투쟁 강화
- 신규지회 소통과 교류 활성화
- 20-30 청년 노동자 사업

4) 5000시대 지부 집행체계 강화

- 간부 육성사업을 전개
- 역량강화 사업으로 지부 전반적 집행체계를 강화
- 5,000 조합원 시대에 맞는 지부 규정 정비
- 위원회 체계 안정화 및 강화
- 담당 임원 사업장 책임제로 집행력 강화

5) 노동적폐 청산, 구조조정 분쇄 및 노동법 전면 개정 투쟁

- 구조조정 분쇄 및 2019년 임단투 승리
- 노동법 개악 저지 및 노동법 전면 개정 투쟁
- 노동적폐 청산, 재벌개혁 투쟁

- 노동조합 할 권리 쟁취 투쟁
- 집단교섭 참여 사업장 확대로 공동투쟁 토대 구축

6) 자주통일 투쟁 및 정치세력화 강화

- 자주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통일운동의 전개
- 판문점선언 이행과 조합원 자주교류사업 및 통일기행사업
- 70년 낡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 강제징용노동자 등 민족 문제 해결
- 2020 총선 대응력 강화 토대 구축
- 일상 정치활동 강화와 정치세력화 인식 제고
- 더불어민주당 심판, 자유한국당 적폐 정당 해체 투쟁

7)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 투쟁 방침 복무

- 금속노조 및 상급단체 투쟁 방침 적극적 복무
- 노동법 전면 재개정 및 노동법 개악 분쇄
- 최저임금 및 탄력근로제 분쇄 투쟁

[각 부서, 위원회 사업계획 안]

[조직부]

1. 사업목표 및 방향

1) 조직쟁의담당자회의 안정화

- 조직쟁의담당자회의 안정화
- 지부 조직부 전투적 기풍 강화와 실천형 노동운동 간부로 육성

2) 지부조직강화사업

- 실천형 노동간부 육성 프로그램 실시
- 지부투쟁지침의 관철기풍 확립

3) 현장조직력 강화 및 확대사업

- 신생지회 조직강화를 위한 지회간담회 실시
- 조직부 네트워크 강화
- 최저임금법, 탄력근로제 실시로 인한 신규상담및 조직사업 강화

4) 투쟁사업장 지원 및 신생지회 설립 연대 지원

- 투쟁사업장 및 노동조합 불안정 지회의 지원 및 투쟁사업 관장

5) 지부 문화사업 지원

- 분기별 문화담당자 연석회의 실시
- 파업프로그램 개발

2. 주요사업 계획

1) 조직쟁의담당자회의 내실화

- 월1회 조직쟁의담당자회의 사수
- 조직쟁의담당자 역량강화와 단결력 높이기 위한 조직간부수련회 개최
- 투쟁과 교육의 효율적 배치로 지회 조직담당자 전투적 기풍 쇄신
- 조직담당자 선동능력 배양 교육 실시
- 회의 개최는 지회와 투쟁사업장 순회방식으로 개최
- 현대차지부 조직실과의 연계강화로 울산지역 공동투쟁의 조직력 복원

2) 지부조직강화사업

- 수련회, 정례회의를 통한 노동간부교육 프로그램 강화
- 지회 관장력 강화로 지부 투쟁지침의 관철기풍 확립
- 조직부 네트워크 강화로 신속한 투쟁요구시 대응력 강화

3) 현장조직력 강화 및 확대사업

- 신생지회의 특성을 감안 조직강화를 위한 상시적인 간담회 실시
- 상시적인 지회-지부 조직쟁의담당자간 소통 및 업무 지원
- 조직부 네트워크 강화로 신속한 투쟁요구시 대응력 강화
- 신규 노동조합 상담 및 교육과정 정형화

4) 투쟁사업장 지원 및 신생지회 설립 연대 지원

- 투쟁사업장 및 노동조합 불안정 지회의 지원 및 투쟁사업 관장
- 신생 지회의 투쟁 지원 및 연대투쟁 체계 구축

5) 지부 문화사업 지원

- 연 2회 조직쟁의-문화담당자-문화단체 연석회의 및 수련회 실시
- 연 1회이상 독자적인 문화담당자 회의 실시
- 조합원 참여형 집회문화 연구
- 파업프로그램 개발

[교육선전부]

1. 사업목표 및 방향

- 1) 조합원 및 간부 교육프로그램 안착화
- 2) 교육선전부 역량강화
- 3) 다양한 선전사업 진행
- 4) 청년노동자 사업진행

2. 주요사업 계획

1) 조합원 및 간부 교육프로그램 안착화

- 조합원 교육을 통일적 기조로 진행
- 신입간부 교육 및 중견간부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진행
- 신규지회 교육프로그램 진행

2) 교육선전부 안정화와 전문성 강화

- 교육선전 학교 등 부서 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

3) 다양한 선전사업 진행

- 카드뉴스 등 웹자보 발행
- 유인물, 대자보 정기적 발행

4) 청년노동자 사업진행

- 청년노동자 학교 진행으로 새로운 간부 발굴 및 육성

[총무부]

1. 사업목표 및 방향

- 지회 회계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지부감사위원회 사업 지원
- 지회 회계 프로그램(쾌산자) 및 회계규정 통일화로 효율적 업무 집행
- 지부, 지회 각종 사안에 대한 법률역량강화 및 대응체계 지원 사업
- 통상임금 집단 대표소송 지원
- 지부 산하 사업장 경영분석 및 일상적 경영감시 체계 구축

2. 주요사업 계획

1) 지부 회계 역량강화 교육

- 노조 회계프로그램 사용지원 및 교육을 실시한다.
- 총무 회계담당자 분기 회의 개최와 수련회 개최한다.

2) 지회 회계 프로그램(쾌산자) 및 회계규정 통일화로 효율적 업무 집행

- 지회 회계 프로그램 보급 및 사용을 통하여 회계규정 통일화로 효율적 업무 집행

3) 법률역량강화로 각 사안에 대한 법률역량강화 및 지원체계 강화

- 각 부서 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통한 원활한 업무가 집행 되도록 한다.
- 법률학교 개최를 통한 상근간부 단체교섭 관련 노동법 교육
- 지회별 확대간부 근로기준법,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 퇴직연금제 등 간부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노동법 교육

4) 통상임금 대표소송 지원

- 통상임금 대표소송 진행 법률원 지원 사업 수립
- 소송에 소요되는 각종 근거자료 입안

5) 지부 산하 사업장 경영분석 및 일상적 경영감시 체계 구축

- 경영분석 중급 실무교육 / - 지회별 경영분석 및 경영참여 및 감시방안 마련

[정치위원회]

1. 사업 목표 및 방향

- 1) 금속울산 정치위원회의 안정화
- 2) 지회 일상정치활동 강화

2. 주요사업 계획

1) 금속울산 정치위원회의 안정화를 위한 지회별 정치위원 선임

- 금속노조, 민주노총 정치위원회와의 연계 강화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정치위원회와의 연계 강화
- 지부 정치위원회의 월1회 정례화
- 지부 정치위원의 정치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 배치, 수련회 실시

2) 지회 일상정치활동 강화

- 노동영역외 정권과 자본의 수구보수정치 행태 지속적 고발 규탄 활동
- 일상적인 현장 정치활동의 다양한 활동 모델 개발 및 보급
- 지부-지회 정치위원 및 지회간부 일상적인 소통 강화
- 신규지회 현장 일상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간담회 교육 실시

[미비위원회]

1. 사업의 방향 및 목표

- 1) 미조직비정규직위원회 회의 정례화 및 교육
- 2) 미조직 조직사업 강화, 선전사업 및 상담사업
- 4) 미조직 활동가 역량강화와 주체형성

2. 주요사업계획

1) 미조직비정규직위원회 회의 정례화 및 교육

- 각 지회별 상근자 미비위원 선출
- 월 1회 회의 정례화 / 반기별 1회 미조직비정규직위원 교육진행

2) 미조직 조직사업 강화

- 초동주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로 조직화 토대 마련
- 노조설립 준비위원회 구성과 교육을 지원하여 원활한 지회 설립을 지원
- 창립총회 및 설립초기 조직화, 임·단협 지원을 통한 사측의 각종 노조파괴 분열책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직 확대와 신규지회 안착화 도모
- 신입간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와 신규조합원 교육으로 조직 강화
- 일상적 노조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3) 선전사업 및 상담사업

- 각 권역에 맞게 주기적(분기별로 진행) 선전계획 진행
- 최저임금 무력화 대응하고 근로기준법 개악을 알리는 노조가입 캠페인 전개
- 1811-9509 상담전화 홍보/ 유인물, 카드명함, 손부채, 현수막, 방송차 선동 실행

4) 미조직 활동가 역량강화와 주체형성

- 공단노동자학교를 개최하여 청년 미조직활동가 양성(4~5월 중 개최).
- 청년 단위 신규사업장 중심으로 연고자 파악 및 주체 발굴

[노동안전보건위]

1. 사업방향과 목표

- 금속울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체계를 강화 안정화하고 신생지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지부.지회의 노동안전보건 일상활동과 건강권 대책투쟁을 활성화
- 위험성평가 및 작업환경 개선활동 / 산재은폐 근절투쟁 진행.
- 법제도 개악에 따른 산재노동자 권리확보와 일상적인 투쟁체계 구축을 위해 권역 대책위 활동에 적극 복무한다. 하청노동자(사외)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쟁점화를 통한 조직적 실천을 마련한다.
- 노동안전보건 일상활동과 대책활동 활성화.
- 산재보험법 제도개혁 및 안전보건 권리확보 투쟁의 전면화.
- 금속노조 사업 조직 및 집행을 통한 현장활동 강화.

2. 사업계획

1) 조직 및 투쟁사업

- 금속울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정례화 및 내실화
- 사업장별 작업환경 개선사업 진행/ 중대재해 및 산재사고 발생시 대책투쟁 구축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작업장 개선 활동/ 노동안전보건 현안투쟁 및 대책투쟁
-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사업

2) 교육선전사업

- 금속울산 노동안전보건위원 역량 강화 교육 / 조합원 교육(안전교육시간 활용)
- 대시민 선전활동의 강화/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기획 교육 및 선전

3) 수임사업 - 금속노조 , 민주노총 수임사업 집행

4) 건강권 쟁취 대책활동 강화

- 산재보험법 제도개혁과 산재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과 투쟁
- 노동안전보건 제도개악 및 규제완화 저지 및 제도개선 투쟁

[여성위원회]

1. 사업방향 및 목표

- 1) 여성위원회 및 간부 역량 강화 사업
- 2) 성폭력 예방 및 사건대응 활동
- 3) 민주노총, 금속노조 수임사업
- 4) 지역여성단체 연대 및 공동투쟁

2. 주요사업 계획

1) 여성위원회 강화, 여성간부 역량강화

- 지회 여성사업 담당간부 선임 독려
- 지회 여성간부들과의 간담회 진행 및 사업계획
- 여성위원회 위원 및 여성간부 역량강화 교육

2) 성폭력 예방 및 사건대응 활동

- 성평등 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 매뉴얼 제작에 따른 노조 내 교육 실시

3) 민주노총, 금속노조 수임사업

- 3.8 세계여성의날 기념사업
- 차별 철폐 투쟁
- 일·가정·생활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투쟁 전개

4) 여성단체와의 연대, 공동행동 추진

[통일위원회]

1. 사업 목표 및 방향

- 1) 지부통일위원회 회의 안정화
- 2) 자주교류사업 및 통일기행사업 전개
- 3) 3.1절 100주년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투쟁
- 4) 평화체계구축 및 평화통일운동 전면화

2. 주요사업 계획

1) 통일위원회 안정화를 위한 통일담당자 선임

- 통일위원회 회의 안정화 / 지회별 통일위원 구성 및 회의운영 조직

2) 자주교류사업 및 기행사업

- 남북노동자 통일대회 성사투쟁
- 제주 4.3항쟁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조직
- 남북노동자 자주교류사업 지원/ 재일동포(조선학교) 지원사업

3)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사업

- 울산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투쟁 / 강제징용문제 쟁점화 및 사죄배상운동
- 강제징용 후손에 대한 지원 사업

4) 평화체계구축 및 평화통일운동 사업

- 평화협정 체결 및 반전평화운동 전개
- 주한미국 철수 및 국가보안법철폐 투쟁
- 분단적폐 분쇄 및 대북체재 철폐 투쟁
- 자주통일대회 참가 /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사업

5) 민주노총, 금속노조 수임사업

2019년 울산지부

지부집단교섭 요구안 및 투쟁방침(안)

1. 기초

첫째, 조합의 방침에 복무하고 2019년 투쟁 승리와 금속노조 강화에 적극 나선다.

둘째, 구조조정을 분쇄하고 임금동결 복지축소와 임금체계 개악을 저지하고 생활임금 쟁취 투쟁으로 울산지부 조직력을 강화 한다

셋째, 중앙교섭 집단교섭 미참여 사업장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공동투쟁의 토대를 마련한다.

2. 울산지부 집단교섭 형식 및 방침

1) 울산지부 집단교섭 형식

○ 임금

- 임금(기본급)은 금속노조 임금인상 내용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 교섭군

- 단일 교섭군으로 한다.

○ 교섭 일정

- 중앙교섭: 주 1회 진행 / - 울산지부 집단교섭: 주 1회 진행

○ 교섭위원

- 지부집단교섭위원은 지부 교섭대표(지부임원+지회교섭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울산지부 집단교섭 방침

- 교섭 장소는 사업장을 순회한다.
- 사업장 보충교섭은 대각선 교섭 사업장의 교섭 진행 정도를 고려하여 진행하되, 돌입 시점은 지부운영위(쟁대위)가 결정한다.
- 지부 집단교섭, 지회보충교섭은 중앙지침에 철저히 복무하며 지회 현안투쟁 발생 시 지부중심으로 총력 대응한다.
- 지부집단교섭 타결 없이 지회별 타결은 없다.

3. 집단교섭 미참여 사업장 대각선 교섭

- 조합의 일치성을 높이기 위해 미참여 사업장은 울산지부 관장아래 대각선 교섭을 진행한다.
- 지부 집단교섭 불참 사업장은 지부 교섭단(지부임원+지회교섭위원)을 구성하여 지회별 대각선 교섭을 진행한다.

4. 투쟁계획

1) 금속노조 및 울산지부 임단투 기본 개요

구 분	주요 요구
중앙교섭 투쟁	△ 금속산업최저임금 인상 △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 일터 괴롭힘 금지
지부집단교섭 투쟁	△ △ 임금인상 요구

사업장보충교섭 및 대각선교섭	△임금인상 요구 △사업장 단협 요구 및 보충요구 △지부공동요구(집단교섭참가, 지회간부 지부활동시간 보장) △금속산업노사공동위 참가
--------------------	--

2) 울산지부 임단투 교섭과 투쟁방침

- 집단교섭은 실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요구를 중심으로 교섭을 전개하되 실노동시간 단축 합의 없이 임금에 대한 사업장 보충교섭을 진행하지 않는다.
- 지부집단교섭 요구와 지부공동요구를 기본 전선으로 임단투를 진행한다.
- 지부 집단교섭을 중심으로 대각선교섭, 사업장보충교섭 등 다양한 교섭전술 구사하되, 집단교섭 사업장 보충교섭 돌입 시기는 지부쟁의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집단교섭 미참여 사업장(대각선교섭사업장)은 공동의 교섭전술을 배치한다.
- 미타결 사업장은 지부집중 투쟁으로 돌파한다.
- 경영위기 양보론, 임금인상억제 정책, 구조조정 등에 대해 교섭 초기부터 지부 전 조직 차원의 공세적인 투쟁으로 분쇄한다.
- 구조조정 사업장에 대한 전 조직적으로 대응한다.

3) 시기별 투쟁 계획

구 분	시 기	투쟁전술	비 고
준비기	3월~4월	△ 투쟁방침 결의(3.12 정기대의원대회) ▷ 지회별 투쟁방침 공유 (4월~ 순회간담회) ▷ 전 조합 임단투 교육(4월~5월) ▷ 집단교섭 돌입(4월 중순~)	민주노총 3.27 전노대 노동법 개악 저지 및 전 면 재개정투쟁
교섭기	5월~6월	▷ 전 조합원 임단투 교육(4월~5월) ▷ 확대간부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5월) ▷ 사업장 보충교섭 교섭 등 돌입(5월) ▷ 지회별 임단투 순회 출정식(5월~6월) ▷ 조정신청(6월)	5.1절 노동자대회 최저임금 투쟁
총력투쟁	7월~	▷ 지부 전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 ▷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 휴가전 타결	
마무리	8월~	▷ 미타결 사업장 지부 집중투쟁	8.15 자주통일노동자대회
하반기 투쟁	9월~	▷ 미타결 사업장 지부 집중투쟁 ▷ 노동법 전면재개정 투쟁 ▷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투쟁	

5. 울산지부집단교섭 및 사업장 요구안

1) 울산지부 집단교섭 요구안

가. 지부운영위 확정 후 내용 최종 추가

나. 임금인상 요구안

[임금인상]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금속노조 사업장 임금의 상향평준화를 지향하고, 격차해소를 위해 구간별 정률 인상안(2단계)을 기준으로 사업장별 정액인상을 요구한다.

금속노조 2019년 임금인상 요구안		
사업장	임금인상 요구액	비고
2사 외의 모든 사업장	123,526원	기본급평균 5.8%(경제성장률 2.7%+물가상승률 1.6%+노동소득 분배개선분 1.5%)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123,526원	기본급 인상요구 91,580원
		격차해소 특별요구 31,946원
	※ 사회양극화 해소 특별요구 (임금인상 묶음요구) (1)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근절 및 최초계약 납품단가 보장 (2) 업체별 납품계약 시 보장된 임률 적용 여부 노사합동 조사 (3) 인상을 차이 31,946원(1.5%)은 원청사에 특별요구 및 쟁취	

2) 사업장 요구안

가. 임금인상 요구안: 금속노조 임금인상안

나. 사업장 단체협약 요구 및 보충협약요구

다. 울산지부 공동요구안(집단교섭 사업장 제외)

① 중앙교섭 및 집단교섭 참가

회사는 2019년 내에 금속산업사용자협회에 가입하며 2020년부터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회가 진행하는 중앙교섭에 참가하며, 전국금속노동조합울산지부와 금속산업사용자협회 울산지역 사업장간에 진행하는 집단교섭에 참가한다.

② 지회간부의 금속노조지부활동 시간 보장

지회 확대간부(대의원, 집행간부, 임원)의 금속노조울산지부 활동시간을 년60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유사한 노사합의 조항 문구 통일 포함)

의결주문

제출된 ‘10기 2년차 사업예산(안)’을
심의하여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지부 교부금 산정방식

- 1) 2019년 1월부터 2019년 07월까지 지역지부 1인당 조합비 평균액은 20,800원으로 산정합니다. 지역지부의 전체 조합원은 75,000명입니다.
- 2) 1개월 전체 지부 몫은 $75,000명 \times 20,800원 \times 0.17 = 265,200,000원$ 입니다.
(지부교부금은 18%이나, 지역공동사업비 1%를 제외한 비율로 계산합니다)
- 3) 전체 지부 몫에서 최저교부금이 지원됩니다. 4개지부에 월 7,000,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전체 지부 몫에서 7,000,000원이 지급되면 258,200,000원이 남게 됩니다.
- 4) 남은 금액을 전체 납부 조합원 수로 나눠 1인당 평균 지부교부금을 구하면 3,442원이 나옵니다.
- 5) 같은 방식으로 2019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임금인상률 5%를 적용하여 산정하면 1인당 평균 지부교부금은 3,619원입니다.
- 6) 최저교부금을 받는 지부의 월 수입은 최저교부금 + (1인당 평균지부교부금 X 지부(납부) 조합원수)이 됩니다.
- 7) 최저교부금을 받지 않는 지부의 월(한달)수입은 1인당 평균지부교부금 X 지부(납부) 조합원수입니다.
- 8) 지부(납부)조합원수 산정시 최저조합비 납부인원은 제외됩니다.
- 9) 최저교부금 대상 지부와 지급금액입니다. (10기 42차 중집 승인)

[지부교부금 계산 방법정리]

구분	2019년 1월~2019년 07월 (월 수입)	2019년 08월~2019년 12월 (월 수입)
최저교부금 0	최저교부금+(3,442원×지부(납부)조합원수)	최저교부금+(3,619원×지부(납부)조합원수)
최저교부금 x	3,442원 × 지부(납부) 조합비	3,619원 × 지부(납부) 조합비
※ 지부(납부) 조합원수는 최저조합비 납부인원을 제외하고 편성하셔야 합니다.		

◎ 울산지부 2019년 월 교부금

- 1) 2019년 1월 ~ 2019년 7월 (월수입) : $3,442 \times 4,500명 = 15,489,000원$
- 2) 2019년 8월 ~ 2019년 12월 (월수입) : $3,619원 \times 4,500명 = 16,285,500원$

지역공동사업비 편성 및 산정방식

1. 지역지부에 속한 조합원(조합비)의 경우

- 1) 2019년 1월부터 2019년 07월까지 지역지부 1인당 조합비 평균액은 20,800원으로 산정합니다. 지역지부의 전체 조합원은 75,000명입니다.
- 2) 2019년 07월까지 한달에 지역공동사업비는 $75,000\text{명} \times 20,800\text{원} \times 0.01 = 15,600,000\text{원}$ 입니다. 전체 금액을 전체 납부 조합원 수로 나눠 1인당 평균 지역공동사업비를 구하면 208원이 나옵니다.
- 3) 같은 방식으로 2019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임금인상률 5%를 적용하여 산정하면 1인당 평균 지역공동사업비를 구하면 218원이 나옵니다. (납부 조합원 수 중 최저조합비 납부인원은 제외됩니다)
- 4) 지역지부의 지역공동사업비 월 수입은 (1인당 평균 지역공동사업비 $\times$ 지부(조합비 납부)조합원수)이 됩니다.
- 5) 지부(납부) 조합원수 산정 시 최저조합비 납부인원은 제외됩니다.

[지역지부 지역공동사업비 산정방식]

구분	2019년 1월~2019년 07월 (월 수입)	2019년 08월~2019년 12월 (월 수입)
지역공동사업비	208원 $\times$ 지부(조합비 납부) 조합원수	218원 $\times$ 지부(조합비 납부) 조합원수
※ 지부(납부) 조합원수는 최저조합비 납부인원을 제외하고 편성하셔야 합니다.		

10기 2년차 예산(안)

【수입지부】

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금액 : 189,850,500원

과 목			세 부 내 역	금 액
관	항	목		
이월금	이월금	이월금		
교부금	교부금	교부금	○ 월 교부금 15,489,000원 × 7개월 = 108,423,000원 ○ 월 교부금 16,285,500원 × 5개월 = 81,427,500원	189,850,500원
부과금	부과금	부과금		0원
기타수입	기타수입	기타수입		0원
	잡수입	잡수입		0원
총계 189,850,500원				

【특별회계 수입 현황】

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금액 : 40,129,276원

과 목			예산액
관	항	목	
투쟁기금	이월금	일반 이월금	39,824,049원
	이월금	투쟁기금이월금	305,227원
	본조지원금	투쟁사업비	
	잡수입	이자수입, 해지환급금	
	소 계		
미조직기금	이월금	이월금	
	미조직기금	본조지원금	
	잡수입	이자수입	
	소 계		
합계			40,129,276원

【지출부】

과 목			목 번	10기 2년차 세부내역	10기 2년차 (12개월)	총액대비 예산율(%)	10기 1년차 (15개월)	집행율 (%)
관	항	목						
운 영 비	유 지 비	관리비	1	사무실관리비 등 월400.000원*12개월	4,800,000	2.53	4,136,773	79
		차량유지비	2	주유,보험,수리 등 월1,000,000원*12개월	12,000,000	6.32	8,871,700	89
		신문도서비	3	신문, 자료구입등 70,000월*12개월	840,000	0.44	360,000	48
		소모품비	4	소모품, 사무용품, 토너 등	3,500,000	1.84	2,365,695	95
		통신비	5	통신비, 전화비, 우편비용 등	3,500,000	1.84	2,026,470	68
		비품비	6	비품구입비(컴퓨터, 모니터, 의자등)	2,500,000	1.32	515,210	52
		인쇄비	7	각종 자료 인쇄	300,000	0.16	55,300	28
		기타유지비	8	커피, 외부인사 방문 등	1,000,000	0.53	495,140	62
	복리 후생비	복리후생비	9	사무국 식비 월 154.000× 8인 ×12개월 철농, 당직, 식비 등 300,000원 ×12개월 사무국 건강검진 200.000원×6인 사무국 근무복 70.000원×8인 사무국 직무활동비 월 50,000원×3명×12개월	21,944,000	11.56	23,649,090	93
	업무 추진비	직무활동비	10	직무활동비 1,100.000원*12개월	13,200,000	6.96	15,000,000	100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0기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관의소계					63,584,000	33.49	57,475,378	90
사 업 비	여비	출장비	11	출장비	13,000,000	6.85	10,198,900	97
	회의비	총회	12	공고, 투표용지, 포스터, 선거관리비 등	4,500,000	2.37	2,680,220	99
		대의원대회	13	정기대의원대회 및 임시대대	10,000,000	5.27	6,960,520	99
		운영위원회	14	회의비	3,000,000	1.58	1,996,060	100
		집행위원회	15	회의비	1,500,000	0.79	150,000	50
		기타회의비	16		500,000	0.26	432,900	87
	수련 회비	교섭위원 수련회	17	교섭위원 수련회	4,000,000	2.10	665,150	33
	부서 사업비	총무사업비	18	부서사업비	4,000,000	2.10	1,410,100	71
		조직사업비	19	조직사업비, 부서사업비, 투쟁사업비	15,000,000	7.90	9,495,840	100
		노안사업비	20	부서사업비	4,500,000	2.37	3,124,060	89
		교육사업비	21	부서사업비	7,000,000	3.69	3,980,700	100
		선전사업비	22	부서사업비 소식지, 대자보 현수막 등	10,000,000	5.27	7,000,000	100
		문화체육 사업비	24	간부 단합대회 및 조합원 문화사업비	3,000,000	1.58	0	0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0기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연대 사업비	대외협력비	25	타조직 연대 등	3,500,000	1.84	2,949,000	84
	위원회	통일위원회	26	통일위 사업비	4,500,000	2.37	2,356,000	67
		정치위원회	27	정치위 사업비	3,000,000	1.58	2,284,000	65
		여성위원회	28	여성위 사업비	1,000,000	0.53	210,000	21
		미/비위원회	29	미/비위 사업비	6,000,000	3.16	4,107,800	82
		단협위원회	30	단협위 사업비	1,500,000	0.79	765,000	89
		감사위원회	32	감사위 사업비	1,500,000	0.79	324,400	32
	집회 행사비	집회행사비	33	집회, 투쟁 행사비	5,000,000	2.63	3,331,050	95
	관의소계				106,000,000	55.83	64,421,700	88
예 비 비	예비비	공동사업비	34					
		예비비	35	예비비	20,266,500	10.67	66,320	0
합계					189,850,500	100	121,897,078	89

의결주문

제출된 금속노조 중앙위원을 승인해 주십시오

10기 2년차 중앙위원 배정 기준(안)

1. 10기 2년차 중앙위원 배정기준

조합비 납부 현황 (18.11.16 12시까지 입금분)							
지부/지회	9월	10월	배정인원	중앙위원 수	여성할당	비정규할당	일반
경기	6,002	5,194	6,002	3	0	0	3
경남	13,483	12,502	13,483	6	1	0	5
경주	3,671	3,659	3,671	1	0	0	1
광주전남	9,068	9,176	9,176	4	0	0	4
구미	1,048	1,048	1,048	1	0	0	1
대구	2,503	2,592	2,592	1	0	0	1
대전충북	3,103	3,112	3,112	1	0	0	1
부산양산	1,970	1,838	1,970	1	0	0	1
서울	2,906	2,685	2,906	1	0	0	1
울산	3,544	4,188	4,188	2	0	0	2
인천	3,000	2,898	3,000	1	0	0	1
전북	1,964	1,847	1,964	1	0	0	1
충남	12,686	12,720	12,720	6	1	0	5
포항	2,358	2,407	2,407	1	0	0	1
만도	75	75	75	1	0	0	1
기아자동차	28,789	28,994	28,994	14	1	1	12
한국지엠	10,277	10,200	10,277	5	1	0	4
현대자동차	50,464	50,479	50,479	25	3	1	21
쌍용자동차	161	149	161	1	0	0	1
현대중공업	11,247	11,256	11,256	5	1	0	4
합계	168,319	167,019	169,481	81	8	2	71

2. 10기 2년차 금속노조 중앙위원

- 울산지부 수석부지부장 윤장혁
- 울산지부 부지부장 최무영

안건 5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 및 대의원 선출 승인건

의결주문

제출된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 및 대의원을
승인해 주십시오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대의원 선출

(※ 39차 중집 결정사항)

1. 상황

-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대의원 선출기준 안건은 매년 10월 또는 11월 열리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다뤄왔음. 올해의 경우 회기 변경으로 인해 12월 10일로 예정됐던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다룰 예정이었으나 이 일정이 1월 14일로 연기된 상황.
- 한편 2019년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는 1월 28일(월) 개최하기로 지난 22차 민주노총 중집에서 의견을 모음.
- 이에 따라 1월 14일 금속노조 임시대대에서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대의원 선출기준을 확정한 뒤 지부별로 총연맹 파견 대의원을 선출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됨.(민주노총은 규정상 대회일 10일 전까지 대의원 명단을 확정하도록 돼 있어 조합 임시대대 직후 4일 만에 지부별로 총연맹 대의원을 선출해 총연맹에 보고해야 함)
- 이에 아래와 같이 대책을 강구하고 함.

2. 대책

- ① 각 지부는 37차 중집에서 검토한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중앙위원 선출 기준안대로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중앙위원을 내년 1월 14일 조합 임시대대 전까지 선출한 뒤 조합 임시대대에서 이를 사후 승인한다.
- ② 지부 운영위 등을 통해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대의원을 선출하고 추후 지부별 대의원대회에서 사후 승인할 수 있다.
- ③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10일 전까지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을 갱신하지 못한 지부(선거구)는 기존 대의원의 임기가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민주노총 규약 제 20조에는 민주노총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고 돼 있음)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 대의원 지부별 선출

(※ 37차 중집 결정사항, 2019년 1월14일 46차 임시대의원대회 사후승인 예정)

1.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 선출 기준

단위	인원	비고
조합 임원	9	
지부별 배정	40	조합원수 비례 배정
여성 할당	6	
비정규 할당	3	해당위원회위임
합 계	58	

- 민주노총 중앙위원은 조합원 3,000명당 1명이며 민주노총 의무금납부 조합원(2018년 1~9월 평균) 175,025명(미전환사업장 포함)을 기준으로 할 때 금속노조에 58명이 배정됨.
- 이중 민주노총 의무금 납부 기준으로 미전환사업장 조합원 수는 277명(풍기산업 70 / 수산중공업 100 / 삼미금속 107)이므로 중앙위원은 배정하지 않음.
- 58명은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배정함.
 - 여성할당 6명(전체 10%이상)은 지부별 여성 조합원수가 큰 순서대로 지부(직할지회)별 1명씩 배정한다.
 - 비정규할당 3명(전체 5%이상)은 비정규특위에 위임한다.
 - 여성, 비정규할당 중앙위원을 제외한 49명은 조합 임원 9명을 우선 배정한다.
 - 나머지 40명은 지부 및 직할지회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단위별로 조합원 수를 특정값으로 나눈 뒤 반올림. 특정값은 결과값의 총합이 40명이 되도록 맞추는 방식. 특정값=4,400)
- 후보중앙위원은 조합 부서장 및 여성사업 담당자로 배정하되 아래 표 순번대로 한다.

순 번	후보 중앙위원
1	조합 총무실장
2	조합 기획실장
3	조합 정책실장
4	조합 조직실장
5	조합 노동안전보건실장

순 번	후보 중앙위원
6	조합 미조직비정규사업실장
7	조합 선전홍보실장
8	조합 교육실장
9	조합 대외협력실장
10	조합 여성부장

※ 민주노총 파견중앙위원 지부별 배정 기준

- 지부별 조합원 수는 2018년 11월 기준이며 포스코지회는 포항과 광주전남지부로, 대우조선은 경남지부로 편제된 것으로 간주.

지부명		조합원	전체 배정	중앙위원 구분		
				배정(일반)	여성조합원	배정(여성)
경기		5,966	2	1	815	1
경남		18,959	4	4	534	0
경주		3,704	1	1	613	0
광주전남		10,669	3	2	636	1
구미		1,100	0	0	290	0
대구		2,429	1	1	300	0
대전충북		3,091	1	1	332	0
부상양산		1,958	0	0	255	0
서울		3,115	2	1	650	1
울산		4,268	2	1	624	1
인천		3,005	1	1	216	0
전북		1,962	0	0	144	0
충남		12,690	3	3	340	0
포항		4,012	1	1	14	0
만도		75	0	0	0	0
기아차		28,818	8	7	650	1
한국지엠		10,378	2	2	332	0
현대차		50,451	12	11	2,222	1
쌍용차		140	0	0	0	0
현대중공업		11,408	3	3	359	0
직할 지회	현대차비정규	428	0	0	65	0
	현대차일반직	0	0	0	0	0
	기아차화성비정규	1,403	0	0	509	0
합 계		180,029	46	40	9,900	6

2.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선출 기준

단위	인원	비고
중집	38명	
지부 배정(일반)	224명	조합원수 비례 배정
여성할당	71명	미전환사업장 여성할당 3명 포함
비정규할당	18명	해당위원회 위임
미전환사업장	0명	
합계	351명	

1)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은 선출 기준은 500명당 1명이며 민주노총 의무금납부 조합원(2018년 1~9월 평균) 175,025명(미전환사업장 포함)을 기준으로 할 때 금속노조의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은 총 351명임. 통상 민주노총이 금속노조에 설정하는 여성할당 비율(20%)을 기준으로 여성할당 대의원은 71명. 후보 대의원은 20%인 71명임.

2) 이중 민주노총 의무금 납부 기준으로 미전환사업장 조합원 수는 277명(풍기산업 70 / 수산중공업 100 / 삼미금속 107)이므로 대의원은 배정하지 않음.

3) 351명은 지부(직할지회 포함) 조합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정.

- ① 여성할당 71명은 지부별 여성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지부별로 여성조합원 수를 특정값으로 나눈 뒤 반올림. 특정값은 결과 값의 총합이 71명이 되도록 맞추는 방식. 특정값=138)
- ② 비정규할당 18명(전체 5%이상)은 비정규특위로 위임한다.
- ③ 중앙집행위원 38명을 배정한다.(조합 임원 9명 + 지부장 20명 + 부서장 9명)
- ④ 나머지 224명은 지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지부별로 조합원 수를 특정 값으로 나눈 뒤 반올림. 특정 값은 결과 값의 총합이 224명이 되도록 맞추는 방식. 특정값=800)
- ⑤ 후보대의원 71명은 지부별 1인씩 총 20명을 지부 이름 가나다순으로 배정한다. 나머지 51명은 지부 인원수에 비례해 배정하되 지부 이름 가나다 순서로 돌아가며 순번을 매긴다.

※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지부별 배정 기준

- 지부별 조합원 수는 2018년 11월 기준이며 포스코지회는 포항과 광주전남지부로, 대우조선은 경남지부로 편제된 것으로 간주함.

지부명		조합원	전체 배정	대의원 구분		
				배정(일반)	여성조합원	배정(여성)
경기		5,966	13	7	815	6
경남		18,959	28	24	534	4
경주		3,704	9	5	613	4
광주전남		10,669	18	13	636	5
구미		1,100	3	1	290	2
대구		2,429	5	3	300	2
대전충북		3,091	6	4	332	2
부산양산		1,958	4	2	255	2
서울		3,115	9	4	650	5
울산		4,268	10	5	624	5
인천		3,005	6	4	216	2
전북		1,962	3	2	144	1
충남		12,690	18	16	340	2
포항		4,012	5	5	14	0
만도		75	0	0	0	0
기아차		28,818	41	36	650	5
한국지엠		10,378	15	13	332	2
현대차		50,451	79	63	2,222	16
쌍용차		140	0	0	0	0
현대중공업		11,408	17	14	359	3
직 할 지 회	현대차비정규	428	1	1	65	0
	현대차일반직	0	0	0	0	0
	기아차화성비정규	1,403	5	2	509	3
합 계		180,029	295	224	9,900	71

○ 중앙위원 명단

구분	번호	이름	소속 및 직책
정위원	1	윤장혁	울산지부 수석부지부장
정위원	2	고은아	울산지부 사무국장

○ 대의원 명단

구분	번호	이름	소속 및 직책
정대의원	1	윤장혁	울산지부 수석부지부장
정대의원	2	김주형	울산지부 부지부장
정대의원	3	최무영	울산지부 부지부장
정대의원	4	이복형	덕양산업지회 지회장
정대의원	5	최명우	삼성서비스울산지회 수석부지회장
정대의원	6	고은아	울산지부 사부국장
정대의원	7	박송숙	서연이화지회 여성부장
정대의원	8	이수진	한국ITW울산지회 여성부장
정대의원	9	정외숙	서연씨엔에프지회 대의원
정대의원	10	권은주	현대그린푸드지회 수석부지회장
후보대의원	11	허세현	한국ITW울산지회 지회장
후보대의원	12	윤성만	서연씨엔에프지회 지회장

의결주문

기타안전을 심의해주십시오

의결주문

별도로 제출된 결의문을 채택해 주십시오

참고자료

울산지부 규정

울산지부 규정

제정:2001년 3월 6일

개정:2001년 11월 30일

개정:2008년 3월 3일

개정:2016년 12월 5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31조와 제47조에 의거하여 조합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라 한다.

제3조(사무소) 울산지부의 사무소는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울산지역본부 사무실내에 두도록 한다.

제4조(설치) 울산지부는 지역지부로서 울산광역시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활동) 지부는 조합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지부 총회,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 집행
- 조합, 산하 지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활동의 활성화, 조직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 지부 단위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제2장 조직

제6조(구성)

- 지부는 울산지역내의 금속노동자로서 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한자로 구성한다.
- 사업장단위 지회는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지부 소속으로 한다. 단, 사업장 단위 이하의 단위 (영업소, 사업소 등) 혹은 독자지회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회 이하의 단위는 조직형태변경 결의 이전의 본조 소속으로 할 수 있다.

3장 권리와 의무

제7조(권리) 지부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11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부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과 지부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8조(의무) 지부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의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
2. 지부의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9조(기구) 지부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감사위원회
7. 기타 규약에 규정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절 총회

제10조(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소집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부 대의원대회의 의결 혹은 조합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4.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내 지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11조(소집공고) 총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0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은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

을 요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임원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2.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10조 2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
3. 지부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4. 잠정합의안 가결

제2절 대의원대회

제13조(구성 및 소집)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는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지회단위 조합원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지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2. 정기대의원대회는 조합 정기 대의원 대회 후 30일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3. 임시대의원대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
 -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 2) 대의원의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 3) 전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내 지부장이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소집공고)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총회소집공고에 준한다.

제15조(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2.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16조(대의원 배정기준) 대의원 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 배정은 지회별로 조합원 20명당 1명을 선출하고 단수 11명을 적용한다.
2. 지회 임원과 지회 집행위원을 제외하고 지부대의원은 당연히 지회대의원이 된다.

제17조(대의원 소환) 지부 대의원의 소환은 해당 선출단위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지부장은 발의 접수 후 10일 이내에 해당 선출단위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제18조(대의원대회 기능) 대의원대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중앙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부 예산 승인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4.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지부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9.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0. 조합 대의원대회나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운영위원회

제19조(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

1. 지부임원
2. 지회장
3. 1항, 2항을 최소범위로 하고 지부 대의원대회 의결에 따라 인원을 추가 선출할 수 있다.

제20조(소집)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되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21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중앙집행위원회 포상 및 징계결의 요청에 관한 사항
 2. 조합 대의원, 지부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 확정에 관한 사항
 3. 지부 규칙해석에 관한 사항의 1차 기관이 된다.)
 4. 지부의 특별기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5. 신분보장 심의와 건의에 관한 사항
 6. 조합 쟁의기금 요청에 관한 사항
 7. 지부 대의원대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지부 교섭과 쟁의에 관한 사항
 9. 지회의 설치,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사항
-

제4절 집행위원회

제22조(구성) 집행위원회는 임원, 각종위원회 대표자,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그 임무는 별도로 정하는 처무규칙에 의한다.

제23조(소집)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되,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24조(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2. 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3. 각종회의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4. 신규조합원 지도에 관한 사항
5. 지부 및 지회의 쟁의에 관한 사항
6. 제반 지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부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8. 상벌건의에 관한 사항

제5절 감사위원회

제25조(감사위원회)

1. 지부 감사위원회는 지부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5인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지부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지부 및 지회 감사를 총괄하고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른다.
3. 감사위원회는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4. 분기별 감사결과를 지부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최종승인은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5. 지회에 5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으나, 지회감사는 지부감사와 타 지회 선임감사, 해당 지회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6조(선거관리위원회)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부의 선거를 관리한다.
-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호선한다.
3.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과 선거관리규칙에 따른다.

제5장 임원

제27조(임원) 지부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2. 수석 부지부장
3. 부지부장 2명
4. 사무국장

제28조(임무) 지부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 1) 지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 3)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4) 지부 조정신청 발생 및 쟁의행위에 관한 심의요청
 - 5) 지부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 6) 지부 사무국 각부.차장의 임면 제청권을 갖는다.
 - 7)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4. 사무국장
 - 1)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 3) 각종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 4) 감사에 응한다.

제29조(선출) 지부 임원 중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 부지부장 선출은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제30조(임원의 보궐선거)

1. 지부임원 전원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제3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0기 임원 임기는 2017년 10월 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2조(임원의 탄핵)

- ①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지부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각 선출기간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 ② 탄핵소추는 선출기관 성원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선출기관 성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탄핵된다.

제6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3조(단체교섭) 지부의 단체교섭은 전국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지부장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지부단위 교섭의 교섭권과 협약 체결권을 갖는다.

제34조(단체협약의 체결) 지부의 단체협약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뒤 지부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

제35조(쟁의) 지부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및 기타

제36조(재정) 지부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지부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제37조(징계)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조합 규약 제75조에 의거 처리한다.

제38 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부칙

제1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조합 규약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지부운영규칙) 지부는 조합의 규약과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부운영에 관한 지부운영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단,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경과조치)

1. 이 규정은 신설되는 지역지부에 우선 적용된다. 기존의 기업단위 노조가 지부로 전환하는 경우는 규약을 우선 적용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조합 규약과 지부 모범규정에 반하는 내용을 개정하도록 한다.
2. 지회장의 중앙위원 배정
 - 조합원수가 10,000명 이상인 지회의 경우 지회장을 중앙위원으로 우선 배정한다.
3. 지회운영규칙
 - 지회운영규칙은 규약과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회 자율적으로 제정한다.
 - 단, 규약과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칙에 위배되는 지회운영규칙사항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칙, 지회운영규칙 순으로 적용한다.
4. 지부 대의원 배정기준
 - 규정 제16조는 지회 규칙 제정 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 지부 대의원의 배정은 '지부 대의원 수 확정을 위한 배정기준'에 따른 대의원 총수의 범위 내에서 지부 운영규칙으로 세부 배분 기준을 정할 수 있다.